

2
0
2
2
기
획
연
구
과
제

기획연구과제 2022-25-법인
(연구기간: 2022.06.01~2023.1.31)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23년
1월
31일



서울대학교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2023. 1. 31



연구책임자: 고길곤(행정대학원)

본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기된 의견이나 내용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 인권현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3. 1. 31

연구책임자 고길곤 (행정대학원)
참여연구원 허정원 (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경동 (행정대학원)
이도은 (행정대학원)

요약

- 서울대 인권현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서울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이며, 재적(신입, 재학, 휴학) 중인 학생 총 33,7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현장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차별경험과 가해자와 관련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본 조사는 서울대 정보화 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하여 5,363명이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15.97%임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국적, 성별, 소속(계열), 과정(학위) 등을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이때 집단별 평균 비교는 불균형 표본의 비교에 적합한 최소제곱평균(Least Squared Mean)을 다중비교의 방법 중 가장 보수적인 Tukey 검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인권현장 개별 조항에 대한 찬성여부]

- 인권현장에 제시된 인격권, 차별금지과 평등권(1항, 2항),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1항, 2항),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등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 문항에 있어 응답자의 긍정 응답비율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권현장을 구성하는 인권조항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줌. 과거 인권현장 개별 조항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당해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들 대다수가 인권현장을 구성하는 개별조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줌
- 내국인과 외국인, 학부와 대학원생, 남성과 여성, 소속 학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여부와 그 이유]

-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여부와 개별 조항에 대한 동의와 구분되는 개념임. 인권헌장 제정 시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정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왜 관심이 없는지,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는지, 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 어느 조항에 찬성하지 않는지를 분석하였음
- 인권헌장 제정 시 반드시 포함될 권리로 1순위 인격권, 2순위 차별금지(평등권), 3순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 나타났음. 과거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동일한 질문이 제시되었는데, 대학생과 대학원생 집단이 차별금지(평등권)와 인격권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권리로 지목했던 것에서 유사한 결과임
-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52.43%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다양성위원회의 2021년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7.6%,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9.8%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한 사람들은 인권헌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전체 응답자의 55.17%)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인권헌장의 이해가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서는 인권헌장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실효성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권헌장 동의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47%가 긍정응답을 보여, 관심정도에 비해 동의정도가 더 높음. 동의하는 이유로는 기본 규범의 필요성(53.03%)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으며, 비동의하는 이유로는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28.14%)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음
- 인권헌장에 비동의하는 경우에는 차별금지(평등권)에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가 47명이고 차별금지(평등권)에 답한 응답자가 39명이라는 점에서 차별금지(평등권) 단일 문항의 문제로 인해 인권헌장 제정이 반대되었다고 단순 해석하기 어려움

[차별경험과 해결]

- 학내 차별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24.17%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차별경험이 15%p 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21년 다양성 조사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 등에서 차별경험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 비율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생의 경우 2016년 49.6%, 2021년 33.3%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수임. 석사나 학부생에 비해 박사의 차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차별경험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 종교, 국적, 출신학교, 연령, 법적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전공, 결혼여부, 군필 여부, 외모,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출신 지역, 동아리에 대한 차별 가해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가, 학업성취도는 교수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음
- 특히나 출신학교, 전공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 설문 대상이었던 기타 차별의 이유와 구분되는 점임.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의 결과와 구분되는 점은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임. 과거 학내 인권침해의 공간이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문제도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차별문제 대응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6.51%의 응답자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하위집단별로 보았을 때, 성별, 국적을 제외한 계열, 과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결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빈번하게 지목되었으며(26.37%), 대응한 경우 대응방법은 ‘직접시정 요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며(47.33%) 그다음으로는 ‘동료도움 요청’이 높게 응답되었음(20.23%). 이는 학내 조직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따라서 인권현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내 차별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식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대에서 비대면 교육이 2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 공동체의 규범 공유가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했음. 하지만 학

생들의 인권현장에 대한 관심도와 제정에 대한 동의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차별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나 인권현장 각 조항에 대해 매우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인권현장 제정 자체에 대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권현장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현장 제정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임

- 본 연구결과는 서울대 인권현장에 대한 논의는 제정 여부를 넘어서 실효성 있게 구성원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차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설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2장 조사 도구 설계	3
1. 기존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의견 조사	3
2. 조사 도구의 개발	4
1) 초안의 구성	4
2) 설문지 초안에 대한 학내 자문단의 의견	5
제3장 연구방법	8
1. 조사개요	9
1) 조사기간	9
2) 조사대상	9
3) 조사방법	9
제4장 분석결과	11
1. 설문 응답자 분포	11
1) 설문조사 응답 현황	11
2) 설문 응답자의 구성	11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2
1) 인권헌장 개별 조항에 대한 찬성여부	12
(1) 문항분석	13
(2) 소결	37
2)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	38
(1) 문항분석	38
(2) 소결	59
3) 차별경험과 해결	61
(1) 문항분석	61
(2) 소결	110
제5장 설문 결과의 해석과 결론	112

〈표 차례〉

표 1 연구수행절차	7
표 2 설문발송 기간 및 방법	10
표 3 설문조사 응답현황	11
표 4 설문 응답자의 구성	11
표 5 응답자 특성별 인격권 동의 정도	14
표 6 응답자 특성별 차별금지와 평등권 권리 동의 정도	17
표 7 응답자 특성별 차별금지와 평등권 의무 동의 정도	20
표 8 응답자 특성별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 정도	23
표 9 응답자 특성별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동의 정도	26
표 10 응답자 특성별 적절한 편의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29
표 11 응답자 특성별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 정도	32
표 12 응답자 특성별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 정도	35
표 13 인권현장의 각 인권 조항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 (%)	37
표 14 응답 순위	39
표 15 인권현장에 꼭 포함되어야 권리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응답결과	41
표 16 인권현장 제정 관심도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분석	43
표 17 인권현장 제정에 관심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	46
표 18 인권현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	47
표 19 응답자 유형별 인권현장 동의 이유에 대한 빈도	51
표 20 인권현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	54
표 21 응답자 유형별 찬성하지 않는 인권현장 조항 빈도	57
표 22 응답자 유형별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의 빈도	62
표 23 응답자 유형별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65
표 24 응답자 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68
표 25 응답자 유형별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70
표 26 응답자 유형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72
표 27 응답자 유형별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74
표 28 응답자 유형별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76
표 29 응답자 유형별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78
표 30 응답자 유형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80
표 31 응답자 유형별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82
표 32 응답자 유형별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84
표 33 응답자 유형별 군필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85
표 34 응답자 유형별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88
표 35 응답자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90
표 36 응답자 유형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92
표 37 응답자 유형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93
표 38 응답자 유형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96
표 39 응답자 유형별 동아리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98
표 40 응답자 유형별 차별문제 대응 여부	100
표 41 응답자 유형별 차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03
표 42 응답자 유형별 차별에 대응했을 때 대응방식	106
표 43 응답자 유형별 차별문제 대응결과 만족도	109

<그림 차례>

그림 1 인격권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13
그림 2 응답자 유형간 인격권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15
그림 3 인격권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15
그림 4 차별금지과 평등권 권리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16
그림 5 응답자 유형 간 차별금지 및 평등권 권리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18
그림 6 차별금지 및 평등권 권리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18
그림 7 차별금지과 평등권 의무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19
그림 8 응답자 유형 간 차별금지과 평등권 의무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21
그림 9 차별금지과 평등권 의무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21
그림 10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22
그림 11 응답자 유형 간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24
그림 12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24
그림 13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25
그림 14 응답자 유형 간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27
그림 15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27
그림 16 적절한 편의 보장에 대한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28
그림 17 응답자 유형 간 적절한 편의보장에 대한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30
그림 18 적절한 편의보장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30
그림 19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31
그림 20 응답자 유형 간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33
그림 21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33
그림 22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 빈도	34
그림 23 응답자 유형 간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36
그림 24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36
그림 25 인권현장에 꼭 포함되어야 권리에 대한 빈도분석	39
그림 26 인권현장에 꼭 포함되어야 권리에 집단별 차이 분석 시각화	41
그림 27 인권현장 제정에 대한 관심도 빈도분석	42
그림 28 인권현장 제정 관심도에 대한 응답자 유형 간 통계적 차이	44
그림 29 인권현장 제정 관심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 시각화	44
그림 30 인권현장 제정에 관심이 없는 이유 빈도	45
그림 31 인권현장 제정에 관심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간 차이의 시각화	46
그림 32 인권현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빈도	47
그림 33 인권현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집단별 통계적 차이	48
그림 34 인권현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차이 시각화	49
그림 35 인권현장 제정 동의 이유에 대한 빈도	50
그림 36 인권현장 동의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차이 시각화	51
그림 37 인권현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빈도	53
그림 38 인권현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차이 시각화	55
그림 39 찬성하지 않는 인권현장 조항 빈도	56
그림 40 찬성하지 않는 인권현장 조항에 대한 응답자 유형 간 차이	58
그림 41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한 빈도	61
그림 42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집단별 통계적 차이	63
그림 43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 경험에 대한 집단별 차이 빈도	63

그림 44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65
그림 45 계열과정별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66
그림 46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67
그림 47 계열과정별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68
그림 48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69
그림 49 계열과정별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70
그림 50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71
그림 51 계열과정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72
그림 52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73
그림 53 계열과정별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74
그림 54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75
그림 55 계열과정별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76
그림 56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77
그림 57 계열과정별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78
그림 58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79
그림 59 계열과정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80
그림 60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81
그림 61 계열과정별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82
그림 62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83
그림 63 계열과정별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84
그림 64 군필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85
그림 65 계열과정별 군필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86
그림 66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87
그림 67 계열과정별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88
그림 68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89
그림 69 계열과정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90
그림 70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91
그림 71 계열과정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92
그림 72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93
그림 73 계열과정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94
그림 74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95
그림 75 계열과정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96
그림 76 동아리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97
그림 77 계열과정별 동아리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98
그림 78 차별문제 대응 노력 유무	99
그림 79 차별문제 대응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00
그림 80 차별문제 대응에 대한 계열과정별 차이 시각화	101
그림 81 차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02
그림 82 계열과정별 차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시각화	104
그림 83 차별에 대응했을 때 대응방식	105
그림 84 계열과정별 차별 대응방식 시각화	107
그림 85 차별문제 대응결과에 대한 만족도	108
그림 86 차별문제 대응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109
그림 87 계열과정별 차별문제 대응결과 만족도 차이 시각화	110

제1장 서론

서울대의 학내 인권헌장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9년 4월 제출된 본부 기획과제 보고서인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방향”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학내 인권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학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권규범 제정을 권고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학내의 인권의 개념과 인권헌장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위 연구의 제안에 따라 2020년 1월 교수자, 인권센터,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에서 인권헌장의 초안이 등장하였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은 학내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엄을 가진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 자신의 이해를 보호받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 규범을 담고 있다. 이 인권헌장(안)은 보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학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학생처 주최로 열린 “서울대 인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학내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으나, 인권헌장 초안의 일부 항목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당시 공청회의 핵심적인 쟁점은 “구성원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인권헌장(안) 제3조에 대한 것이었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항상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같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그것을 보편적 인권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권은 단순히 다수결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보편성은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헌장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인권을 추구하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헌장 제정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권헌장에 대한 논의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공청회를 통해 표면화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학내 구성원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인권헌장 자체의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공청회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인권과 인권헌장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으로 서울대생의 인권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적은 인권헌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미 인권헌장의 현황, 필요성, 인권의 유형과 쟁점, 인권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된 연구들에서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복하기보다는 순수하게 학생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이전에 학내 인권현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권현장을 제정에 찬성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 다양성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과 대학원생들에 비해 학부생들은 학내 인권현장 논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 일부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나 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인권현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현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포함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 또한 1차적 목적이므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학내에 인권현장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인권현장의 내용과 제정논의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였기에 본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현장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학생들의 인식, 특히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인권현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인권현장 자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인권현장의 각 조항에 대한 태도, 찬성의 이유와 반대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인권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서울대의 차별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권현장의 필요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과 주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그런데 2021년 다양성환경조사에서 인권현장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은 “귀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현장」 제정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이다. 응답자들은 인권현장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현장 제정 논의과정을 상당히 세세히 알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현장, 제정 배경, 추진경과라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항으로 응답자가 서울대 인권현장(안)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더라도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부정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2장 조사 도구 설계

1. 기존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인권헌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조사는 2020년 인권헌장규범제정연구와 2021년 다양성환경조사에서 두 차례 이루어졌다. 인권헌장규범제정연구(이하 규범연구)는 총 1,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학부생 291명, 대학원생 331명, 직원 279명, 교원 176명이 포함되었고, 다양성환경조사(이하 다양성조사)는 총 2,198명을 조사하였는데 이중 학부생은 574명, 대학원생은 778명, 직원 280명, 교원 566명이 포함되었다²⁾. 이 두 조사 모두 학생 표본의 크기가 전체 학생 규모에 비해 작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양성 조사의 경우 확률추출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표본크기가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표본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규범연구는 학내 집단에 직면한 다양한 인권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차별경험을 묻지 않았다. 반면 다양성 조사는 인권헌장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인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와 차별의 주체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경험이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차별경험 문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두 조사 모두 인권과 차별경험에 대하여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 지향을 구별하여 묻고 있는데 이 구분은 우리 사회에 소개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응답자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응답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지향에서 차별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모두 해당없음에 응답할 것이고, 이 범주에 해당되는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개념의 차이를 알고 있으리라 가정하여 문항에 포함시켰다.

먼저 규범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규범의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92%를 상회하였고, 모든 구성원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범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규범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인권규범 제정시 강조되어야 할 내용과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양성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내 구성원들은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특히, 학생들(학부생, 대학원생)이 교직원 집단과 비교해 인권헌장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인권헌장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어 20학번 이하의 학생들은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논의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대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으며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학생 집단에서의 관심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10%가량이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2) 2021년 서울대 구성원수는 40,954명이다 (학부생 21,272, 대학원생 13,018, 교원 4,816, 직원 1,848)

이유로 학생들과 직원들은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으며, 교원은 현행 법령과 학내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인권헌장의 찬성 여부 자체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에 대한 태도와 차별경험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대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조사 도구의 개발

1) 초안의 구성

본 조사의 목적은 인권헌장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관심을 환기하고,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이루어진 두 번의 인권헌장 인식 조사에서 학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인권헌장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헌장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묻기에 앞서 개별 항목의 내용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을 택하였다. 인권헌장(안)은 총 18 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개별 문항으로 질문할 경우 문항 수가 너무 많아져 각 문항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학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총 6 개 문항을 포함시켰다.

각 문항을 응답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된 인권헌장의 개별 조항을 비니엣(Vignette)으로 재구성하여 맥락성과 구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인권헌장의 내용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설명할 때,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가해자로 등장하여 인권헌장 제정의 목적에 대해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 인권헌장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내용과 범위를 단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또,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표현이 등장할 우려가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비니엣(Vignette)을 사용하여 인권헌장의 조항을 설명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조사 주체의 편향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최대한 피하고자 개별조항에 대한 설명을 자제하려 하였으나, 인권헌장의 제 16 조, “구성원의 인권 존중의 의무” 규정은 조항의 문항만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간략한 설명을 포함시켰다.

또 하나의 구현되지 못했던 아이디어는 인권헌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의 선행 조사에서 인권헌장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인권헌장의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권헌장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인권헌장 제정이 학내 인권향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 노력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조사에서 인권헌장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호와 찬반을 묻는 항목을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총학생회 구성원과 전문가 자문의 결과 본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이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헌장 제도화 방안을 묻는 것은 본 조사가 인권헌장 제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여겨져 조사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권헌장을 둘러싼 의견의 지형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과 찬반의견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사안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찬반의견은 항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특정 규범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해당 규범으로 인한 권리침해나 손실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관심도는 낮으나 해당 규범의 내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수 있다. 특정 규범에 대하여 매우 강한 반대의 의견을 가진 경우, 관심도는 오히려 매우 높을 수 있다. 즉,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여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문에서는 관심도와 찬반을 분리하여 질문하고 각각에 대한 이유도 분리하여 질문하였다. 인권헌장에 관심의 유무를 묻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고, 인권헌장 제정에 찬반의견을 묻는 문항을 제시한 후 응답자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따라 각각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하에서 응답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설문지 초안에 대한 학내 자문단의 의견

개별 전문가 자문과 이전 인권헌장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완성된 설문지 초안에 대하여 8명의 학내 전문가에게 서면 자문하여 자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수정된 설문지를 인권센터, 다양성위원회, 학생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자문위원들은 설문의 전체 구성뿐 아니라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문항에 대한 더욱 적절한 예시를 제안하고 설문지의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설문지 완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먼저 자문위원들은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는 안내글에 인권헌장 제정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응답자가 인권헌장제정 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를 제안하였다. 또 도입부에 인권헌장안의 전문과 인권헌장규범제정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하기를 제안하였고 모두 반영하였다. 설문 초반 인권헌장의 개별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인권헌장 조항은 박스형식으로 제시하여 질문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학내 설문시스템에서 구현이 불가능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은 인권헌장 찬성과 반대의 이유였다. 본 연구는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과 찬반의견을 분리하여 질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유도 각각 개별적으로 질문하였다. 또 기존의 설문지들이 인권헌장을 반대하는 경우에만 반대이유를 물었던 것과 달리 찬성 의견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찬성 혹은 반대의 이유를 묻는 예시항목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은 특정 항목에 대한 삭제

와 수정을 요청하였다. 예시항목을 추가하기를 제안한 자문위원들은 직접 적절한 문항을 제시하여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설문지 초안에서 1-7번 문항은 인권헌장 제 2조 인격권, 제 3조 차별금지와 평등권, 제 4조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제 7조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제 14조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복수의 자문위원들이 “인권헌장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지 않는 이상, 조항의 내용을 매우 소상하게 알려주고 의견을 묻고 나서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선택지를 주는 것은 애초에 왜 의견을 묻는지를 무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권헌장 조항에 대한 찬성여부에는 중립적 선택지인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인권헌장 제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관심이 집중된 제 3조 차별금지와 평등권은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2항은 다른 구성원을 차별할 수 있는 언행을 주의할 의무를 담고 있다. 2항에서 처벌이나 금지를 명시하는 게 아닌 약한 수준의 ‘주의 의무’로 언급함으로써 권리의 충돌 시 구성원들의 의견교환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항과 2항을 분리하여 질문함으로써 2항이 1항보다 약한 수준의 의무임을 드러나도록 하였다.

인권헌장(안) 3조 1항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에는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묻지 않고 독립적으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설문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쟁점이 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만을 따로 묻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이 경우 설문 조사가 특정 인권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쟁점화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 설문항목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차별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차별의 이유로 법적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이 언급되었는데 일부 자문위원들이 학생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은 위의 개념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이 아닌, 응답자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해당 경험의 당사자는 이들 개념의 차이를 이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세 가지 개념을 연속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응답자가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상이한 개념들을 묻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유도하였다.

여러 자문위원이 차별의 이유(학업성취 등)와 차별의 주체(동아리 등)에 대하여 다양한 예시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자보를 제안하여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해외 대학의 인권헌장 내용과 제도화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인권헌장이 제정될 경우 학내 인권상황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예시문항 등이 제안되었으나 설문의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질문이나 인권헌장 제정을 기정사실화 하는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인권헌장의 조항(1-8번)을 수정하기를 제안하였

으나 인권현장 안은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물이 아니기에 수정이 불가하였다. 또 여러 자문위원들이 설문지 초안의 일부 배경(결혼여부, 장애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여겨져 응답율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학내 설문조사 시스템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배경질문을 갈음하기로 하고 모든 배경 질문은 최종설문지에서 삭제하였다.

표 1 연구수행절차

날짜	분류	주제	참석자
2022년 6월 30일	착수보고		고길곤
2022년 7월 6일	자문회의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1	송지우, 허정원
2022년 7월 19일	자문회의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2	배유경, 허정원
2022년 7월 22일	자문회의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3	이주영, 허정원
2022년 7월 28일	자문회의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4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고길곤, 허정원, 이도은
2022년 8월 24일	자문활동	설문지 초고에 대한 전문가 자문	김승섭, 조선정, 이주영, 송지우, 남승호, 나용수, 김범수, 장원철
2022년 9월 13일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 수정본 검토	이주영, 배유경, 고길곤, 허정원, 이도은
2022년 10월 5일	IRB	IRB 승인(SNU 22-09-077)	
2022년 10월 17일	설문조사 테스트	온라인 발송 점검 및 오류 수정	
2022년 10월 18일 - 2022년 11월 3일	본조사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발송	
2022년 12월 1일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 포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학생, 전문가 토론	

제3장 연구방법

인권현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은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으로 하였다.³⁾ 이 목표 모집단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포함하였다. 조사설계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표본추출 방식이었다. 2021년 다양성환경조사는 단과대와 성별을 층으로 한 확률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확률표본이 비용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률표본 대신 목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집행은 서울대 정보화 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시중에는 활용가능한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설문발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외부업체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내 온라인 설문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발송하는 방식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식과 휴대폰의 SMS를 통해 발송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의 응답률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한 실증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메일과 SMS를 혼합하여 무작위 발송하는 방식을 1차 설문조사에서 채택하였다.

설문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온라인 설문이 보편화됨에 따라 설문 응답자에 대한 경품제공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경품제공행위가 설문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러한 경품제공이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설문응답이 개인의 의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경품에 따라 응답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

경품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경품의 종류다. 과거에는 단순히 커피쿠폰 같은 것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쿠폰을 지급하거나, 다양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한 모든 응답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와 같은 고가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경품의 가격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응답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할당방식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경품제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3) 일부에서는 교직원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입학생의 인권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직원을 포함한 20XX년도이 결과를 보면 학생보다 교직원의 인권현장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22년 「서울대학교 인권현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서울대학교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3주 정도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설문발송 직후 1~2일에 응답이 대부분 집중되기 때문에 설문기간을 늘리기보다는 발송주기를 1주일 정도로 짧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2) 조사대상

조사집단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집단이며 재적(신입, 재학, 휴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 수료생, 미등록 수료생 등의 구성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 9월 1일 기준 서울대학교 교무처를 통해 확인되는 전체 재적생(신입생, 재학생, 휴학생 포함) 중 90년대 학번,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부정확한 표본을 제외하고 총 33,573명(학부생 20,624명, 석사생 9,665명, 박사생 3,284명)을 선정하였다.

3) 조사방법

설문은 총 4차로 구성되었다. 1차 설문은 2022년 10월 18일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한국 국적의 대상자에게는 한글로 된 설문을, 외국 국적의 대상자에게는 영문으로 된 설문을 무작위로 발송하였다. 1차 설문은 2022년 10월 18일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한국 국적의 대상자에게는 한글로 된 설문을, 외국 국적의 대상자에게는 영문으로 된 설문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기타'를 선택할 경우, 추가의견을 작성할 수 없었다. 이후 2~4차 설문에서는 추가의견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보면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한편 17번은 인권침해 유형과 가해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모든 문항(17-1번~ 17-17번)에 '없음'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메일을 활용하여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동일한 설문지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3차 설문,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4차 설문을 실시했다.

표 2 설문발송 기간 및 방법

설문 회차	설문조사 기간	전송 방법	비고
1차 설문	2022년 10월 18일-2022년 10월 19일	이메일, SMS	
2차 설문	2022년 10월 19일-2022년 10월 26일	이메일	1차 설문 문항 일부 수정 후 전송
3차 설문	2022년 10월 27일-2022년 11월 1일	이메일	재전송
4차 설문	2022년 11월 2일-2022년 11월 3일	이메일	재전송

제4장 분석결과

1. 설문 응답자 분포

설문조사는 대상자 33,573 명 중 5,363 명이 응답하여 15.9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크기는 2020년 1월의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의 학생 응답(n=622)에 비해 약 8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21년 다양성 환경조사(n=1,325)에 비해서도 약 4 배 높은 수준이다.⁴⁾ 설문기간이 3 주로 짧았음에도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설문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설문조사 응답 현황

설문발송 차수별 응답현황을 보면 1 차~2 차는 응답자가 작았고 3~4 차에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차수별 응답자에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3~4 차 설문에서는 설문경품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이메일 제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설문조사 응답현황

WAVE	설문발송일시	대상자	응답자	응답률
1	2022.10.18	33,573	467	1.39%
2	2022.10.19	33,108	367	1.11%
3	2022.10.27	32,741	3,070	9.38%
4	2022.11.02	29,742	1,459	4.91%
총계		33,573	5,363	15.97%

2) 설문 응답자의 구성

응답자 구성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의 응답자가 2,119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률은 공학계열이 17.63%로 가장 높았다. 학부 학생의 응답률 12.73%로 석사나 박사 학생의 응답률보다 낮았으며 석사학생의 응답률이 22.35%로 가장 높았다. 여성과 남성의 응답률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약간 2.14%p 높았으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5.69%p 응답률이 높았다.

4) 2021년 다양성 환경조사는 본 연구와 달리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식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응답률은 학부생 27.3%, 석사 37%, 박사 22.8%로 본 연구의 응답률보다 높았다.

표 4 설문 응답자의 구성

구분		미응답	응답	전체 대상자
계열	공학계열	6,708(82.37%)	1,436(17.63%)	8,144(24.26%)
	예체능계열	1,669(92.57%)	134(7.43%)	1,803(5.37%)
	의학계열	2,203(84.24%)	412(15.76%)	2,615(7.79%)
	인문사회계열	10,923(83.75%)	2,119(16.25%)	13,042(38.85%)
	자연과학계열	6,707(84.16%)	1,262(15.84%)	7,969(23.74%)
과정	박사	2,706(82.4%)	578(17.6%)	3,284(9.78%)
	석사	7,505(77.65%)	2,160(22.35%)	9,665(28.79%)
	학부	17,999(87.27%)	2,625(12.73%)	20,624(61.43%)
성별	남성	16,850(84.90%)	2,997(15.10%)	19,847(59.12%)
	여성	11,360(82.76%)	2,366(17.24%)	13,726(40.88%)
국적	한국	27,353(84.21%)	5,129(15.79%)	32,482(96.75%)
	외국	857(78.55%)	234(21.45%)	1,091(3.25%)
합계		28210(84.03%)	5,363(15.97%)	33,573(100%)

2. 설문조사 분석결과

설문조사 결과는 기술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설문지의 순서에 따라 문항별로 서술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응답분포와 빈도를 먼저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집단별 특성을 차례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므로 국적, 성별과 소속(계열), 과정(학위)을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본다. 이때 집단별 평균 비교는 불균형 표본의 비교에 적합한 최소제곱평균(Least Squared Mean)을 다중비교의 방법 중 가장 보수적인 Tukey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공변량(covariate)으로 응답차수, 계열, 학위과정, 성별, 국적을 포함하였다. 집단 비교 결과는 통계량과 p 값을 표로 제시하는 대신 통계량과 신뢰구간을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은 국적-성별, 계열-과정에 따른 차이를 빈도표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설문 문항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인권현장 개별 조항에 대한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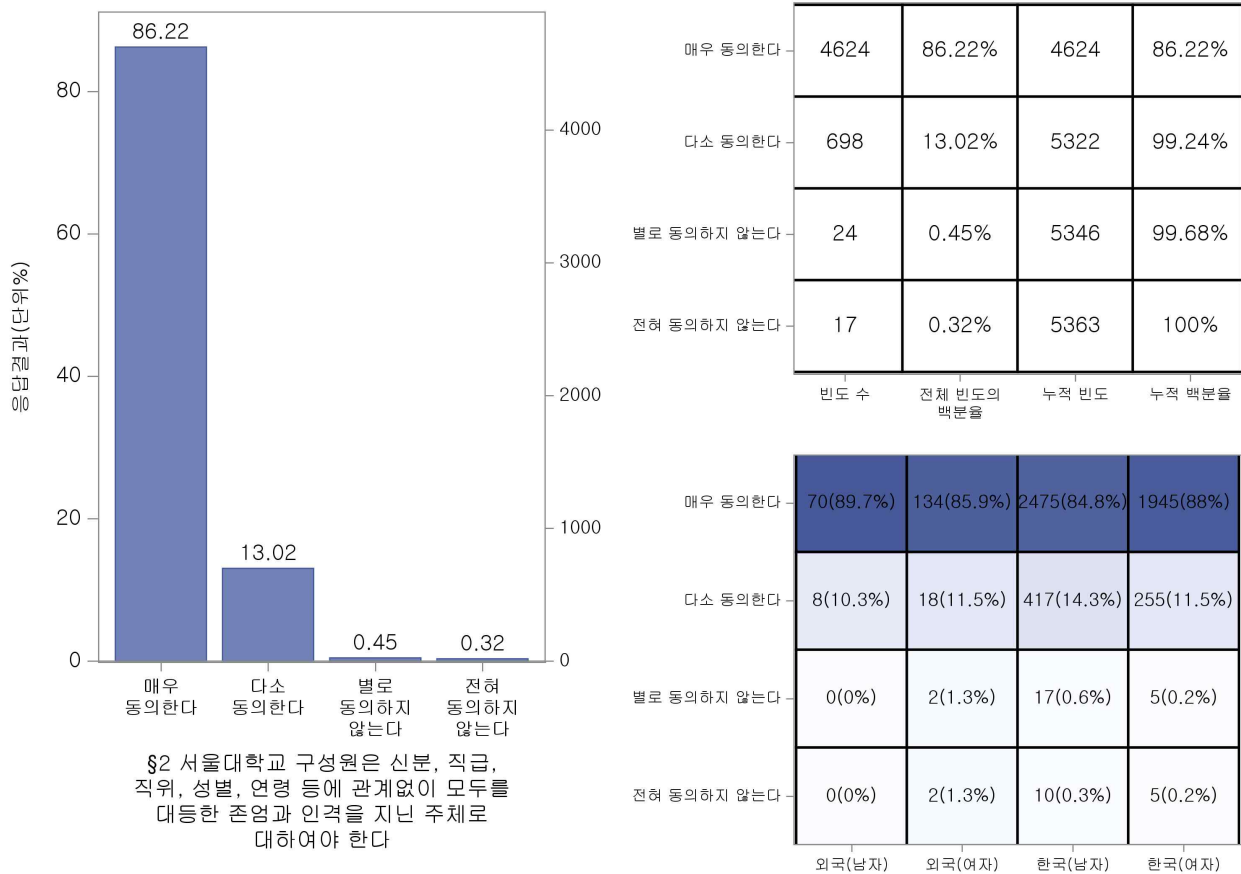
인권헌장은 다양한 인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권조항 중 인격권, 차별금지 및 평등권,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등은 대표 조항이다. 각 조항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항분석

1.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 2조(인격권):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동등한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등한 존엄과 인격을 지닌 주체로 대하여야 한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대등한 존엄과 인격을 지닌 주체로 대하여야 한다는 인권헌장(안) 제 2 조 인격권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22%에 해당하는 4,624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9.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인격권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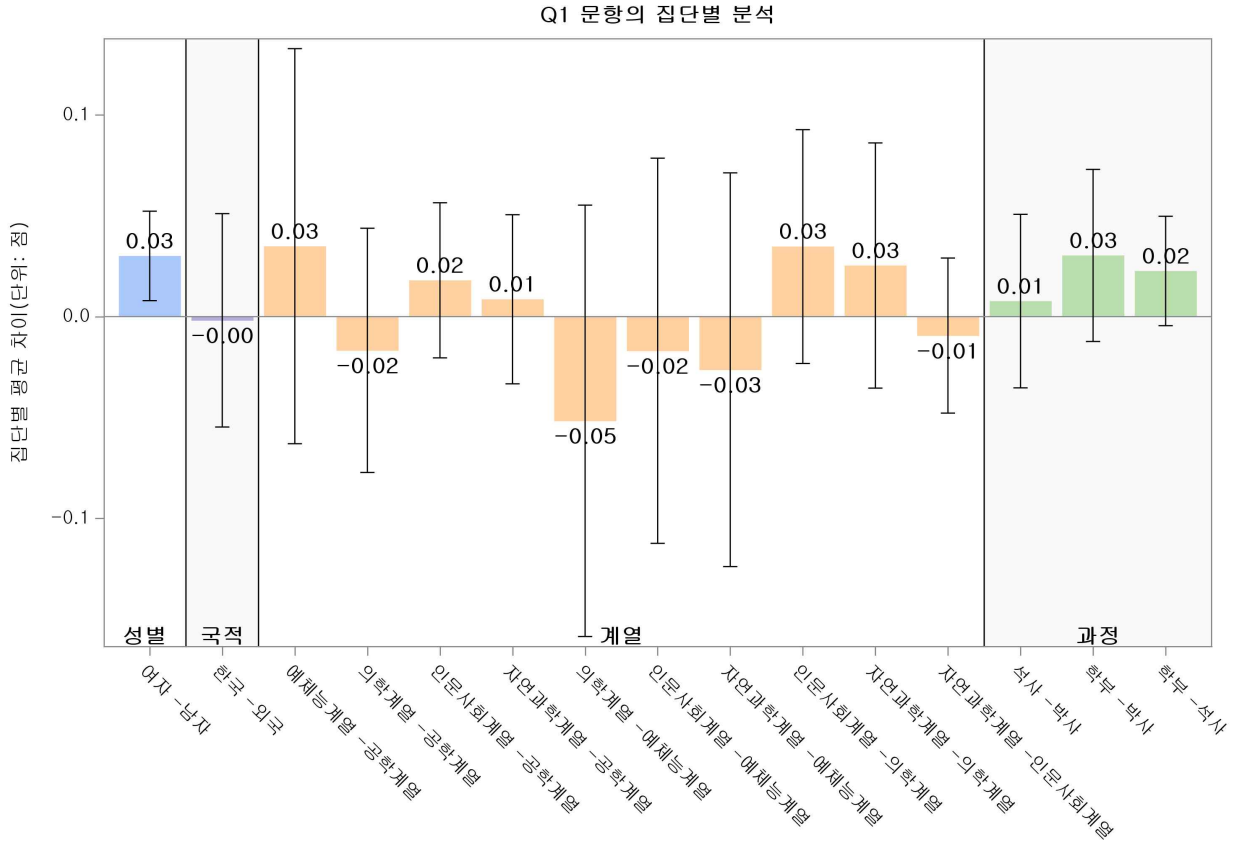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체능계열이 3.8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86 점, 자연과학계열 3.85 점, 공학계열 3.84 점, 의학계열 3.83 점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86 점, 석사과정생이 3.84 점, 박사과정생이 3.83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7 점, 남자가 3.84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85 점, 외국인이 3.85 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 응답자 특성별 인격권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N	%	N	%	N	%	N	%			
공학계열	4	0.28	4	0.28	215	14.97	1,213	84.47	3.84	0.4	4
예체능계열	15	11.19	119	88.81	3.89	0.32	4
의학계열	1	0.24	2	0.49	65	15.78	344	83.5	3.83	0.41	4
인문사회계열	10	0.47	11	0.52	235	11.09	1,863	87.92	3.86	0.39	4
자연과학계열	2	0.16	7	0.55	168	13.31	1,085	85.97	3.85	0.38	4
박사	4	0.69	5	0.87	74	12.8	495	85.64	3.83	0.44	4
석사	10	0.46	14	0.65	285	13.19	1,851	85.69	3.84	0.42	4
학부	3	0.11	5	0.19	339	12.91	2,278	86.78	3.86	0.36	4
남자	10	0.33	17	0.57	425	14.18	2,545	84.92	3.84	0.41	4
여자	7	0.3	7	0.3	273	11.54	2,079	87.87	3.87	0.37	4
외국	2	0.85	2	0.85	26	11.11	204	87.18	3.85	0.45	4
한국	15	0.29	22	0.43	672	13.1	4,420	86.18	3.85	0.39	4
합계	17	0.32	24	0.45	698	13.02	4,624	86.22	3.85	0.39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성별, 국적,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소제곱평균 값을 기준으로 의학 계열이 예체능 계열에 비해 0.0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그림 4 응답자 유형간 인격권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여학생 집단은 약 2.6%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남학생은 0%로 나타나 전원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집단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1.6%로 나타났으며, 예체능 계열 전체에서는 부정응답 비율이 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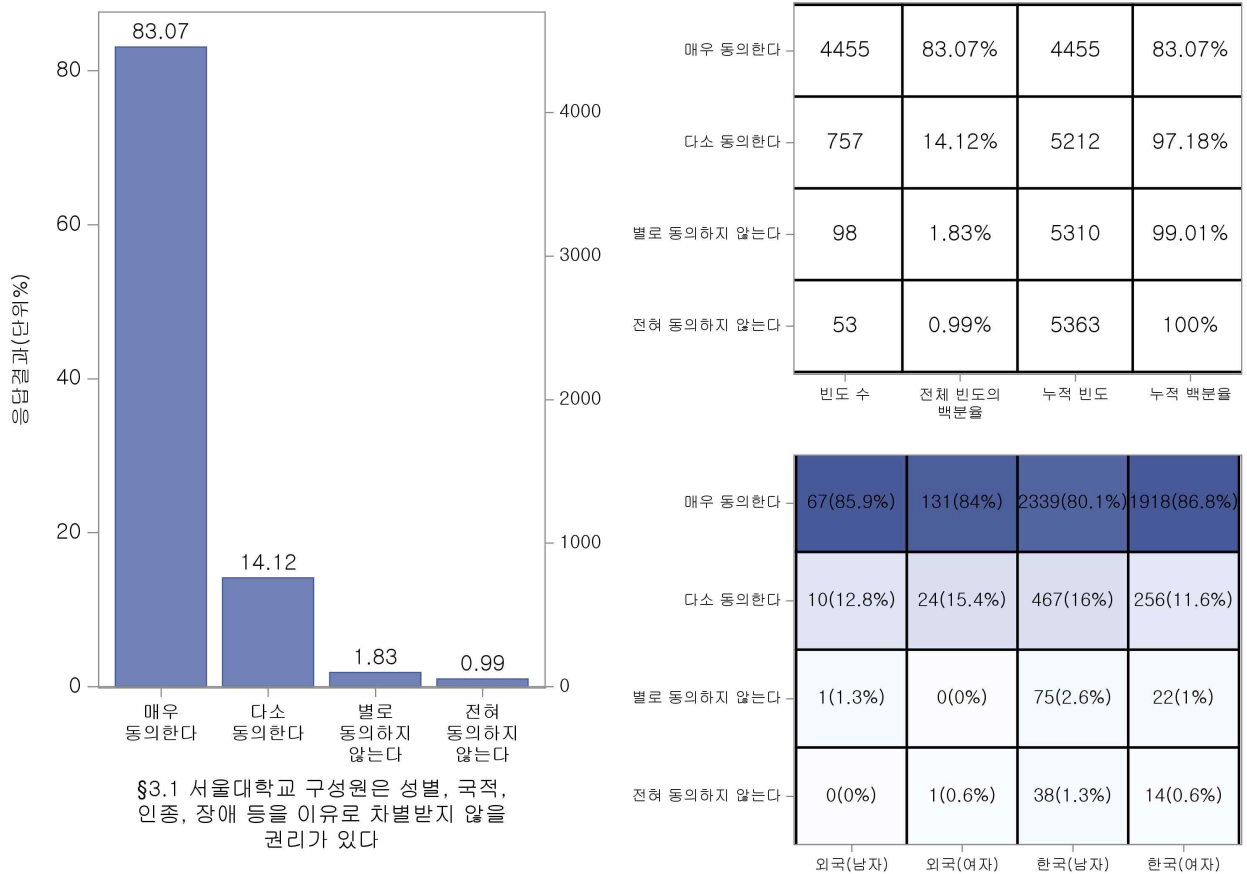
그림 5 인격권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동의 수준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매우 동의한다	632(83%)	581(86.1%)	41(87.2%)	78(89.7%)	232(83.5%)	112(83.6%)	848(88.1%)	1015(87.8%)	593(86.1%)	492(85.9%)
다소 동의한다	122(16%)	93(13.8%)	6(12.8%)	9(10.3%)	43(15.5%)	22(16.4%)	99(10.3%)	136(11.8%)	89(12.9%)	79(13.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0.4%)	1(0.1%)	0(0%)	0(0%)	2(0.7%)	0(0%)	9(0.9%)	2(0.2%)	5(0.7%)	2(0.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5%)	0(0%)	0(0%)	0(0%)	1(0.4%)	0(0%)	7(0.7%)	3(0.3%)	2(0.3%)	0(0%)

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3조(차별금지와 평등권) 1항 :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인권헌장(안) 제 3 조 제 1 항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07%에 해당하는 4,455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7.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차별금지와 평등권 권리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차별금지와 평등권 권리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체능계열이 3.82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81 점, 자연과학계열 3.80 점, 공학계열 3.77 점, 의학계열 3.74 점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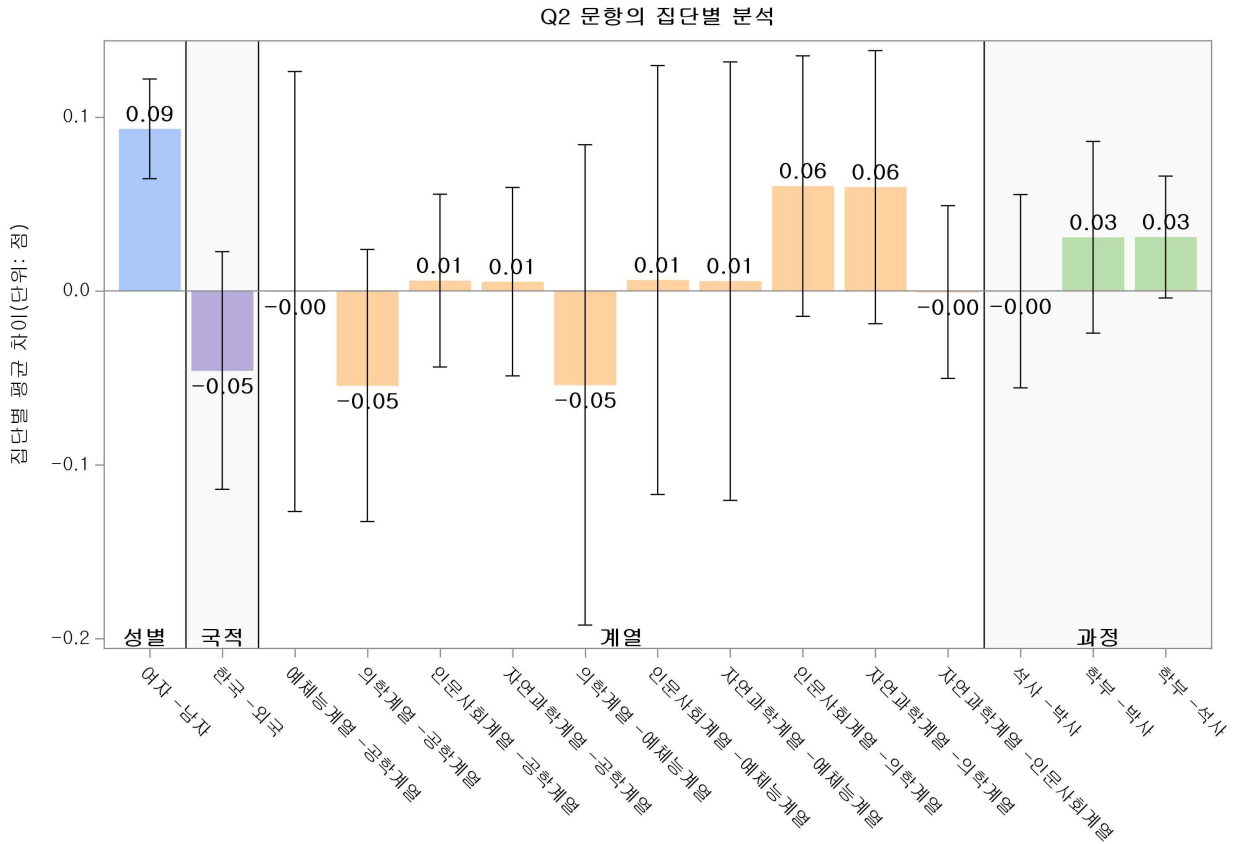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80 점,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은 3.78 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4 점, 남자가 3.75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3.83 점, 한국인은 3.79 점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 특성별 차별금지과 평등권 권리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공학계열	15	1.04	31	2.16	218	15.18	1,172	81.62	3.77	0.53	4
예체능계열	.	.	3	2.24	18	13.43	113	84.33	3.82	0.44	4
의학계열	5	1.21	6	1.46	79	19.17	322	78.16	3.74	0.54	4
인문사회계열	22	1.04	35	1.65	267	12.6	1,795	84.71	3.81	0.5	4
자연과학계열	11	0.87	23	1.82	175	13.87	1,053	83.44	3.8	0.5	4
박사	7	1.21	11	1.9	83	14.36	477	82.53	3.78	0.53	4
석사	25	1.16	42	1.94	313	14.49	1,780	82.41	3.78	0.53	4
학부	21	0.8	45	1.71	361	13.75	2,198	83.73	3.8	0.49	4
남자	38	1.27	76	2.54	477	15.92	2,406	80.28	3.75	0.56	4
여자	15	0.63	22	0.93	280	11.83	2,049	86.6	3.84	0.43	4
외국	1	0.43	1	0.43	34	14.53	198	84.62	3.83	0.42	4
한국	52	1.01	97	1.89	723	14.1	4,257	83	3.79	0.51	4
합계	53	0.99	98	1.83	757	14.12	4,455	83.07	3.79	0.51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국적,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에서는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9 만큼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금지과 평등권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응답자 유형 간 차별금지 및 평등권 권리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여학생 집단은 0.6%, 한국인 여학생 집단은 1.6%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남학생과 한국인 남학생은 각각 1.3%, 3.9%으로 나타나 부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남학생의 부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 대학원생 집단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학계열 학부생 집단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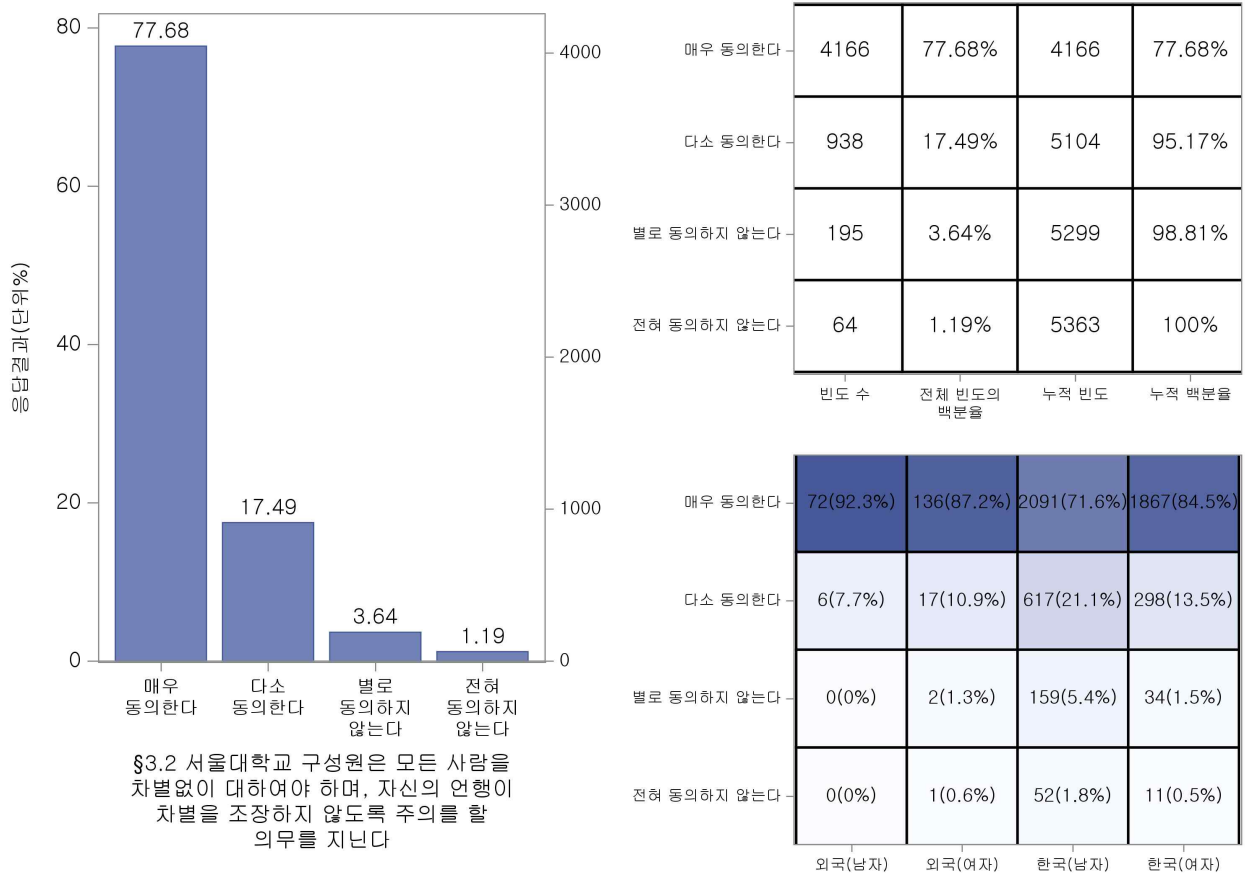
그림 8 차별금지 및 평등권 권리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매우 동의한다	616(80.9%)	556(82.4%)	41(87.2%)	72(82.8%)	216(77.7%)	106(79.1%)	812(84.3%)	983(85%)	572(83%)	481(83.9%)
다소 동의한다	118(15.5%)	100(14.8%)	5(10.6%)	13(14.9%)	53(19.1%)	26(19.4%)	122(12.7%)	145(12.5%)	98(14.2%)	77(13.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9(2.5%)	12(1.8%)	1(2.1%)	2(2.3%)	4(1.4%)	2(1.5%)	18(1.9%)	17(1.5%)	11(1.6%)	12(2.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1.1%)	7(1%)	0(0%)	0(0%)	5(1.8%)	0(0%)	11(1.1%)	11(1%)	8(1.2%)	3(0.5%)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3.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 3조(차별금지과 평등권 의무) 2항: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대하여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닌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대하여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닌다는 인권헌장(안) 제 3 조 2 항 차별금지과 평등권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8%에 해당하는 4,166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5.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차별금지과 평등권 의무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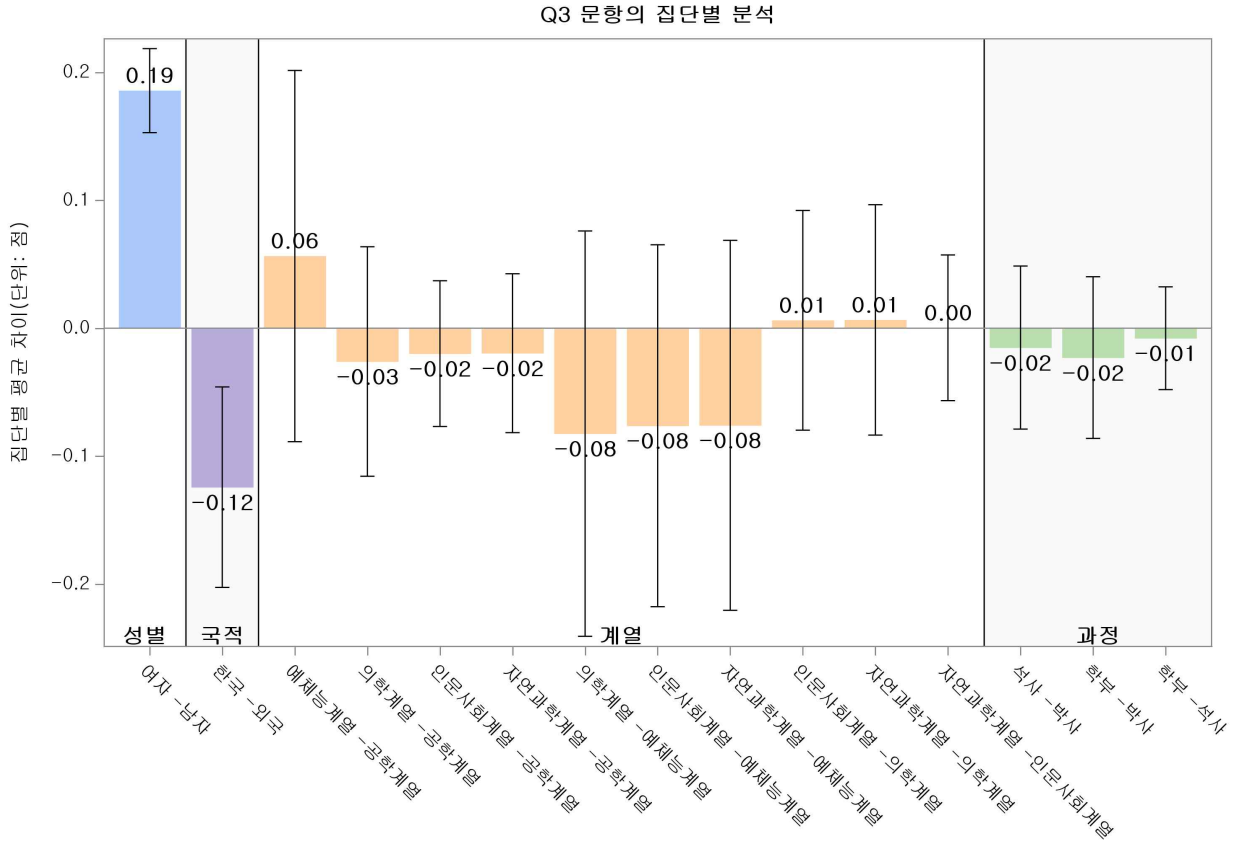
차별금지과 평등의무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체능계열이 3.83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73 점, 의학계열 3.72 점, 자연과학계열 3.71 점, 공학계열 3.69 점 순으로 공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박사과정생이 3.75 점, 석사과정생이 3.73 점, 학부생이 3.70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2 점, 남자가 3.63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71 점, 외국인이 3.97 점으로 나타났다.

표 7 응답자 특성별 차별금지와 평등권 의무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공학계열	20	1.39	58	4.04	274	19.08	1,084	75.49	3.69	0.62	4
예체능계열	.	.	3	2.24	17	12.69	114	85.07	3.83	0.43	4
의학계열	8	1.94	8	1.94	75	18.2	321	77.91	3.72	0.6	4
인문사회계열	23	1.09	83	3.92	332	15.67	1,681	79.33	3.73	0.58	4
자연과학계열	13	1.03	43	3.41	240	19.02	966	76.55	3.71	0.58	4
박사	8	1.38	15	2.6	91	15.74	464	80.28	3.75	0.57	4
석사	21	0.97	84	3.89	357	16.53	1,698	78.61	3.73	0.58	4
학부	35	1.33	96	3.66	490	18.67	2,004	76.34	3.7	0.6	4
남자	52	1.74	159	5.31	623	20.79	2,163	72.17	3.63	0.67	4
여자	12	0.51	36	1.52	315	13.31	2,003	84.66	3.82	0.46	4
외국	1	0.43	2	0.85	23	9.83	208	88.89	3.87	0.39	4
한국	63	1.23	193	3.76	915	17.84	3,958	77.17	3.71	0.6	4
합계	64	1.19	195	3.64	938	17.49	4,166	77.68	3.72	0.59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에서는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의 경우는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응답자 유형 간 차별금지와 평등권 의무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0%, 외국인 여학생 1.9%로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남학생 7.2%, 한국인 여학생 2.0%에 비해 부정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1.1%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자연과학계열 학부생이 5.9%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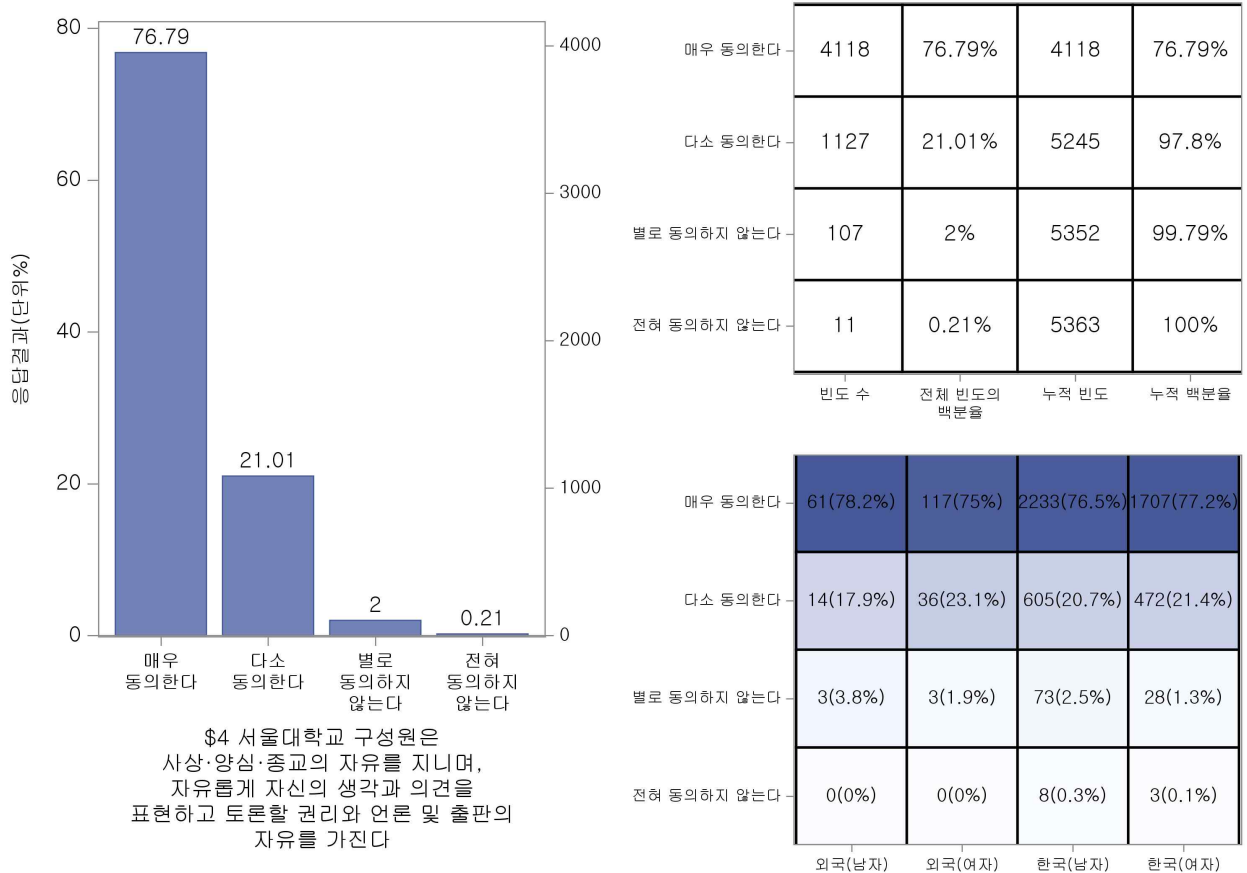
그림 11 차별금지와 평등권 의무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응답 수준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매우 동의한다	582(76.5%)	502(74.4%)	39(83%)	75(86.2%)	228(82%)	93(69.4%)	775(80.5%)	906(78.4%)	538(78.1%)	428(74.7%)
다소 동의한다	138(18.1%)	136(20.1%)	6(12.8%)	11(12.6%)	40(14.4%)	35(26.1%)	135(14%)	197(17%)	129(18.7%)	111(19.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1(4.1%)	27(4%)	2(4.3%)	1(1.1%)	6(2.2%)	2(1.5%)	44(4.6%)	39(3.4%)	16(2.3%)	27(4.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1.3%)	10(1.5%)	0(0%)	0(0%)	4(1.4%)	4(3%)	9(0.9%)	14(1.2%)	6(0.9%)	7(1.2%)

4.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4조(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헌장(안) 제 4 조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79%에 해당하는 4,118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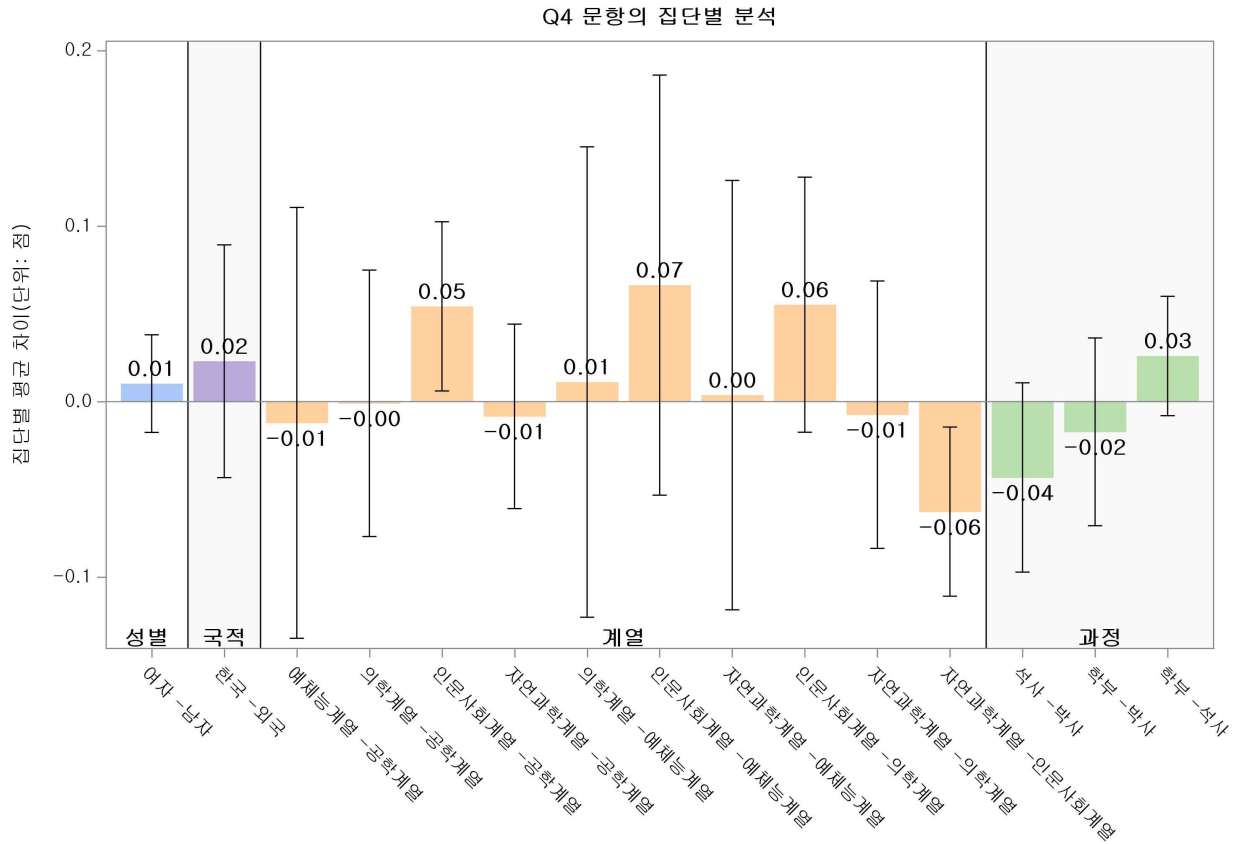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문사회계열이 3.78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이 3.72 점, 자연과학계열이 3.71 점으로, 자연과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박사과정생이 3.77 점, 학부생이 3.76 점, 석사과정생이 3.7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76 점, 남자가 3.73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3.74 점으로 동일했다.

표 8 응답자 특성별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공학계열	3	0.21	39	2.72	315	21.94	1,079	75.14	3.72	0.52	4
예체능계열	.	.	2	1.49	34	25.37	98	73.13	3.72	0.48	4
의학계열	.	.	7	1.7	100	24.27	305	74.03	3.72	0.48	4
인문사회계열	5	0.24	27	1.27	391	18.45	1,696	80.04	3.78	0.46	4
자연과학계열	3	0.24	32	2.54	287	22.74	940	74.48	3.71	0.52	4
박사	2	0.35	10	1.73	107	18.51	459	79.41	3.77	0.48	4
석사	6	0.28	54	2.5	473	21.9	1,627	75.32	3.72	0.52	4
학부	3	0.11	43	1.64	547	20.84	2,032	77.41	3.76	0.47	4
남자	8	0.27	76	2.54	619	20.65	2,294	76.54	3.73	0.51	4
여자	3	0.13	31	1.31	508	21.47	1,824	77.09	3.76	0.47	4
외국	.	.	6	2.56	50	21.37	178	76.07	3.74	0.5	4
한국	11	0.21	101	1.97	1,077	21	3,940	76.82	3.74	0.49	4
합계	11	0.21	107	2	1,127	21.01	4,118	76.79	3.74	0.49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성별, 국적,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열 중 인문사회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과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응답자 유형 간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3.8%, 외국인 여학생 1.9%로 나타나 한국인 남학생 2.8%, 한국인 여학생 1.4%에 비해 부정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학부생이 0.7%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공학계열 대학원생이 3.4%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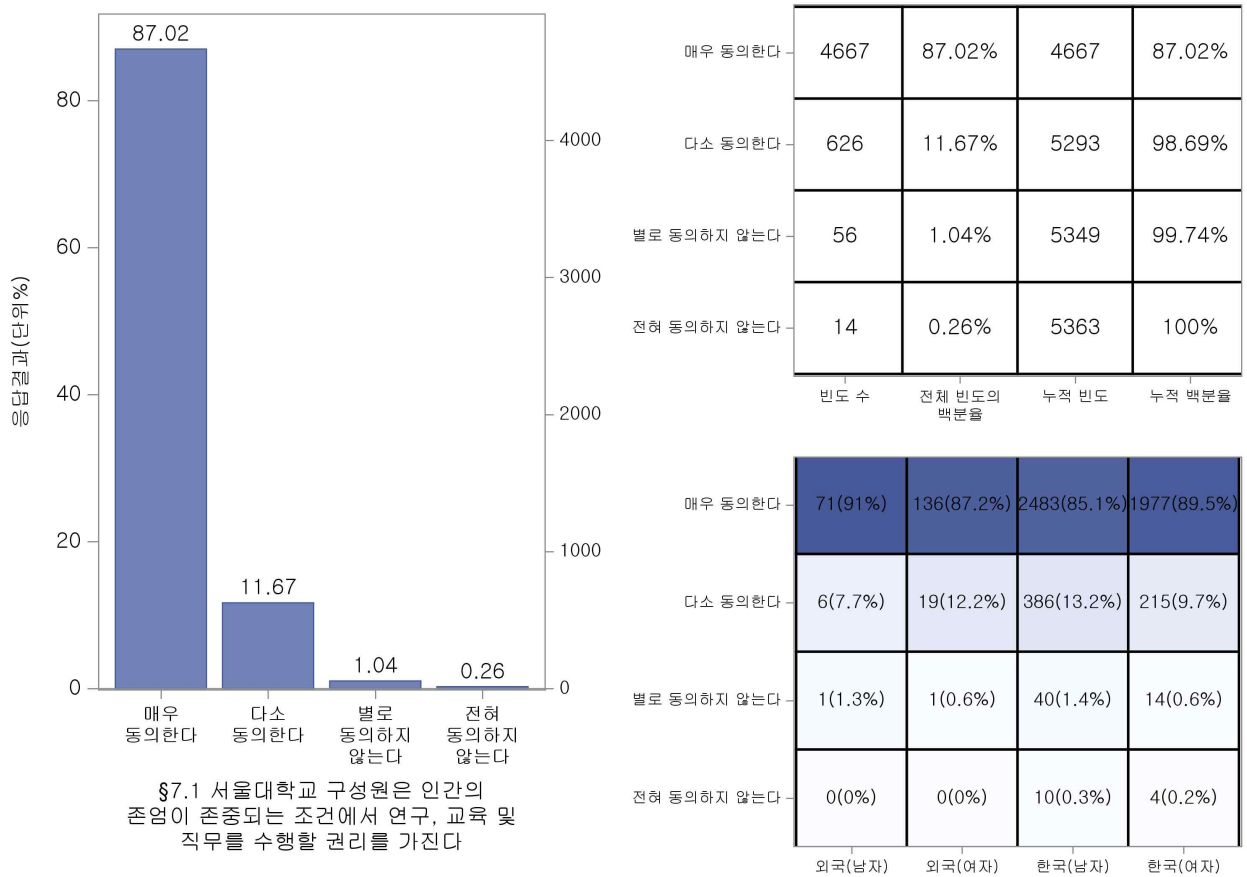
그림 14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동의 수준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매우 동의한다	557(73.2%)	522(77.3%)	39(83%)	59(67.8%)	208(74.8%)	97(72.4%)	772(80.2%)	924(79.9%)	510(74%)	430(75%)
다소 동의한다	178(23.4%)	137(20.3%)	7(14.9%)	27(31%)	64(23%)	36(26.9%)	175(18.2%)	216(18.7%)	156(22.6%)	131(22.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3(3%)	16(2.4%)	1(2.1%)	1(1.1%)	6(2.2%)	1(0.7%)	13(1.3%)	14(1.2%)	21(3%)	11(1.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4%)	0(0%)	0(0%)	0(0%)	0(0%)	0(0%)	3(0.3%)	2(0.2%)	2(0.3%)	1(0.2%)

5.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7조(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의 1항: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헌장(안) 제 7 조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02%에 해당하는 4,667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8.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7.1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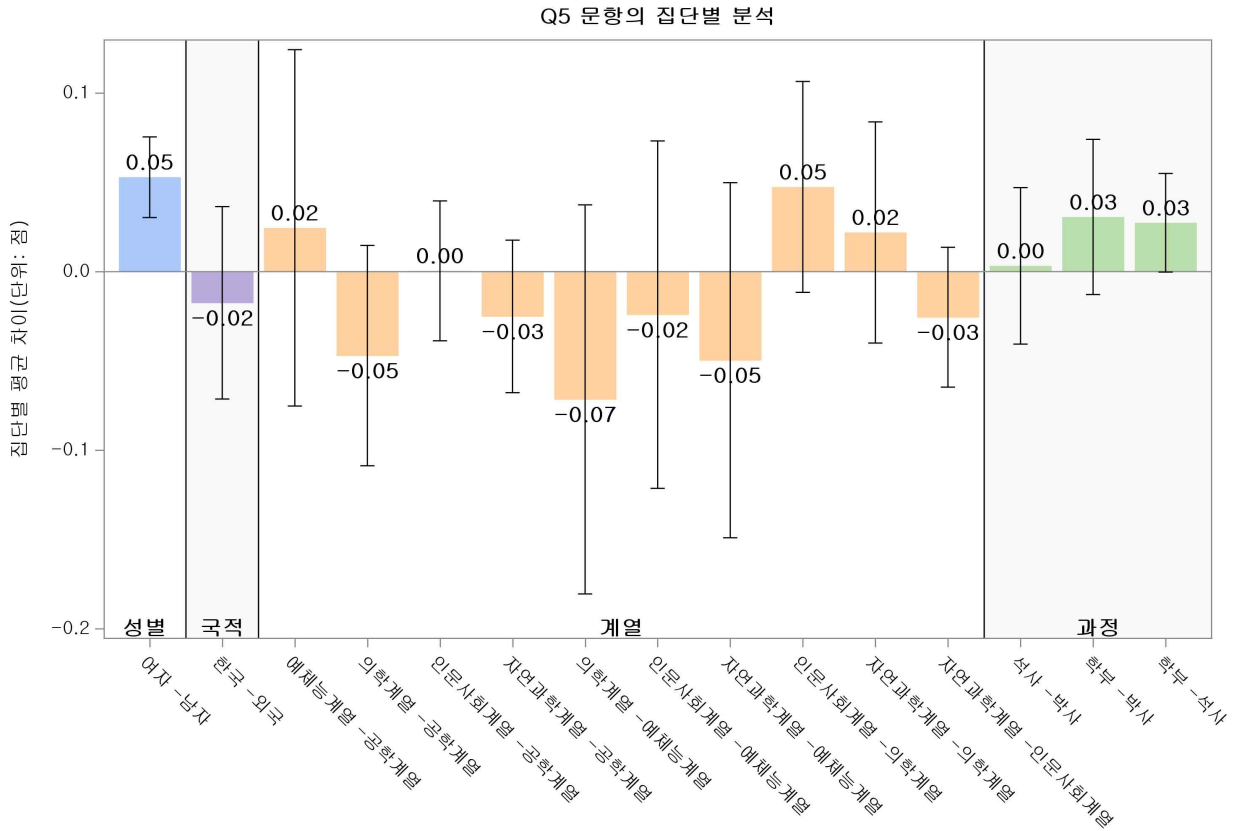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체능계열이 3.90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87 점, 공학계열 3.85 점, 자연과학계열 3.84 점, 의학계열이 3.82 점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87 점,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이 3.84 점으로 동일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8 점, 남자가 3.83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85 점, 외국인이 3.88 점으로 나타났다.

표 9 응답자 특성별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N	%	N	%	N	%	N	%			
공학계열	1	0.07	17	1.18	178	12.4	1,240	86.35	3.85	0.39	4
예체능계열	.	.	2	1.49	9	6.72	123	91.79	3.9	0.34	4
의학계열	1	0.24	4	0.97	65	15.78	342	83.01	3.82	0.43	4
인문사회계열	8	0.38	16	0.76	215	10.15	1,880	88.72	3.87	0.39	4
자연과학계열	4	0.32	17	1.35	159	12.6	1,082	85.74	3.84	0.43	4
박사	3	0.52	7	1.21	69	11.94	499	86.33	3.84	0.44	4
석사	7	0.32	27	1.25	266	12.31	1,860	86.11	3.84	0.42	4
학부	4	0.15	22	0.84	291	11.09	2,308	87.92	3.87	0.38	4
남자	10	0.33	41	1.37	392	13.08	2,554	85.22	3.83	0.43	4
여자	4	0.17	15	0.63	234	9.89	2,113	89.31	3.88	0.35	4
외국	.	.	2	0.85	25	10.68	207	88.46	3.88	0.36	4
한국	14	0.27	54	1.05	601	11.72	4,460	86.96	3.85	0.4	4
합계	14	0.26	56	1.04	626	11.67	4,667	87.02	3.85	0.4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국적,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에서는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5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응답자 유형 간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1.3%, 외국인 여학생 0.6%로 나타나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남학생 1.7%, 한국인 여학생 0.8%에 비해 부정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과 의학계열 학부생이 0%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2.3%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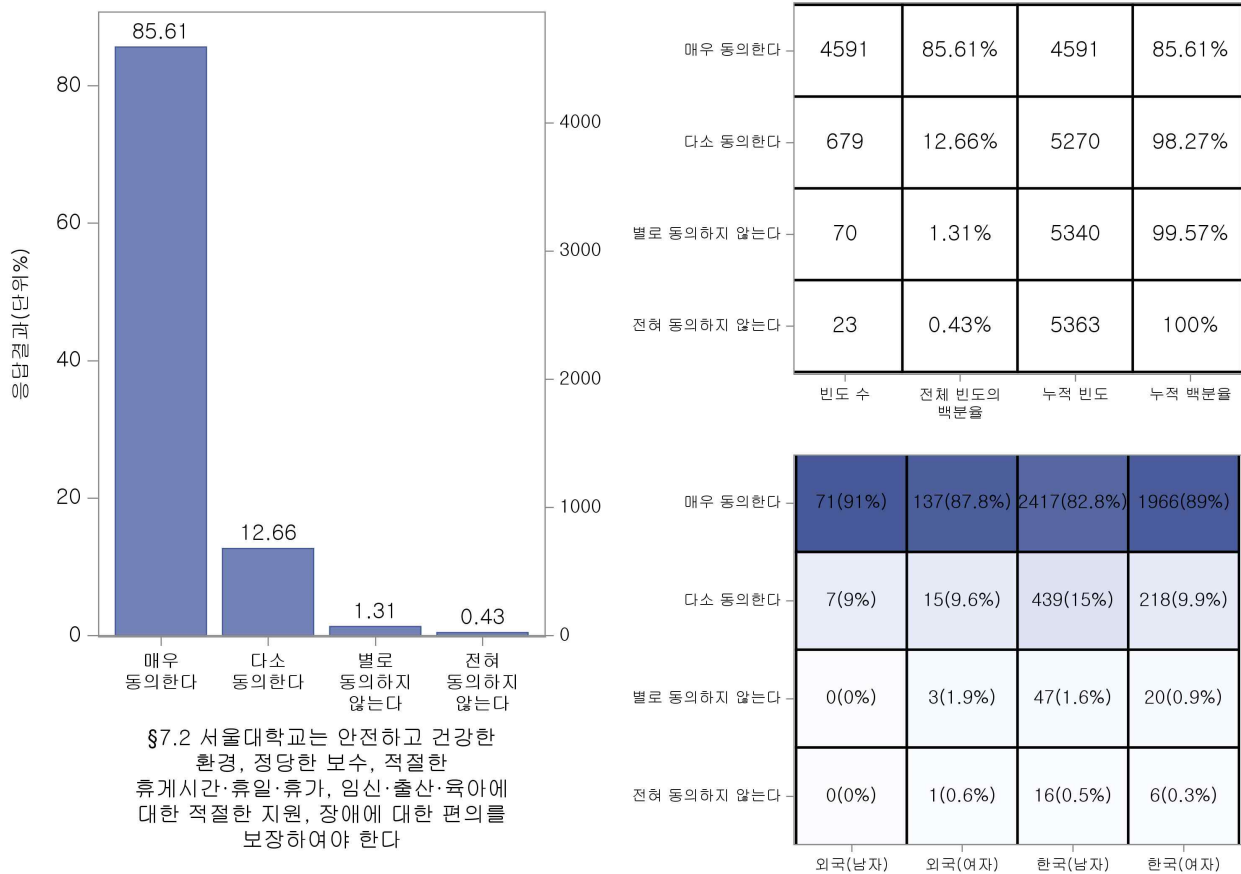
그림 17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동의 수준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매우 동의한다	645(84.8%)	595(88.1%)	42(89.4%)	81(93.1%)	228(82%)	114(85.1%)	849(88.2%)	1031(89.2%)	595(86.4%)	487(85%)
다소 동의한다	107(14.1%)	71(10.5%)	5(10.6%)	4(4.6%)	45(16.2%)	20(14.9%)	97(10.1%)	118(10.2%)	81(11.8%)	78(13.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8(1.1%)	9(1.3%)	0(0%)	2(2.3%)	4(1.4%)	0(0%)	12(1.2%)	4(0.3%)	10(1.5%)	7(1.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1%)	0(0%)	0(0%)	0(0%)	1(0.4%)	0(0%)	5(0.5%)	3(0.3%)	3(0.4%)	1(0.2%)

6.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 7조의 2항: “서울대학교는 연구·교육·직무 수행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정당한 보수, 적절한 휴게시간·휴일·휴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장애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는 연구·교육·직무 수행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정당한 보수, 적절한 휴게시간·휴일·휴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장애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권헌장(안) 제 7 조 2 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61%에 해당하는 4,591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8.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 적절한 편의 보장에 대한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체능계열이 3.90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85 점, 자연과학계열 3.84 점, 공학계열 3.82 점, 의학계열 3.77 점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85 점, 박사과정생이 3.83 점, 석사과정생이 3.8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7 점, 남자가 3.80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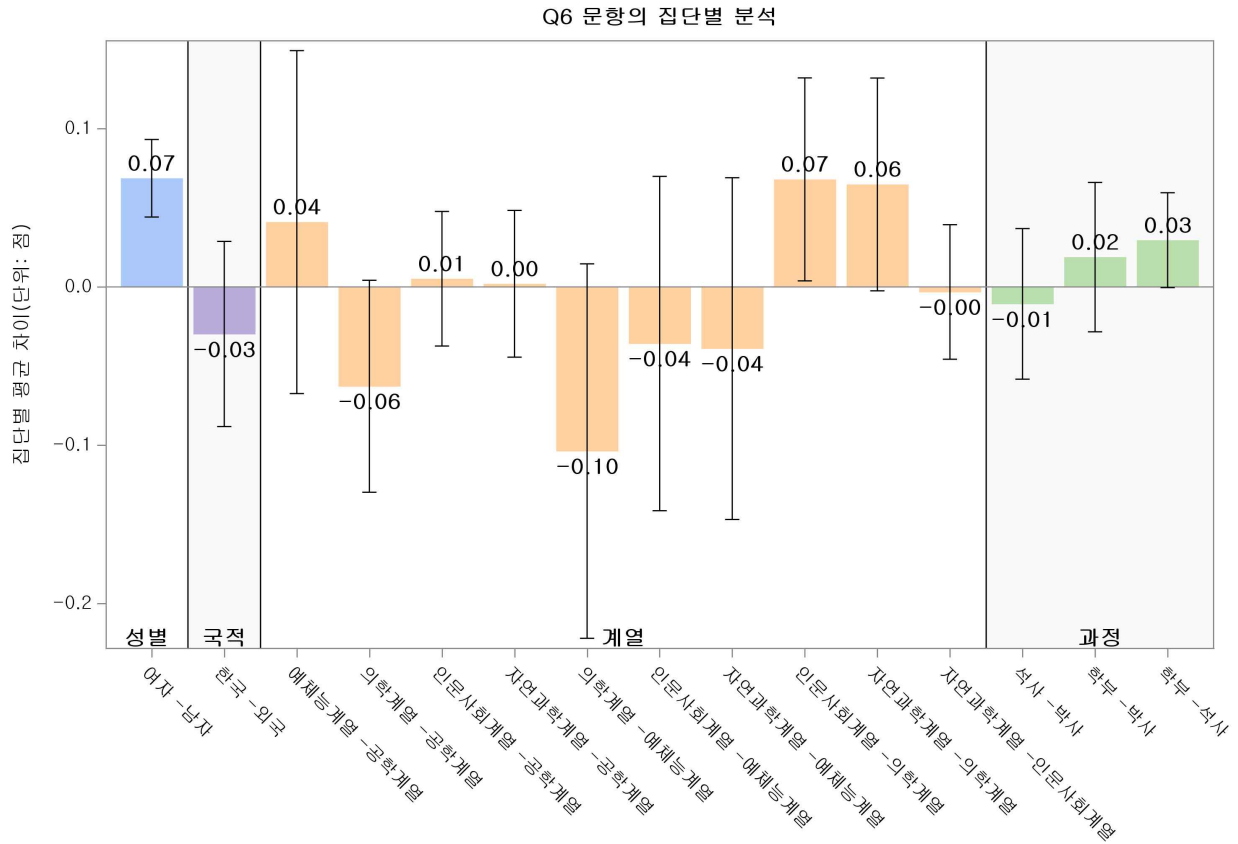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83 점, 외국인이 3.87 점으로 동일했다.

표 10 응답자 특성별 적절한 편의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공학계열	3	0.21	20	1.39	211	14.69	1,202	83.7	3.82	0.43	4
예체능계열	1	0.75	.	.	11	8.21	122	91.04	3.9	0.37	4
의학계열	4	0.97	7	1.7	67	16.26	334	81.07	3.77	0.52	4
인문사회계열	9	0.42	23	1.09	242	11.42	1,845	87.07	3.85	0.42	4
자연과학계열	6	0.48	20	1.58	148	11.73	1,088	86.21	3.84	0.44	4
박사	4	0.69	11	1.9	63	10.9	500	86.51	3.83	0.47	4
석사	14	0.65	32	1.48	282	13.06	1,832	84.81	3.82	0.46	4
학부	5	0.19	27	1.03	334	12.72	2,259	86.06	3.85	0.4	4
남자	16	0.53	47	1.57	446	14.88	2,488	83.02	3.8	0.47	4
여자	7	0.3	23	0.97	233	9.85	2,103	88.88	3.87	0.38	4
외국	1	0.43	3	1.28	22	9.4	208	88.89	3.87	0.41	4
한국	22	0.43	67	1.31	657	12.81	4,383	85.46	3.83	0.44	4
합계	23	0.43	70	1.31	679	12.66	4,591	85.61	3.83	0.44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국적,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7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 중 인문사회계열이 의학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7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응답자 유형 간 적절한 편의보장에 대한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0%로 한국인 남학생 2.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여학생은 2.5%로 한국인 여학생 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0%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2.8%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20 적절한 편의보장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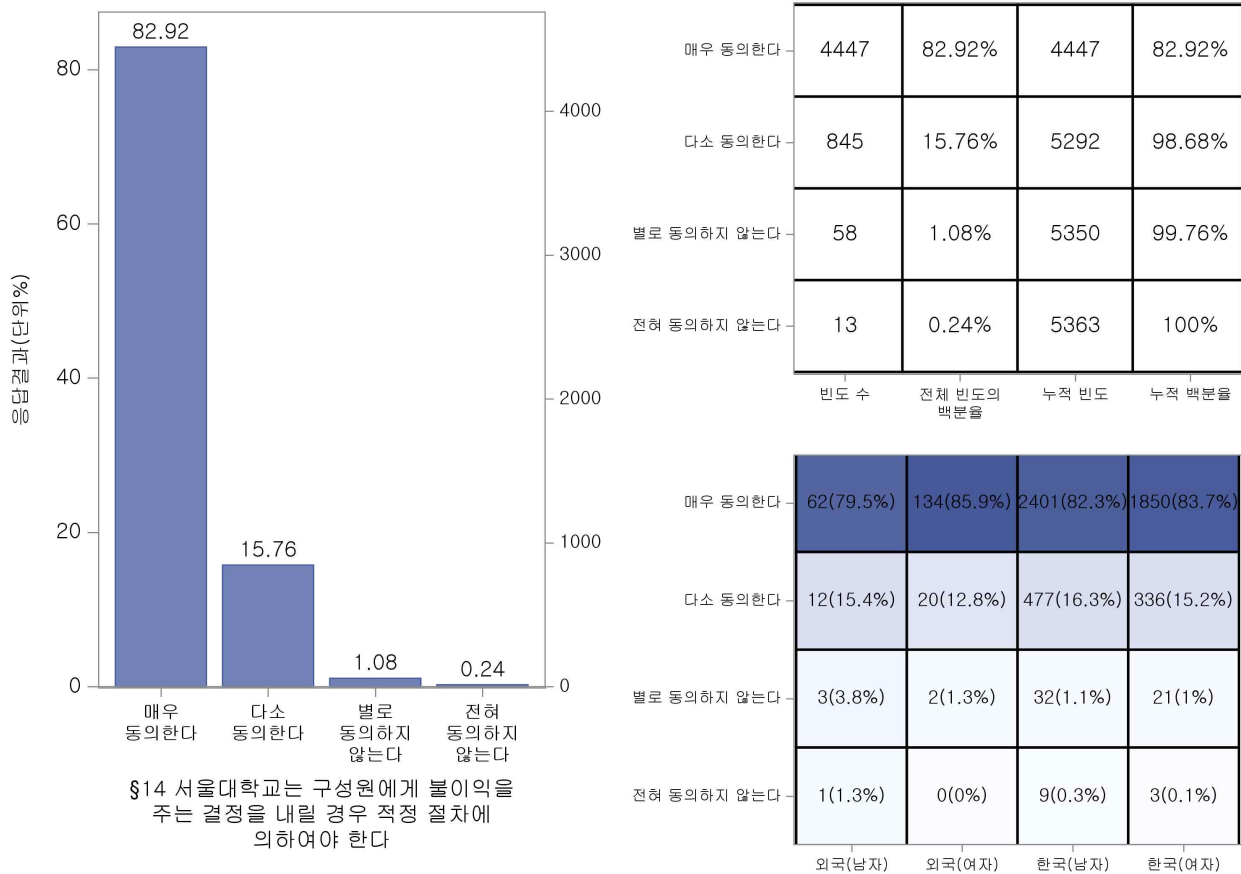
동의 수준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매우 동의한다	633(83.2%)	569(84.3%)	45(95.7%)	77(88.5%)	220(79.1%)	114(85.1%)	840(87.2%)	1005(86.9%)	594(86.2%)	494(86.2%)
다소 동의한다	111(14.6%)	100(14.8%)	2(4.3%)	9(10.3%)	50(18%)	17(12.7%)	105(10.9%)	137(11.9%)	77(11.2%)	71(12.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1.8%)	6(0.9%)	0(0%)	0(0%)	4(1.4%)	3(2.2%)	12(1.2%)	11(1%)	13(1.9%)	7(1.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4%)	0(0%)	0(0%)	1(1.1%)	4(1.4%)	0(0%)	6(0.6%)	3(0.3%)	5(0.7%)	1(0.2%)

7.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14조(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적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서울대학교 구성원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적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인권헌장(안) 제 14 조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92%에 해당하는 4,447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8.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의 빈도분석 결과



적정절차에 관한 권리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체능계열이 3.86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83 점, 공학계열 3.81 점, 자연과학계열 3.80 점, 의학계열 3.77 점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83 점,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이 3.80 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3 점, 남자가 3.80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81 점, 외국인이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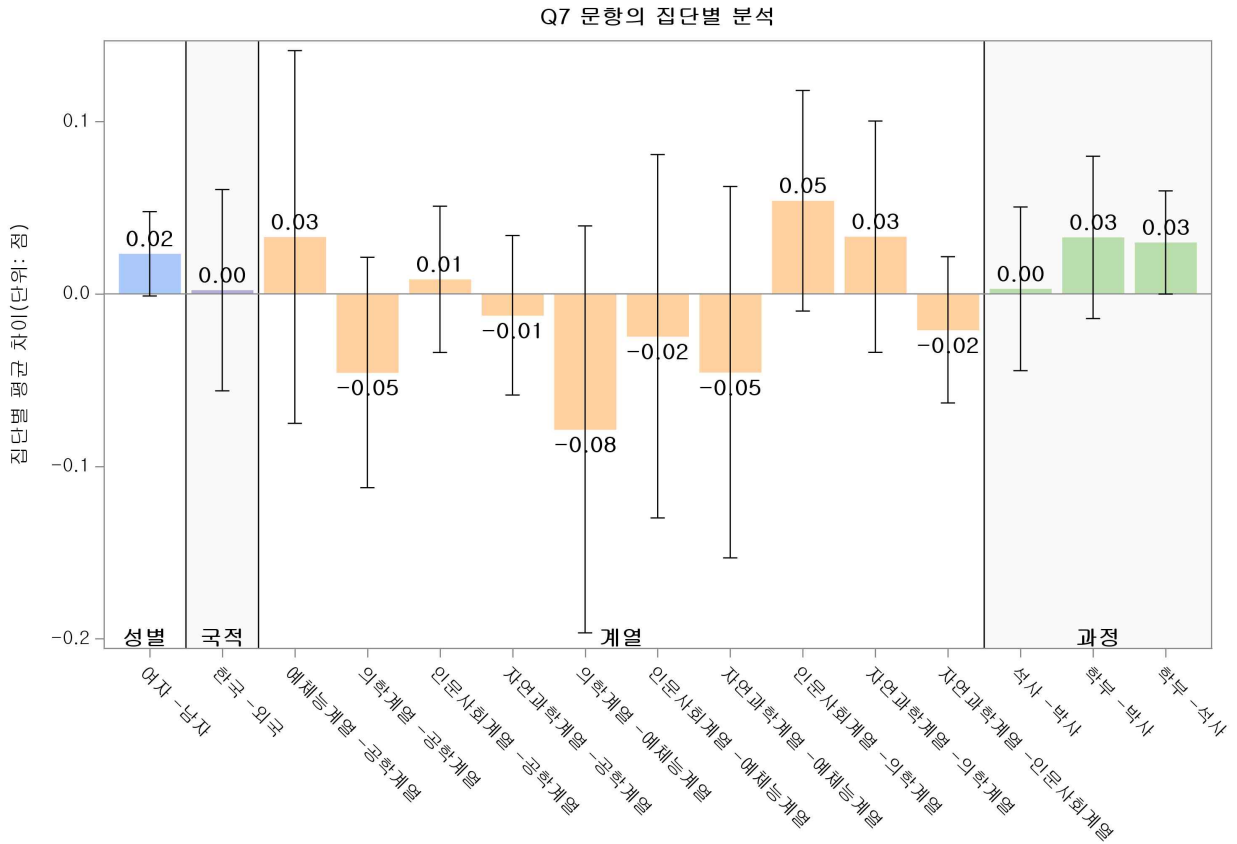
점으로 동일했다.

표 11 응답자 특성별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공학계열	3	0.21	17	1.18	230	16.02	1,186	82.59	3.81	0.44	4
예체능계열	.	.	1	0.75	17	12.69	116	86.57	3.86	0.37	4
의학계열	1	0.24	6	1.46	81	19.66	324	78.64	3.77	0.47	4
인문사회계열	8	0.38	21	0.99	297	14.02	1,793	84.62	3.83	0.43	4
자연과학계열	1	0.08	13	1.03	220	17.43	1,028	81.46	3.8	0.43	4
박사	2	0.35	10	1.73	92	15.92	474	82.01	3.8	0.47	4
석사	9	0.42	24	1.11	361	16.71	1,766	81.76	3.8	0.46	4
학부	2	0.08	24	0.91	392	14.93	2,207	84.08	3.83	0.4	4
남자	10	0.33	35	1.17	489	16.32	2,463	82.18	3.8	0.45	4
여자	3	0.13	23	0.97	356	15.05	1,984	83.85	3.83	0.41	4
외국	1	0.43	5	2.14	32	13.68	196	83.76	3.81	0.47	4
한국	12	0.23	53	1.03	813	15.85	4,251	82.88	3.81	0.43	4
합계	13	0.24	58	1.08	845	15.76	4,447	82.92	3.81	0.43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성별, 국적,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소제공평균 값을 기준으로 의학계열이 예체능 계열에 비해 0.08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그림 22 응답자 유형 간 걱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5.1%, 외국인 여학생 1.3%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남학생 1.4%, 한국인 여학생 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0%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의학계열 학부생이 2.2%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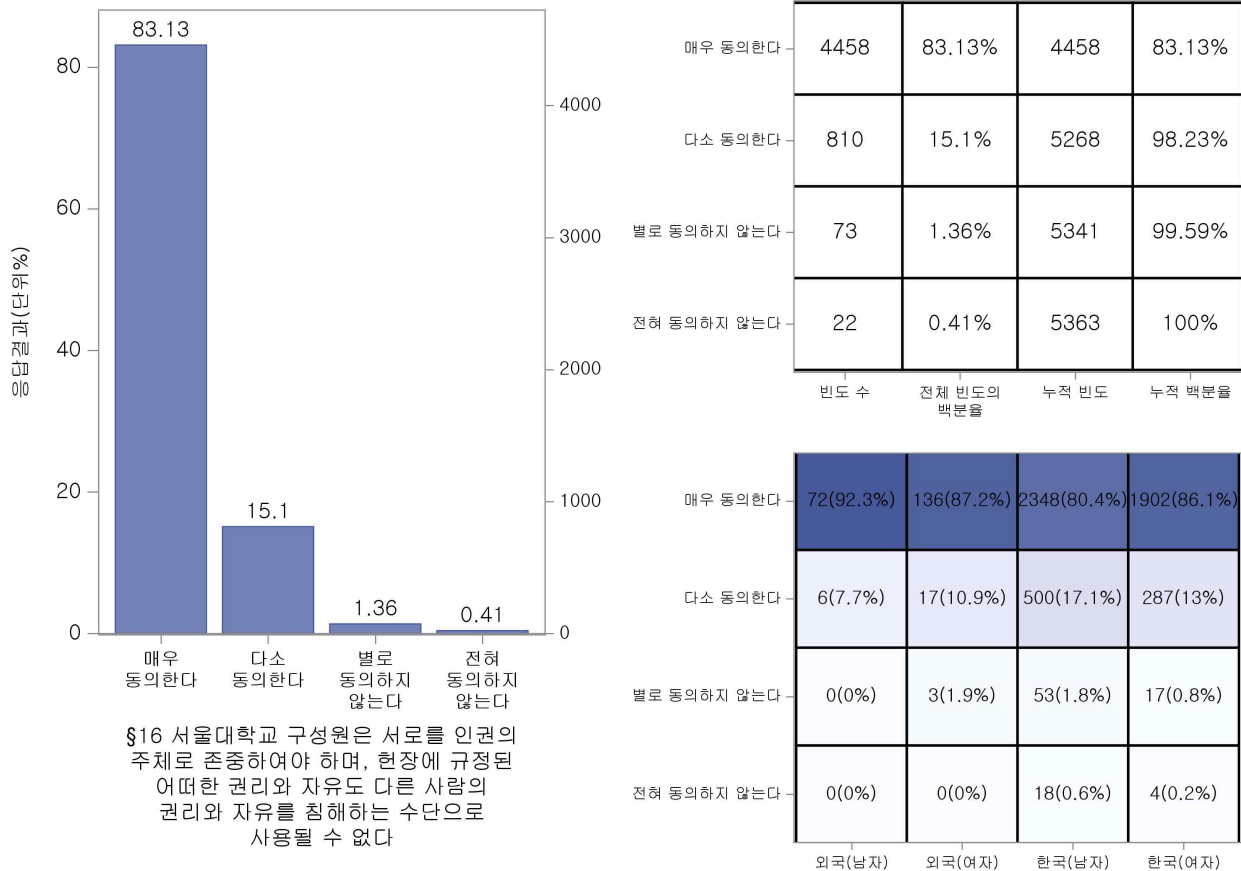
그림 23 걱정 절차에 관한 권리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매우 동의한다	612(80.4%)	574(85%)	41(87.2%)	75(86.2%)	221(79.5%)	103(76.9%)	810(84.1%)	983(85%)	556(80.7%)	472(82.4%)
다소 동의한다	135(17.7%)	95(14.1%)	6(12.8%)	11(12.6%)	53(19.1%)	28(20.9%)	136(14.1%)	161(13.9%)	123(17.9%)	97(16.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2(1.6%)	5(0.7%)	0(0%)	1(1.1%)	3(1.1%)	3(2.2%)	10(1%)	11(1%)	9(1.3%)	4(0.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3%)	1(0.1%)	0(0%)	0(0%)	1(0.4%)	0(0%)	7(0.7%)	1(0.1%)	1(0.1%)	0(0%)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8.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16조(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서로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여야 할 것과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서로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여야 할 것과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인권헌장(안) 제 16 조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13%에 해당하는 4,458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다는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98.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 빈도



구성원의 인권존중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문사회계열이 3.83 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 3.82 점, 자연과학계열 3.81 점, 공학계열 3.80 점, 의학계열 3.75 점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82 점,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이 3.80 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85 점, 남자가 3.78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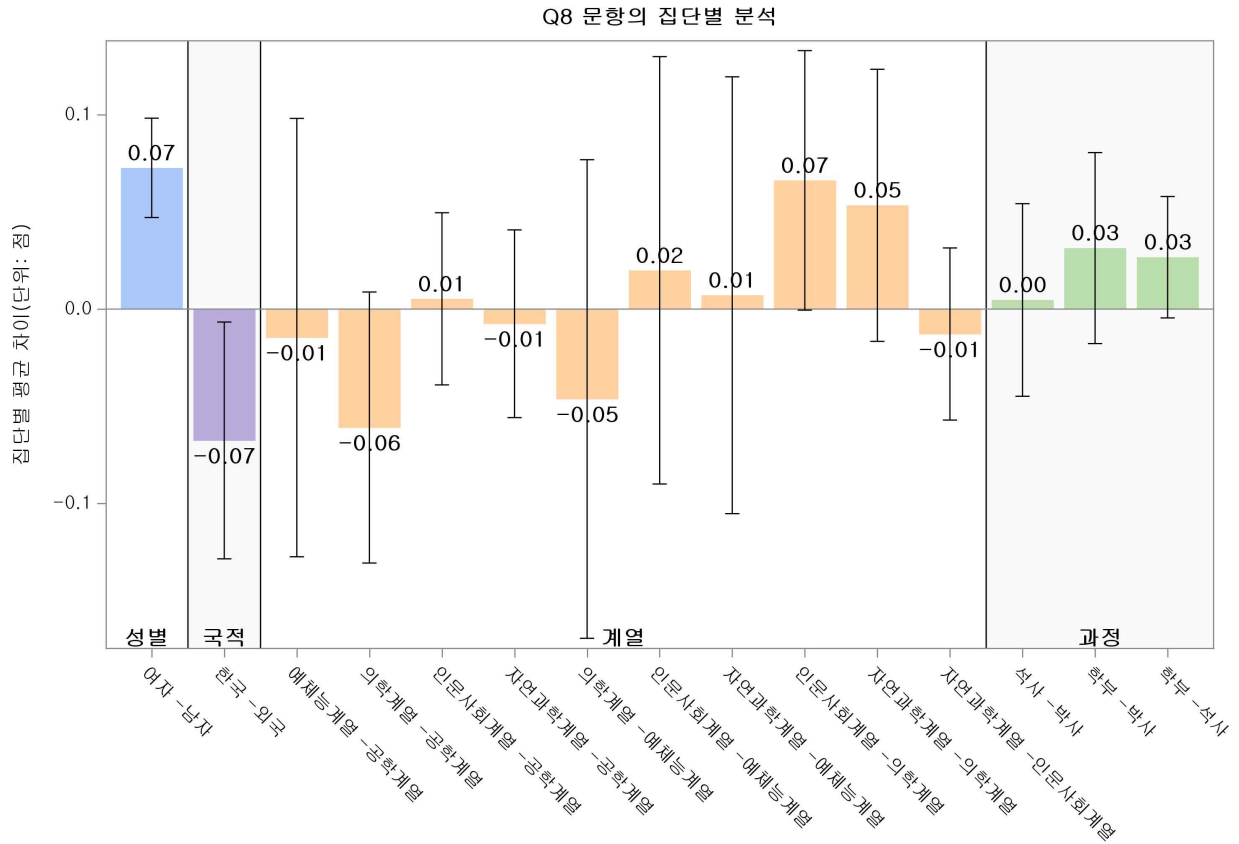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81 점, 외국인이 3.88 점으로 동일했다.

표 12 응답자 특성별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공학계열	7	0.49	19	1.32	231	16.09	1,179	82.1	3.8	0.47	4
예체능계열	.	.	1	0.75	22	16.42	111	82.84	3.82	0.4	4
의학계열	2	0.49	9	2.18	77	18.69	324	78.64	3.75	0.51	4
인문사회계열	9	0.42	24	1.13	287	13.54	1,799	84.9	3.83	0.44	4
자연과학계열	4	0.32	20	1.58	193	15.29	1,045	82.81	3.81	0.46	4
박사	5	0.87	9	1.56	84	14.53	480	83.04	3.8	0.49	4
석사	8	0.37	31	1.44	346	16.02	1,775	82.18	3.8	0.46	4
학부	9	0.34	33	1.26	380	14.48	2,203	83.92	3.82	0.44	4
남자	18	0.6	53	1.77	506	16.88	2,420	80.75	3.78	0.49	4
여자	4	0.17	20	0.85	304	12.85	2,038	86.14	3.85	0.39	4
외국	.	.	3	1.28	23	9.83	208	88.89	3.88	0.37	4
한국	22	0.43	70	1.36	787	15.34	4,250	82.86	3.81	0.46	4
합계	22	0.41	73	1.36	810	15.1	4,458	83.13	3.81	0.45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7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의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7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응답자 유형 간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0%로 한국인 남학생 2.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여학생은 1.9%로 한국인 여학생은 1.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0%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의학계열 학부생이 2.9%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26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동의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시각화 결과

매우 동의한다	613(80.6%)	566(83.9%)	39(83%)	72(82.8%)	224(80.6%)	100(74.6%)	812(84.3%)	987(85.4%)	567(82.3%)	478(83.4%)
다소 동의한다	133(17.5%)	98(14.5%)	8(17%)	14(16.1%)	47(16.9%)	30(22.4%)	133(13.8%)	154(13.3%)	109(15.8%)	84(14.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1(1.4%)	8(1.2%)	0(0%)	1(1.1%)	6(2.2%)	3(2.2%)	13(1.3%)	11(1%)	10(1.5%)	10(1.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5%)	3(0.4%)	0(0%)	0(0%)	1(0.4%)	1(0.7%)	5(0.5%)	4(0.3%)	3(0.4%)	1(0.2%)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2) 소결

인권헌장 개별 조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종합 요약해보면 <표 13>과 같다. 인격권, 차별금지과 평등권,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등에 대해 응답자의 계열, 학부 혹은 대학원생 여부,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95%에서 99%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동의 수준은 인권헌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보편적인 가치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인권헌장의 각 인권 조항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 (%)

	인격권	평등권	차별금지 의무	사상 등 자유	연구 등 권리	적정 편의보장	적정권리 절차	인권존중 의무
공학계열	99.44	96.80	94.57	97.08	98.75	98.39	98.61	98.19
예체능계열	100.00	97.76	97.76	98.50	98.51	99.25	99.26	99.26
의학계열	99.28	97.33	96.11	98.30	98.79	97.33	98.30	97.33
인문사회계열	99.01	97.31	95.00	98.49	98.87	98.49	98.64	98.44
자연과학계열	99.28	97.31	95.57	97.22	98.34	97.94	98.89	98.10
박사	98.44	96.89	96.02	97.92	98.27	97.41	97.93	97.57
석사	98.88	96.90	95.14	97.22	98.42	97.87	98.47	98.20
학부	99.69	97.48	95.01	98.25	99.01	98.78	99.01	98.40
남자	99.10	96.20	92.96	97.19	98.30	97.90	98.50	97.63
여자	99.41	98.43	97.97	98.56	99.20	98.73	98.90	98.99
외국	98.29	99.15	98.72	97.44	99.14	98.29	97.44	98.72
한국	99.28	97.10	95.01	97.82	98.68	98.27	98.73	98.20
합계	99.24	97.19	95.17	97.80	98.69	98.27	98.68	98.23

인권헌장을 구성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의는 서울대 구성원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헌장 제정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수준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

인권헌장 개별 조항에 대한 동의는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권헌장에 제정될 때 어느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정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왜 관심이 없는지,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는지, 왜 동의하거나 반대를 하는지, 어느 조항에 찬성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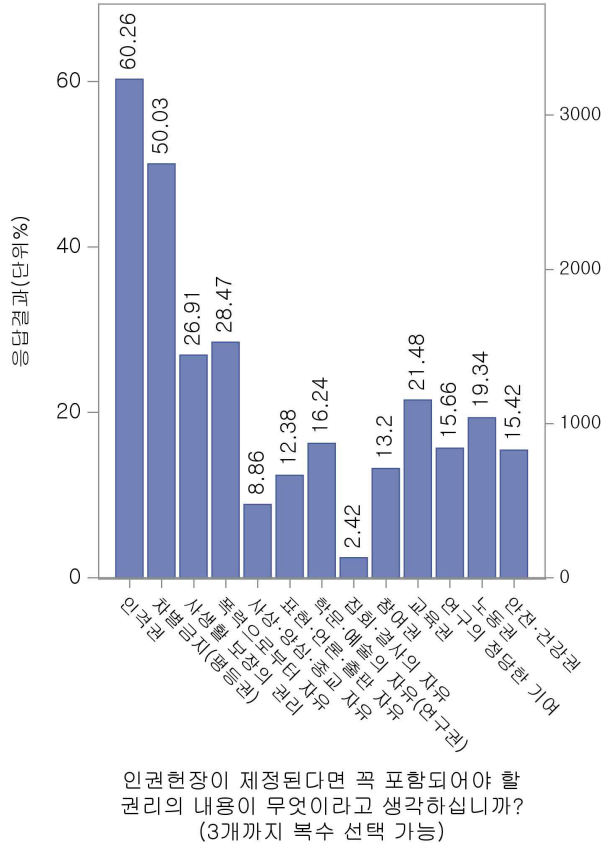
(1) 문항분석

9. 인권헌장이 제정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인권헌장 제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권리를 세 가지까지 선택할 것을 응답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림 25>와 <표 14>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인격권과 차별금지(평등권)가 인권헌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사생활 보장의 권리 등이 뒤따르고 있다.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학부생은 차별금지(평등권), 인격권, 노동권, 참여권 순으로, 대학원생은 인격권, 차별금지(평등권), 노동권,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순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권리를 선택했는데, 이 결과와 9번 문항의 결과를 비교하면 인격권과 차별금지(평등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권리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의견⁵⁾으로 위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해서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없다는 의견 및 차별금지에서 정의하는 ‘차별’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기타응답자 수는 2차 3명, 3차 3명, 4차 2명으로 총 8명이다.

그림 27 인권헌장에 꼭 포함되어야 권리에 대한 빈도분석



인권항목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인격권	3232	60.26%	3232	20.73%
차별금지(평등권)	2683	50.03%	5915	37.94%
사생활 보장(의 권리)	1443	26.91%	7358	47.2%
폭력으로부터 자유	1527	28.47%	8885	57%
사상·양심·종교 자유	475	8.86%	9360	60.04%
표현·언론·출판 자유	664	12.38%	10024	64.3%
학문·예술의 자유(연구권)	871	16.24%	10895	69.89%
집회·결사의 자유	130	2.42%	11025	70.72%
참여권	708	13.2%	11733	75.26%
교육권	1152	21.48%	12885	82.65%
연구의 정당한 기여	840	15.66%	13725	88.04%
노동권	1037	19.34%	14762	94.69%
안전·건강권	827	15.42%	15589	100%

인권항목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인격권	53(23.7%)	99(21.6%)	788(21.2%)	292(19.9%)
차별금지(평등권)	42(18.8%)	95(20.7%)	213(14.4%)	333(20.6%)
사생활 보장(의 권리)	26(11.6%)	58(12.7%)	904(10.7%)	455(7%)
폭력으로부터 자유	18(8%)	56(12.2%)	714(8.5%)	739(11.4%)
사상·양심·종교 자유	24(10.7%)	22(4.8%)	320(3.8%)	109(1.7%)
표현·언론·출판 자유	17(7.6%)	24(5.2%)	433(5.1%)	190(2.9%)
학문·예술의 자유(연구권)	7(3.1%)	9(2%)	602(7.1%)	253(3.9%)
집회·결사의 자유	8(3.6%)	0(0%)	76(0.9%)	46(0.7%)
참여권	9(4%)	20(4.4%)	377(4.5%)	302(4.7%)
교육권	2(0.9%)	29(6.3%)	595(7.1%)	526(8.1%)
연구의 정당한 기여	4(1.8%)	5(1.1%)	517(6.1%)	314(4.8%)
노동권	9(4%)	20(4.4%)	487(5.8%)	521(8%)
안전·건강권	5(2.2%)	21(4.6%)	402(4.8%)	399(6.2%)

표 14 응답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인권헌장 설문조사	인격권	차별금지(평등권)	폭력으로부터 자유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대학생)	차별금지(평등권)	인격권	노동권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대학원생)	인격권	차별금지(평등권)	노동권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인격권’을 기준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15>와 <그림 36>과 같이 외국인 남학생은 71.1%로 한국인 남학생 63.6%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인격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여학생은 64.8%로 한국인 여학생 59.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55.5%로 ‘인격권’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5 인권현장에 꼭 포함되어야 권리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응답결과

	인격권	차별금지 (평등권)	사생활 보장의 권리	폭력으로부 터 자유	사상·양심· 종교 자유	표현·언론· 출판 자유	학문·예술 의 자유 (연구권)	집회·결사 의 자유	참여권	교육권	연구의 정당한 기여	노동권	안전·건강 권	최빈값
공학 계열	891 (21.54%)	617 (14.92%)	459 (11.1%)	400 (9.67%)	108 (2.61%)	185 (4.47%)	227 (5.49%)	31 (0.75%)	180 (4.35%)	272 (6.58%)	276 (6.67%)	264 (6.38%)	226 (5.46%)	인격권
예체 능계열	76 (19.64%)	63 (16.28%)	30 (7.75%)	43 (11.11%)	8 (2.07%)	12 (3.1%)	36 (9.3%)	3 (0.78%)	14 (3.62%)	33 (8.53%)	10 (2.58%)	31 (8.01%)	28 (7.24%)	인격권
의학 계열	254 (21.26%)	202 (16.9%)	141 (11.8%)	126 (10.54%)	41 (3.43%)	39 (3.26%)	34 (2.85%)	6 (0.5%)	42 (3.51%)	64 (5.36%)	81 (6.78%)	89 (7.45%)	76 (6.36%)	인격권
인문 사회 계열	1,261 (20.33%)	1,191 (19.2%)	456 (7.35%)	612 (9.87%)	221 (3.56%)	294 (4.74%)	369 (5.95%)	61 (0.98%)	332 (5.35%)	507 (8.17%)	220 (3.55%)	394 (6.35%)	284 (4.58%)	인격권
자연 과학 계열	750 (20.44%)	610 (16.63%)	357 (9.73%)	346 (9.43%)	97 (2.64%)	134 (3.65%)	205 (5.59%)	29 (0.79%)	140 (3.82%)	276 (7.52%)	253 (6.9%)	259 (7.06%)	213 (5.81%)	인격권
박사	339 (20.14%)	308 (18.3%)	177 (10.52%)	156 (9.27%)	48 (2.85%)	57 (3.39%)	95 (5.64%)	10 (0.59%)	59 (3.51%)	112 (6.65%)	107 (6.36%)	126 (7.49%)	89 (5.29%)	인격권
석사	1,306 (20.85%)	1,085 (17.32%)	595 (9.5%)	642 (10.25%)	168 (2.68%)	230 (3.67%)	317 (5.06%)	44 (0.7%)	236 (3.77%)	390 (6.23%)	410 (6.54%)	497 (7.93%)	345 (5.51%)	인격권
학부	1,587 (20.77%)	1,290 (16.88%)	671 (8.78%)	729 (9.54%)	259 (3.39%)	377 (4.93%)	459 (6.01%)	76 (0.99%)	413 (5.41%)	650 (8.51%)	323 (4.23%)	414 (5.42%)	393 (5.14%)	인격권
남자	1,841 (21.28%)	1,255 (14.51%)	930 (10.75%)	732 (8.46%)	344 (3.98%)	450 (5.2%)	609 (7.04%)	84 (0.97%)	386 (4.46%)	597 (6.9%)	521 (6.02%)	496 (5.73%)	407 (4.7%)	인격권
여자	1,391 (20.05%)	1,428 (20.59%)	513 (7.4%)	795 (11.46%)	131 (1.89%)	214 (3.08%)	262 (3.78%)	46 (0.66%)	322 (4.64%)	555 (8%)	319 (4.6%)	541 (7.8%)	420 (6.05%)	평등권
외국	152 (22.29%)	137 (20.09%)	84 (12.32%)	74 (10.85%)	46 (6.74%)	41 (6.01%)	16 (2.35%)	8 (1.17%)	29 (4.25%)	31 (4.55%)	9 (1.32%)	29 (4.25%)	26 (3.81%)	인격권
한국	3,080 (20.66%)	2,546 (17.08%)	1,359 (9.12%)	1,453 (9.75%)	429 (2.88%)	623 (4.18%)	855 (5.74%)	122 (0.82%)	679 (4.55%)	1,121 (7.52%)	831 (5.57%)	1,008 (6.76%)	801 (5.37%)	인격권
합계	3,232 (20.73%)	2,683 (17.21%)	1,443 (9.26%)	1,527 (9.8%)	475 (3.05%)	664 (4.26%)	871 (5.59%)	130 (0.83%)	708 (4.54%)	1,152 (7.39%)	840 (5.39%)	1,037 (6.65%)	827 (5.31%)	인격권

그림 28 인권현장에 꼭 포함되어야 권리에 집단별 차이 분석 시각화

인격권	471(21.5%)	420(21.6%)	30(21.7%)	46(18.5%)	170(21.2%)	84(21.4%)	567(20.1%)	694(20.5%)	407(20.4%)	343(20.6%)
차별금지(평등권)	345(15.7%)	272(14%)	24(17.4%)	39(15.7%)	133(16.6%)	69(17.6%)	552(19.6%)	639(18.9%)	339(17%)	271(16.2%)
사생활 보장의 권리	259(11.8%)	200(10.3%)	7(5.1%)	23(9.2%)	100(12.5%)	41(10.5%)	219(7.8%)	237(7%)	187(9.4%)	170(10.2%)
폭력으로부터 자유	221(10.1%)	179(9.2%)	18(13%)	25(10%)	78(9.7%)	48(12.2%)	292(10.4%)	320(9.4%)	189(9.5%)	157(9.4%)
사상·양심·종교 자유	52(2.4%)	56(2.9%)	4(2.9%)	4(1.6%)	23(2.9%)	18(4.6%)	88(3.1%)	133(3.9%)	49(2.5%)	48(2.9%)
표현·언론·출판 자유	75(3.4%)	110(5.7%)	3(2.2%)	9(3.6%)	23(2.9%)	16(4.1%)	129(4.6%)	165(4.9%)	57(2.9%)	77(4.6%)
학문·예술의 자유(연구권)	100(4.6%)	127(6.5%)	11(8%)	25(10%)	21(2.6%)	13(3.3%)	177(6.3%)	192(5.7%)	103(5.2%)	102(6.1%)
집회·결사의 자유	12(0.5%)	19(1%)	1(0.7%)	2(0.8%)	3(0.4%)	3(0.8%)	20(0.7%)	41(1.2%)	18(0.9%)	11(0.7%)
참여권	77(3.5%)	103(5.3%)	6(4.3%)	8(3.2%)	25(3.1%)	17(4.3%)	121(4.3%)	211(6.2%)	66(3.3%)	74(4.4%)
교육권	121(5.5%)	151(7.8%)	8(5.8%)	25(10%)	38(4.7%)	26(6.6%)	203(7.2%)	304(9%)	132(6.6%)	144(8.6%)
연구의 정당한 기여	167(7.6%)	109(5.6%)	5(3.6%)	5(2%)	64(8%)	17(4.3%)	128(4.5%)	92(2.7%)	153(7.7%)	100(6%)
노동권	161(7.3%)	103(5.3%)	11(8%)	20(8%)	71(8.8%)	18(4.6%)	208(7.4%)	186(5.5%)	172(8.6%)	87(5.2%)
안전·건강권	132(6%)	94(4.8%)	10(7.2%)	18(7.2%)	54(6.7%)	22(5.6%)	110(3.9%)	174(5.1%)	128(6.4%)	85(5.1%)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0. 귀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해당 문항을 통해 관심 정도를 4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문사회계열이 3.71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학계열 3.58 점, 자연과학계열 3.56 점,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이 3.55 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박사과정생이 3.78 점, 석사과정생이 3.70 점, 학부생이 3.51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66 점, 남자가 3.58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3.59 점, 외국인이 3.28 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3.75%에 해당하는 737 명이 매우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관심이 있다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52.43%로, 전체 응답자의 세 명 중 두 명은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동일 문항에 대한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7.6%,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9.8%로 당해년도 조사에 비해 관심도가 현저히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관심도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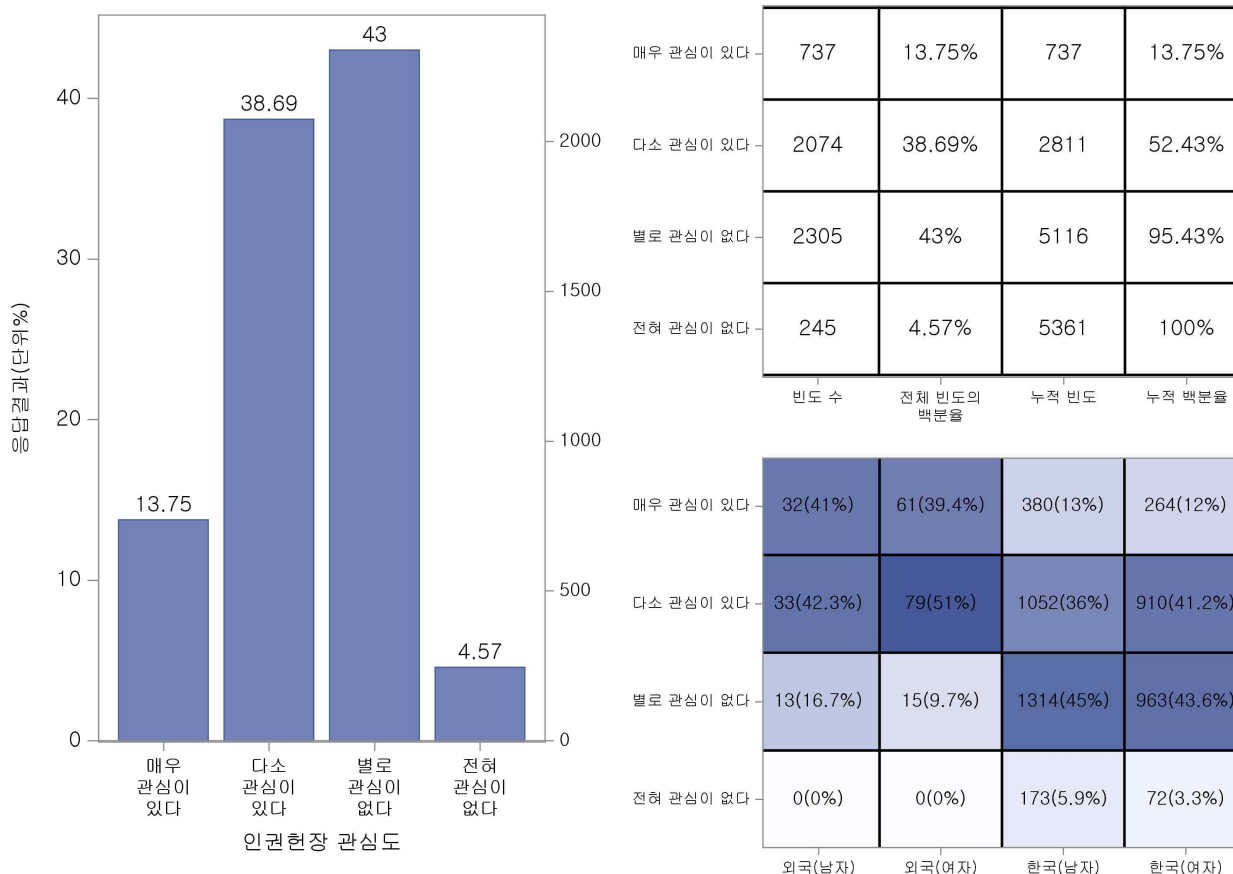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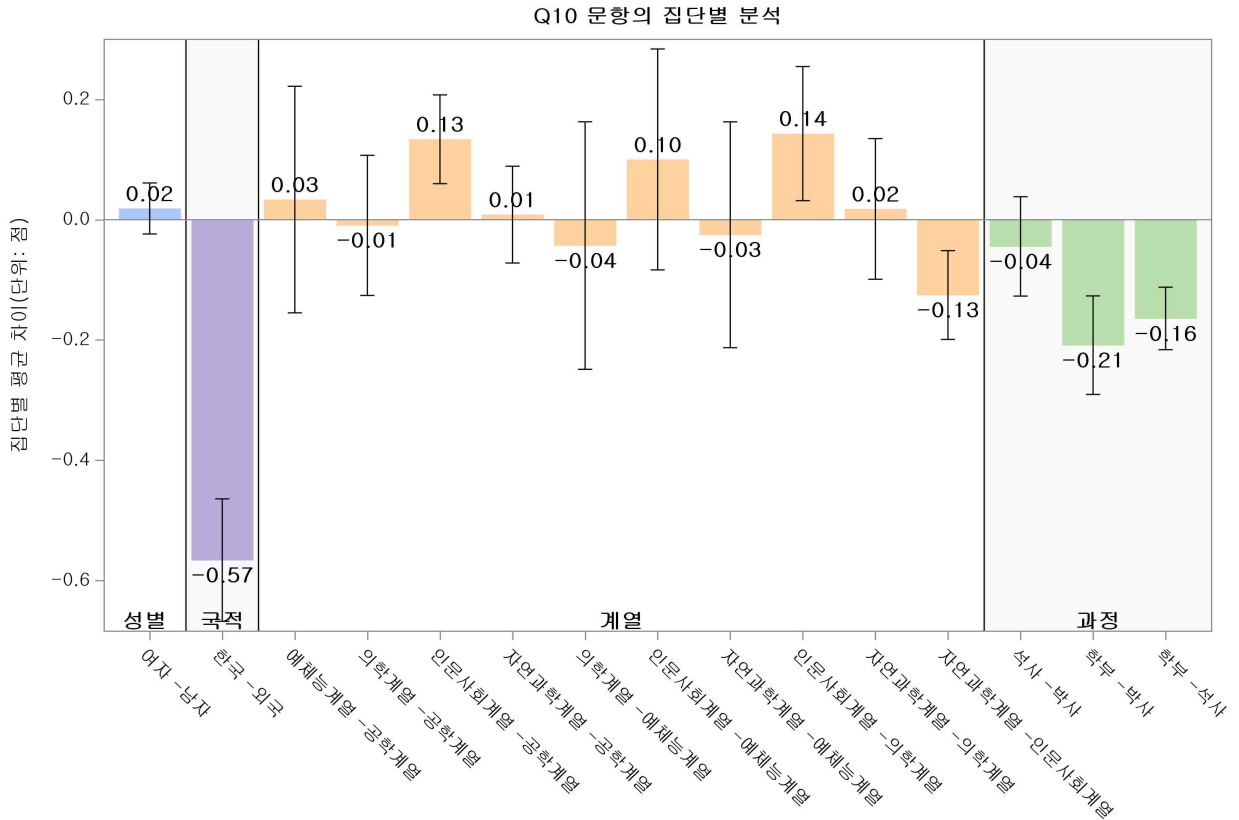


표 16 인권헌장 제정 관심도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분석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N	%	N	%	N	%	N	%			
공학계열	77	5.36	665	46.31	523	36.42	171	11.91	3.55	0.77	3
예체능계열	2	1.49	62	46.27	64	47.76	6	4.48	3.55	0.61	4
의학계열	16	3.89	183	44.53	168	40.88	44	10.71	3.58	0.73	3
인문사회계열	83	3.92	822	38.81	846	39.94	367	17.33	3.71	0.8	4
자연과학계열	67	5.31	573	45.4	473	37.48	149	11.81	3.56	0.77	3
박사	17	2.94	201	34.78	254	43.94	106	18.34	3.78	0.77	4
석사	85	3.94	843	39.06	871	40.36	359	16.64	3.7	0.79	4
학부	143	5.45	1,261	48.04	949	36.15	272	10.36	3.51	0.75	3
남자	173	5.77	1,327	44.28	1,085	36.2	412	13.75	3.58	0.8	3
여자	72	3.05	978	41.37	989	41.84	325	13.75	3.66	0.75	4
외국	.	.	28	12.02	112	48.07	93	39.91	3.28	0.67	4
한국	245	4.78	2,277	44.4	1,962	38.26	644	12.56	3.59	0.77	3
합계	245	4.57	2,305	43	2,074	38.69	737	13.75	3.62	0.78	3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성별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적의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평균 차이가 0.57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3만큼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이 의학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4만큼 높았고 자연과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3만큼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0 인권헌장 제정 관심도에 대한 응답자 유형 간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와 ‘전혀 관심이 없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16.7%, 외국인 여학생 9.7%로 나타났으나, 한국인 남학생 50.9%와 한국인 여학생 46.9%가 부정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학생 부정응답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이 35.8%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공학계열 학부생이 58.4%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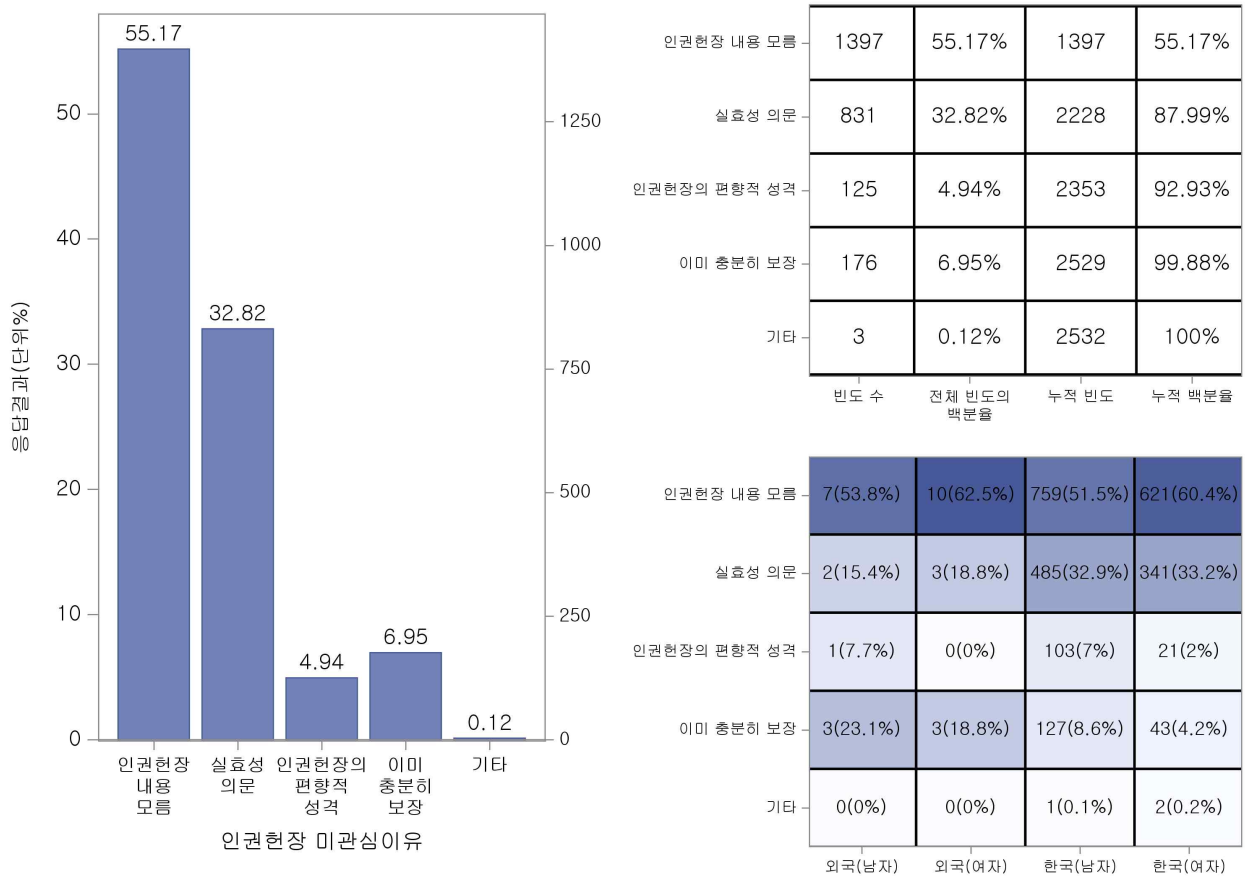
그림 31 인권헌장 제정 관심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 시각화

매우 관심이 있다	112(14.7%)	59(8.7%)	4(8.5%)	2(2.3%)	33(11.9%)	11(8.2%)	213(22.1%)	154(13.3%)	103(14.9%)	46(8%)
다소 관심이 있다	301(39.6%)	222(32.9%)	24(51.1%)	40(46%)	118(42.6%)	50(37.3%)	405(42.1%)	441(38.1%)	277(40.2%)	196(34.2%)
별로 관심이 없다	319(41.9%)	346(51.3%)	19(40.4%)	43(49.4%)	114(41.2%)	69(51.5%)	317(33%)	505(43.7%)	275(39.9%)	298(52%)
전혀 관심이 없다	29(3.8%)	48(7.1%)	0(0%)	2(2.3%)	12(4.3%)	4(3%)	27(2.8%)	56(4.8%)	34(4.9%)	33(5.8%)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1. (10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혹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17%의 응답자가 무관심의 이유로 인권헌장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32.82%가 인권헌장의 실효성 의문을 무관심 이유로 지목했다. 전체 응답자의 10% 이하만이 무관심의 이유로 인권이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6.95%)과 인권헌장의 편향적 성격(4.94%)을 뽑았다. 기타의견⁶⁾으로는 현행 법령 등의 다른 적용 규정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인권헌장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고 지켜지는지 체감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32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이 없는 이유 빈도



인권헌장의 내용에 대해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체능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서 인권헌장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66.67%와 60.44%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인권헌장의 내용을 알지 못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60.44%로 남성의 51.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기타응답자 수는 2차 1명, 3차 10명, 4차 4명으로 총 15명이다.

표 17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

	인권헌장 내용 모름		실효성 의문		인권헌장의 편향적 성격		이미 충분히 보장		기타		최빈값
	N	%	N	%	N	%	N	%	N	%	
공학계열	423	57.39	209	28.36	39	5.29	66	8.96	.	.	인권헌장내용모름
예체능계열	42	66.67	17	26.98	.	.	4	6.35	.	.	인권헌장내용모름
의학계열	89	44.72	87	43.72	11	5.53	11	5.53	1	0.5	인권헌장내용모름
인문사회계열	458	51.12	346	38.62	36	4.02	54	6.03	2	0.22	인권헌장내용모름
자연과학계열	385	60.44	172	27	39	6.12	41	6.44	.	.	인권헌장내용모름
박사	88	40.93	105	48.84	14	6.51	8	3.72	.	.	실효성의문
석사	472	51.42	334	36.38	53	5.77	58	6.32	1	0.11	인권헌장내용모름
학부	837	59.83	392	28.02	58	4.15	110	7.86	2	0.14	인권헌장내용모름
남자	766	51.48	487	32.73	104	6.99	130	8.74	1	0.07	인권헌장내용모름
여자	631	60.44	344	32.95	21	2.01	46	4.41	2	0.19	인권헌장내용모름
외국	1,380	55.13	826	33	124	4.95	170	6.79	3	0.12	인권헌장내용모름
한국	17	58.62	5	17.24	1	3.45	6	20.69	.	.	인권헌장내용모름
합계	1,397	55.17	831	32.82	125	4.94	176	6.95	3	0.12	인권헌장내용모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인권헌장 내용 모름’을 기준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학생은 53.8%로 한국인 남학생 51.5%에 비해 높은 비율로 해당 항목을 선택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여학생은 62.5%로 한국인 여학생 60.4%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인권헌장 내용을 몰라서 인권헌장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71.7%로 해당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39.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3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간 차이의 시각화

인권헌장 내용 모름	180(52.3%)	243(61.8%)	10(55.6%)	32(71.1%)	50(39.7%)	39(53.4%)	162(47.9%)	296(53%)	158(51.5%)	227(68.8%)
실효성 의문	111(32.3%)	98(24.9%)	6(33.3%)	11(24.4%)	59(46.8%)	28(38.4%)	150(44.4%)	196(35.1%)	113(36.8%)	59(17.9%)
인권헌장의 편향적 성격	29(8.4%)	10(2.5%)	0(0%)	0(0%)	8(6.3%)	3(4.1%)	12(3.6%)	24(4.3%)	18(5.9%)	21(6.4%)
이미 충분히 보장	24(7%)	42(10.7%)	2(11.1%)	2(4.4%)	8(6.3%)	3(4.1%)	14(4.1%)	40(7.2%)	18(5.9%)	23(7%)
기타	0(0%)	0(0%)	0(0%)	0(0%)	1(0.8%)	0(0%)	0(0%)	2(0.4%)	0(0%)	0(0%)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림 34 인권헌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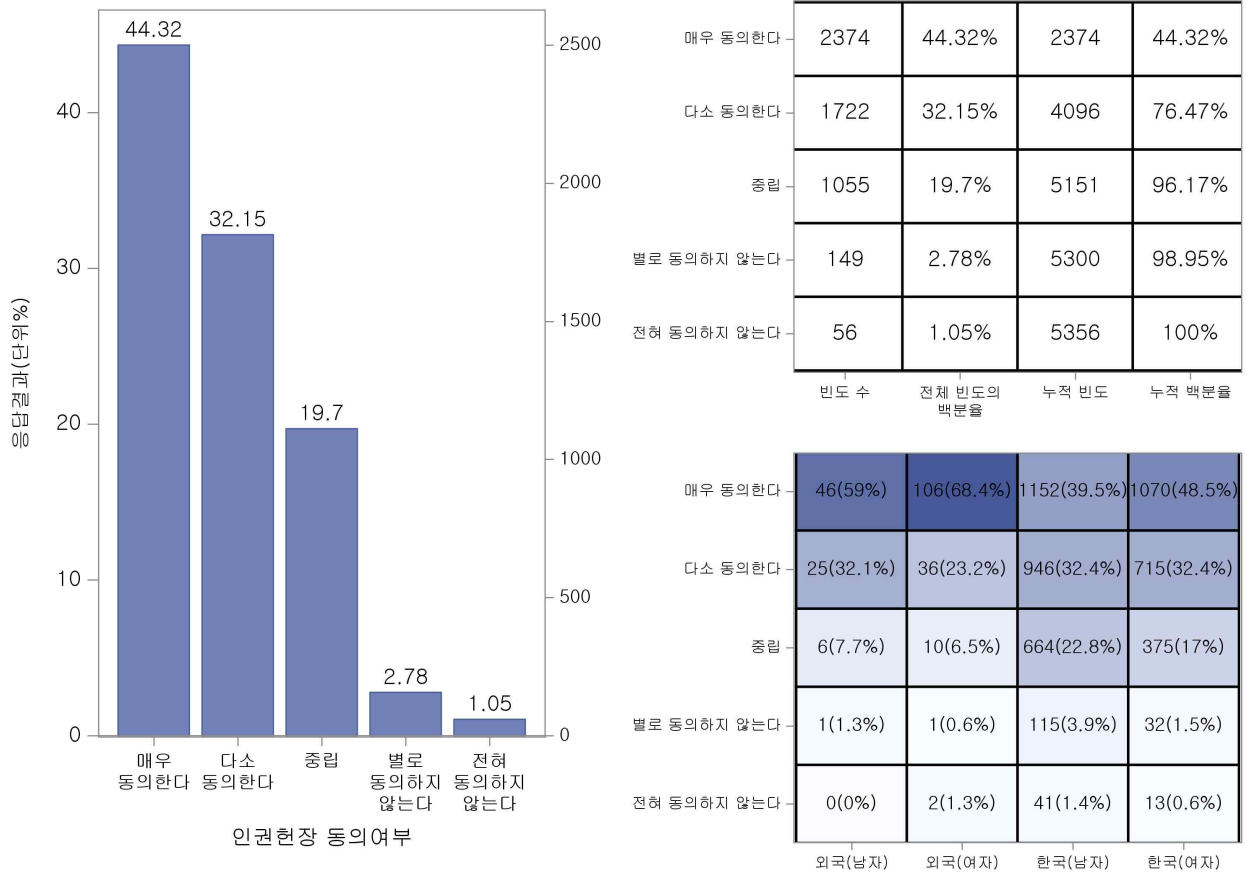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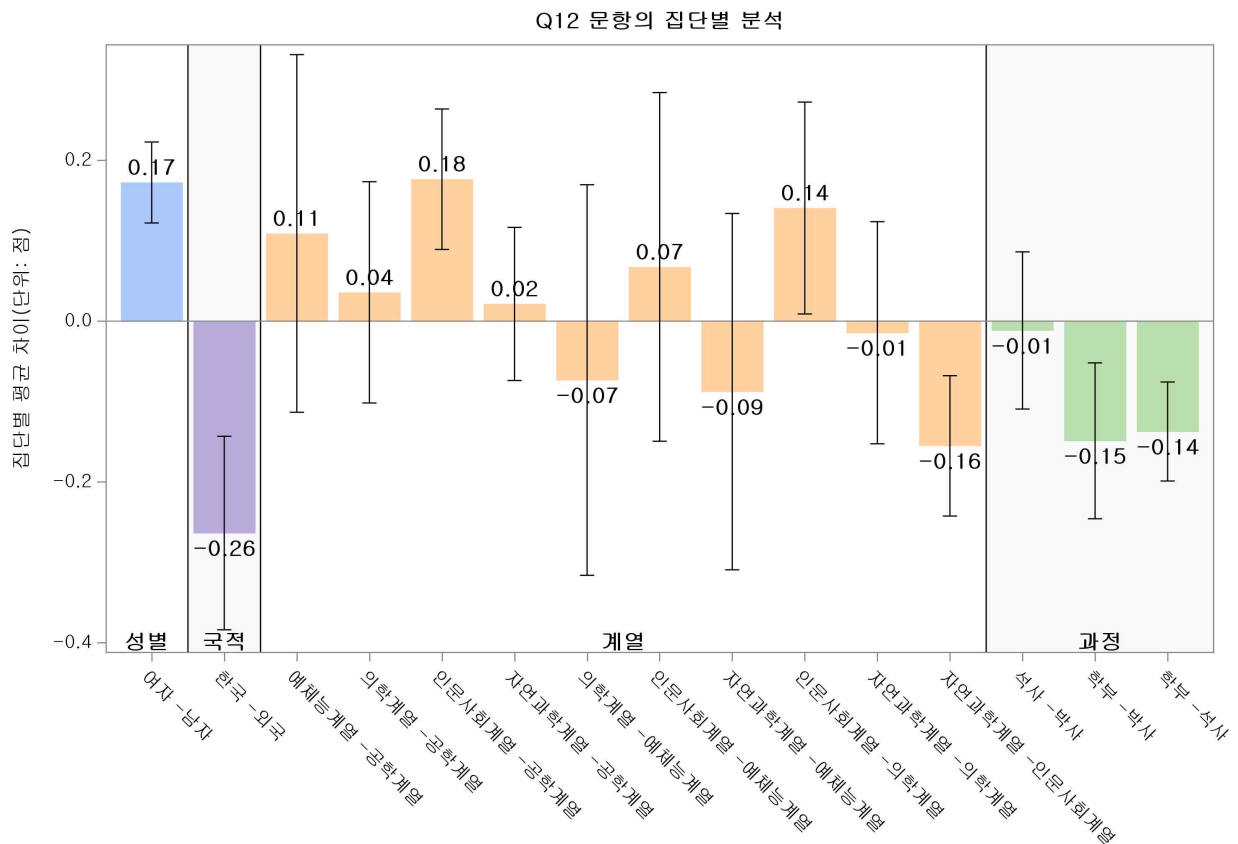
표 18 인권헌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중립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3	0.91	45	3.14	346	24.13	500	34.87	530	36.96	4.04	0.9	5
예체능계열	.	.	3	2.24	27	20.15	44	32.84	60	44.78	4.2	0.84	5
의학계열	4	0.97	12	2.92	85	20.68	127	30.9	183	44.53	4.15	0.91	5
인문사회계열	25	1.18	53	2.51	307	14.52	661	31.25	1,069	50.54	4.27	0.88	5
자연과학계열	14	1.11	36	2.85	290	22.98	390	30.9	532	42.16	4.1	0.93	5
박사	8	1.39	20	3.47	83	14.38	165	28.6	301	52.17	4.27	0.93	5
석사	16	0.74	60	2.78	365	16.92	694	32.17	1,022	47.38	4.23	0.88	5
학부	32	1.22	69	2.63	607	23.15	863	32.91	1,051	40.08	4.08	0.92	5
남자	41	1.37	116	3.87	670	22.36	971	32.41	1,198	39.99	4.06	0.95	5
여자	15	0.64	33	1.4	385	16.31	751	31.82	1,176	49.83	4.29	0.83	5
외국	2	0.86	2	0.86	16	6.87	61	26.18	152	65.24	4.54	0.74	5
한국	54	1.05	147	2.87	1,039	20.28	1,661	32.42	2,222	43.37	4.14	0.91	5
합계	56	1.05	149	2.78	1,055	19.7	1,722	32.15	2,374	44.32	4.16	0.91	5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32%에 해당하는 2,374 명이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동의한 다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의 76.47%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권규범제 정에관한연구보고서’ 결과에서는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92.4%였으며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93.1%로 나타났으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 결과에서 는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58.4%,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54.4%로 다소 낮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대학원생, 학부생을 아우르는 전체 응답자의 76.47%가 긍정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헌장 제정을 동의하는 비율이 다시 조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 교하면 위의 <표 18>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문사회계열이 4.27 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이 4.20 점, 의학계열이 4.15 점, 자연과학계열이 4.10 점, 공 학계열이 4.04 점 순으로 공학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박사과정생이 4.27 점, 석사과정생이 4.23 점, 학부생이 4.08 점 순으로 나타났 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4.29 점, 남자가 4.06 점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4.14 점, 외국인이 4.54 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인권헌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집단별 통계적 차이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계열 범주를 구성하는 대다수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7만큼 높았으며, 국적의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평균 차이가 0.26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 중 인문사회계열은 공학계열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8만큼 높았으며, 의학계열에 비해서는 0.14만큼 높았고, 자연과학계열에 비해서는 0.16만큼 높았다.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집단 중에서는 학부가 박사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5만큼 낮았고, 석사에 비해서는 0.14만큼 낮았다.

그림 36 인권헌장 제정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차이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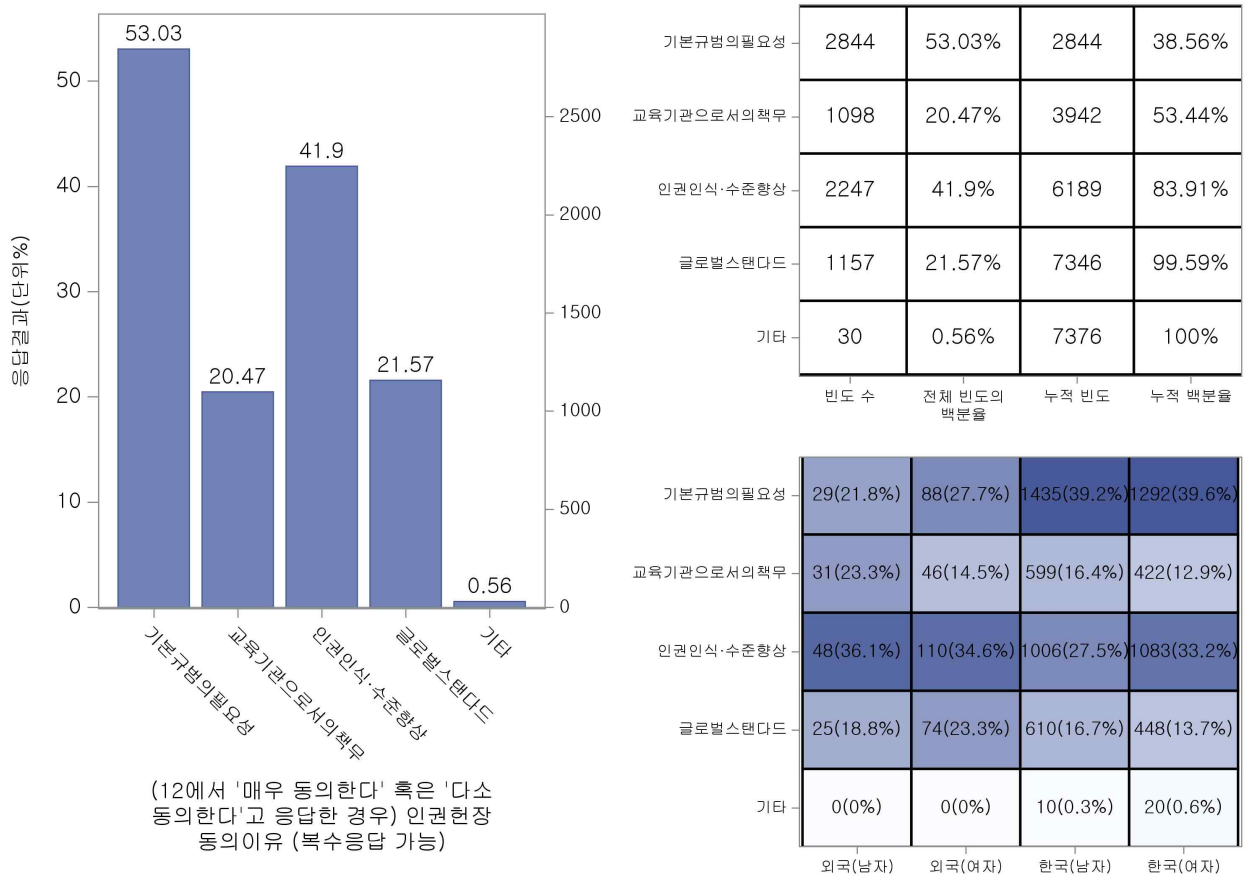
매우 동의한다	310(40.8%)	220(32.6%)	20(42.6%)	40(46%)	126(45.5%)	57(42.5%)	533(55.5%)	536(46.4%)	334(48.5%)	198(34.6%)
다소 동의한다	260(34.2%)	240(35.6%)	18(38.3%)	26(29.9%)	86(31%)	41(30.6%)	296(30.8%)	365(31.6%)	199(28.9%)	191(33.3%)
중립	160(21.1%)	186(27.6%)	7(14.9%)	20(23%)	56(20.2%)	29(21.6%)	95(9.9%)	212(18.4%)	130(18.9%)	160(27.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5(3.3%)	20(3%)	2(4.3%)	1(1.1%)	6(2.2%)	6(4.5%)	29(3%)	24(2.1%)	18(2.6%)	18(3.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0.7%)	8(1.2%)	0(0%)	0(0%)	3(1.1%)	1(0.7%)	8(0.8%)	17(1.5%)	8(1.2%)	6(1%)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1.3%, 외국인 여학생 1.9%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남학생 5.3%, 한국인 여학생 2.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1.1%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의학계열 학부생이 5.2%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13. (12에서 '매우 동의한다' 혹은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인권헌장 제정에 긍정응답을 한 경우,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3.03%가 기본규범의 필요성을 동의 이유로 지목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41.9%가 인권인식 및 수준의 향상을 이유로 지목했으며, 21.57%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20.47%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라는 점을 이유로 지목했다. 기타의견⁷⁾으로는 인권헌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가 대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성문화된 규범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37 인권헌장 제정 동의 이유에 대한 빈도



응답 집단에 관계없이 대부분 기본규범의 필요성과 인권인식 수준의 향상이 주된 인권헌장 제정의 동의 이유로 나타났다.

7) 기타응답자 수는 2차 4명, 3차 13명, 4차 14명으로 총 31명이다.

표 19 응답자 유형별 인권헌장 동의 이유에 대한 빈도

	기본규범의 필요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		인권인식·수준 향상		글로벌스탠다드		기타		최빈값
	N	%	N	%	N	%	N	%	N	%	
공학계열	685	37.76	303	16.7	496	27.34	330	18.19	.	.	기본규범의 필요성
예체능계열	70	37.23	20	10.64	67	35.64	31	16.49	.	.	기본규범의 필요성
의학계열	211	38.16	93	16.82	162	29.29	87	15.73	.	.	기본규범의 필요성
인문사회계열	1,241	38.61	454	14.13	1,056	32.86	453	14.09	10	0.31	기본규범의 필요성
자연과학계열	637	39.64	228	14.19	466	29	256	15.93	20	1.24	기본규범의 필요성
박사	306	36.65	129	15.45	261	31.26	139	16.65	.	.	기본규범의 필요성
석사	1,154	36.98	482	15.44	950	30.44	525	16.82	10	0.32	기본규범의 필요성
학부	1,384	40.47	487	14.24	1,036	30.29	493	14.42	20	0.58	기본규범의 필요성
남자	1,464	38.6	630	16.61	1,054	27.79	635	16.74	10	0.26	기본규범의 필요성
여자	1,380	38.52	468	13.06	1,193	33.3	522	14.57	20	0.56	기본규범의 필요성
외국	117	25.94	77	17.07	158	35.03	99	21.95	.	.	인권인식·수준향상
한국	2,727	39.38	1,021	14.74	2,089	30.17	1,058	15.28	30	0.43	기본규범의 필요성
합계	2,844	38.56	1,098	14.89	2,247	30.46	1,157	15.69	30	0.41	기본규범의 필요성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기본규범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학생은 21.8%로 한국인 남학생 39.2%에 비해 낮은 비율로 ‘기본규범의 필요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여학생은 27.7%로 한국인 여학생 39.6%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42.6%로 ‘기본규범의 필요성’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3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8 인권헌장 동의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차이 시각화

기본규범의 필요성	374(36.1%)	311(40%)	26(42.6%)	44(34.6%)	141(36.9%)	70(40.9%)	570(36.4%)	671(40.7%)	349(38.3%)	288(41.4%)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	173(16.7%)	130(16.7%)	4(6.6%)	16(12.6%)	68(17.8%)	25(14.6%)	238(15.2%)	216(13.1%)	128(14.1%)	100(14.4%)
인권인식·수준 향상	291(28.1%)	205(26.3%)	23(37.7%)	44(34.6%)	107(28%)	55(32.2%)	514(32.8%)	542(32.9%)	276(30.3%)	190(27.3%)
글로벌스탠다드	198(19.1%)	132(17%)	8(13.1%)	23(18.1%)	66(17.3%)	21(12.3%)	244(15.6%)	209(12.7%)	148(16.2%)	108(15.5%)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0(0.6%)	10(1.1%)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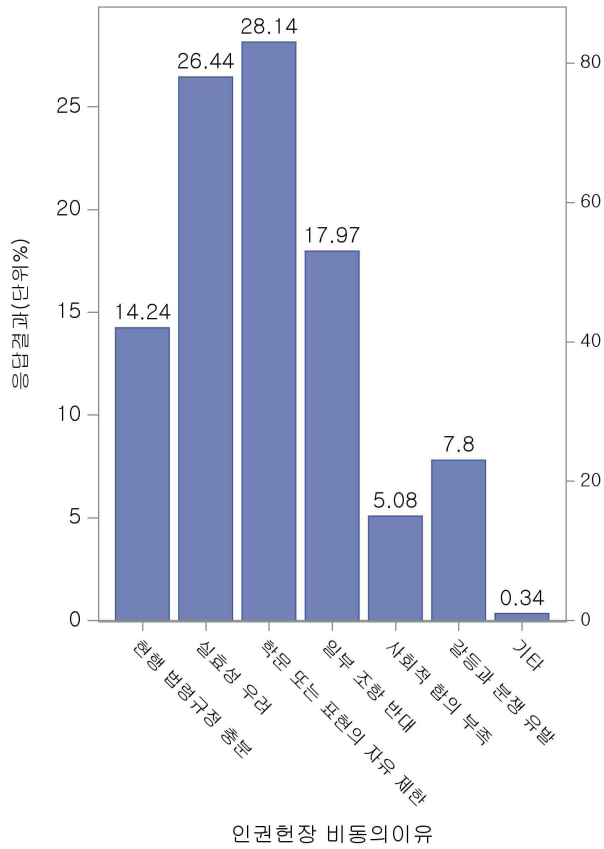
14. (12에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번 문항에서 인권헌장 제정에 부정응답을 한 경우,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그림 37>과 <표 20>에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14%가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실효성 우려(26.44%), 일부 조항 반대(17.97%), 현행 법령규정 충분(14.24%), 갈등과 분쟁 유발(7.8%), 사회적 합의 부족(6.08%) 등이 뒤따르고 있다.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학부생의 45.5%와 대학원생 47.8%가 실효성 우려를 이유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타의견을 선택한 학부생과 대학원생 각각 40.9%와 52.2%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사용된 것 외에 다른 예시가 필요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실효성 우려가 학부생 32.9%, 대학원생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했던 선지 외에도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포함에 동의할 수 없어서'가 포함되었고, '실효성 우려' 다음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학부생 24.3%, 대학원생 28.4%).

앞선 조사들에 추가 선지를 반영하여 진행한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실효성 우려' 보다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기타의견⁸⁾으로는 인권헌장의 편향적 성격,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포함에 비동의한다는 점 등이 있었다.

8) 기타응답자 수는 2차 1명, 3차 3명, 4차 3명으로 총 7명이다.

그림 39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빈도



이유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현행 법령규정 충분	42	14.24%	42	14.24%
실효성 우려	78	26.44%	120	40.68%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	83	28.14%	203	68.81%
일부 조항 반대	53	17.97%	256	86.78%
사회적 합의 부족	15	5.08%	271	91.86%
갈등과 분쟁 유발	23	7.8%	294	99.66%
기타	1	0.34%	295	100%

이유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현행 법령규정 충분	0(0%)	2(33.3%)	27(12.7%)	13(17.8%)
실효성 우려	1(33.3%)	0(0%)	57(26.8%)	20(27.4%)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	1(33.3%)	2(33.3%)	62(29.1%)	18(24.7%)
일부 조항 반대	1(33.3%)	0(0%)	36(16.9%)	16(21.9%)
사회적 합의 부족	0(0%)	2(33.3%)	12(5.6%)	1(1.4%)
갈등과 분쟁 유발	0(0%)	0(0%)	18(8.5%)	5(6.8%)
기타	0(0%)	0(0%)	1(0.5%)	0(0%)

표 20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빈도

	현행 법령규정 충분		실효성 우려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		일부 조항 반대		사회적 합의 부족		갈등과 분쟁 유발		기타		최빈값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6	18.82	22	25.88	19	22.35	15	17.65	6	7.06	7	8.24	.	.	실효성 우려
예체능계열	1	16.67	.	.	1	16.67	1	16.67	2	33.33	1	16.67	.	.	사회적합의부족
의학계열	5	17.86	8	28.57	7	25	7	25	.	.	1	3.57	.	.	실효성 우려
인문사회계열	13	13.13	27	27.27	34	34.34	12	12.12	3	3.03	9	9.09	1	1.01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자연과학계열	7	9.09	21	27.27	22	28.57	18	23.38	4	5.19	5	6.49	.	.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박사	6	16.67	10	27.78	3	8.33	10	27.78	1	2.78	6	16.67	.	.	실효성 우려
석사	14	11.97	35	29.91	35	29.91	19	16.24	8	6.84	6	5.13	.	.	실효성 우려
학부	22	15.49	33	23.24	45	31.69	24	16.9	6	4.23	11	7.75	1	0.7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남자	27	12.5	58	26.85	63	29.17	37	17.13	12	5.56	18	8.33	1	0.46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여자	15	18.99	20	25.32	20	25.32	16	20.25	3	3.8	5	6.33	.	.	실효성 우려
외국	2	22.22	1	11.11	3	33.33	1	11.11	2	22.22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한국	40	13.99	77	26.92	80	27.97	52	18.18	13	4.55	23	8.04	1	0.35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합계	42	14.24	78	26.44	83	28.14	53	17.97	15	5.08	23	7.8	1	0.34	학문 또는 표현의자유제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기준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학생은 33.3%로 한국인 남학생 29.1%에 비해 높은 비율로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여학생은 33.3%로 한국인 여학생 17.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50%로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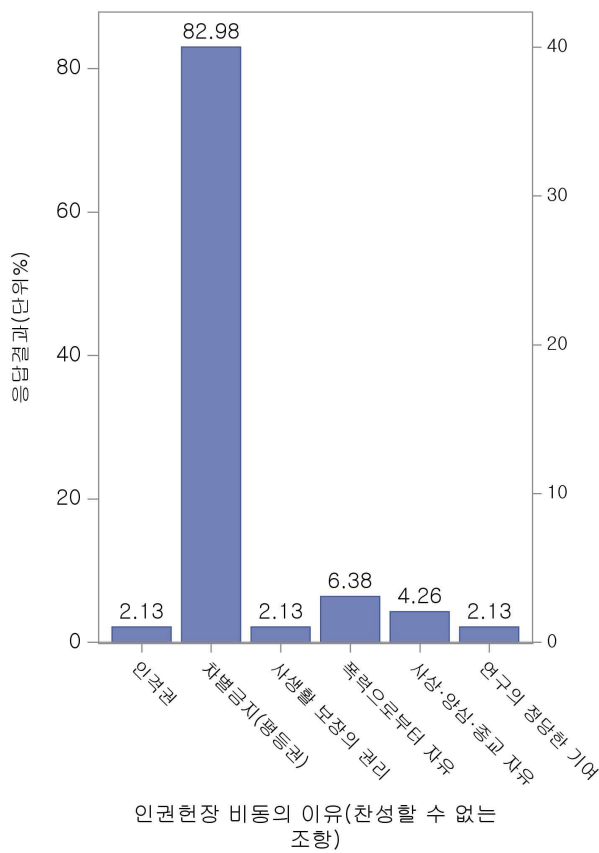
그림 40 인권헌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차이 시각화

헌법 법령규정 충분	7(15.6%)	9(22.5%)	0(0%)	1(25%)	4(21.1%)	1(11.1%)	5(10.9%)	8(15.1%)	4(9.8%)	3(8.3%)
실효성 우려	11(24.4%)	11(27.5%)	0(0%)	0(0%)	6(31.6%)	2(22.2%)	13(28.3%)	14(26.4%)	15(36.6%)	6(16.7%)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	10(22.2%)	9(22.5%)	1(50%)	0(0%)	4(21.1%)	3(33.3%)	13(28.3%)	21(39.6%)	10(24.4%)	12(33.3%)
일부 조항 반대	8(17.8%)	7(17.5%)	1(50%)	0(0%)	5(26.3%)	2(22.2%)	9(19.6%)	3(5.7%)	6(14.6%)	12(33.3%)
사회적 합의 부족	5(11.1%)	1(2.5%)	0(0%)	2(50%)	0(0%)	0(0%)	2(4.3%)	1(1.9%)	2(4.9%)	2(5.6%)
갈등과 분쟁 유발	4(8.9%)	3(7.5%)	0(0%)	1(25%)	0(0%)	1(11.1%)	4(8.7%)	5(9.4%)	4(9.8%)	1(2.8%)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1.9%)	0(0%)	0(0%)
	공과계열(대학원생)	공과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과계열(대학원생)	의과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5. (14에서 '인권헌장 중 일부 조항에 찬성할 수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조항에 찬성할 수 없으십니까?

14 번 문항에서 ‘인권헌장 중 일부 조항에 찬성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추가 응답을 요청하였다. <그림 39>와 <표 21>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82.98%(39 명)가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에 찬성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 뒤로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6.38%),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4.26%) 등이 뒤따르고 있으며 차별금지(평등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의견⁹⁾으로는 특정 조항이 아닌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이 있었다.

그림 41 찬성하지 않는 인권헌장 조항 빈도



조항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인권권	1	2.13%	1	2.13%
차별금지(평등권)	39	82.98%	40	85.11%
사생활 보호의 권리	1	2.13%	41	87.23%
폭력으로부터 자유	3	6.38%	44	93.62%
사상·양심·종교 자유	2	4.26%	46	97.87%
연구의 정당한 기여	1	2.13%	47	100%

조항	외국(남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인권권	0(0%)	1(3.2%)	0(0%)
차별금지(평등권)	1(100%)	25(80.6%)	13(86.7%)
사생활 보호의 권리	0(0%)	1(3.2%)	0(0%)
폭력으로부터 자유	0(0%)	1(3.2%)	2(13.3%)
사상·양심·종교 자유	0(0%)	2(6.5%)	0(0%)
연구의 정당한 기여	0(0%)	1(3.2%)	0(0%)

9) 기타응답자 수는 2차 1명, 3차 8명, 4차 3명으로 총 12명이다.

표 21 응답자 유형별 찬성하지 않는 인권헌장 조항 빈도

	인격권		차별금지 (평등권)		사생활 보장의 권리		폭력으로부 터 자유		사상·양심· 종교 자유		연구의 정당한 기여		최빈값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	.	10	83.33	.	.	1	8.33	.	.	1	8.33	평등권
예체능 계열	.	.	1	100	평등권
의학계열	.	.	6	100	평등권
인문사회 계열	1	9.09	9	81.82	1	9.09	.	.	평등권
자연과학 계열	.	.	13	76.47	1	5.88	2	11.76	1	5.88	.	.	평등권
박사	1	14.29	5	71.43	1	14.29	.	.	평등권
석사	.	.	17	94.44	1	5.56	평등권
학부	.	.	17	77.27	1	4.55	3	13.64	1	4.55	.	.	평등권
남자	1	3.13	26	81.25	1	3.13	1	3.13	2	6.25	1	3.13	평등권
여자	.	.	13	86.67	.	.	2	13.33	평등권
외국	.	.	1	100	평등권
한국	1	2.17	38	82.61	1	2.17	3	6.52	2	4.35	1	2.17	평등권
합계	1	2.13	39	82.98	1	2.13	3	6.38	2	4.26	1	2.13	평등권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차별금지(평등권)’을 기준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학생 응답자는 100%로 한국인 남학생 응답자 80.6%에 비해 높은 비율로 ‘차별금지(평등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여학생 응답자의 86.7%가 ‘차별금지(평등권)’를 선택했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의학계열 대학원생, 의학계열 학부생,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이 100%로 ‘차별금지(평등권)’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계열 학부생이 63.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2 찬성하지 않는 인권현장 조항에 대한 응답자 유형 간 차이

인격권	0(0%)	0(0%)	0(0%)	0(0%)	0(0%)	1(12.5%)	0(0%)	0(0%)	0(0%)
차별금지(평등권)	5(83.3%)	5(83.3%)	1(100%)	4(100%)	2(100%)	6(75%)	3(100%)	6(100%)	7(63.6%)
사생활 보호의 권리	0(0%)	0(0%)	0(0%)	0(0%)	0(0%)	0(0%)	0(0%)	0(0%)	1(9.1%)
폭력으로부터 자유	0(0%)	1(16.7%)	0(0%)	0(0%)	0(0%)	0(0%)	0(0%)	0(0%)	2(18.2%)
사상·양심·종교 자유	0(0%)	0(0%)	0(0%)	0(0%)	0(0%)	1(12.5%)	0(0%)	0(0%)	1(9.1%)
연구의 정당한 기여	1(16.7%)	0(0%)	0(0%)	0(0%)	0(0%)	0(0%)	0(0%)	0(0%)	0(0%)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에너지계열(대학원생)	의약계열(대학원생)	의약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2) 소결

인권헌장의 조항은 기본적으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권조항 중 무엇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는 동의여부와 다른 문제이다. 여러 인권헌장에 꼭 포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 세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인격권(60%)과 차별금지(평등권 포함)(50%)를 선택하였다. 이전의 규범연구의 결과에서도 차별금지(평등권), 인격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학내의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 인격권과 차별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관심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응답 비율이 전체의 52.43%로 이전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7.6%,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9.8%에 비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심도는 4 점 만점에서 학부생(3.51 점)보다 석사(3.7 점), 박사(3.78 점)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이전의 다양성조사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인권헌장 제정을 통한 대학원생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헌장 개별 조항에 대한 높은 동의율과 비교해보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인권헌장 제정에 무관심하다고 대답한 55.17%의 응답자가 인권헌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2.82%가 인권헌장의 실효성 의문을 무관심 이유로 지목했다. 이 결과는 인권의 당위성만을 강조해서는 학생들이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권헌장의 내용과 실효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헌장에 무관심한 이유로 인권헌장의 편향적 성격(4.94%)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125 명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인권헌장에 대한 낮은 관심도에 비해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긍정도는 76.47%로 21년에 시행한 다양성조사에 비해 높아졌다.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는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92.4%였고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93.1%였으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 결과에서는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58.4%,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54.4%이었다.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 수준도 학부생보다는 석사와 박사가 더 높은 것을 보면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도와 동의 수준은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는 이유는 53.03%가 기본규범의 필요성을, 41.9%가 인권의 식 및 수준의 향상을 이유로 지목하였다. 반면 제정에 반대한 이유는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28.14%)과 실효성 우려(26.44%), 일부 조항 반대(17.97%), 현행 법령 규정 충분(14.24%) 등이 제시되었다. 과거 ‘인권규범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학부생의 45.5%와 대학원생 47.8%가 실효성 우려를 이유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했고,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실효성 우려가 학부생

32.9%, 대학원생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물론 이전의 두 연구에서는 선택지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인권헌장이 단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효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현행 법령규정이 충분하다는 응답까지를 실효성 문제로 간주한다면 41% 정도의 학생이 인권헌장 제정을 실효성 때문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인권헌장 제정시 인권헌장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는데 성차별 발언이나 혐오 발언들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단지 규범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인권을 이유로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헌장 제정시 학생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권헌장에 대한 반대 이유가 특정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문조사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중 53명이 특정 조항 때문에 인권헌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58.5%가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에서 차별금지(평등권) 때문에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39명에 불과하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권헌장 조항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수준이 높지만, 학생들은 인권헌장이 자칫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점과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제정반대 이유에서도 그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인권헌장 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인권헌장 제정을 찬성하는 다수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차별경험과 해결

학내 인권보호는 적극적으로 인권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노력과 소극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헌장에 대한 차별적 경험의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방식을 분석하였다.

(1) 문항분석

16. 귀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24.17%인 1,294 명이 학내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응답자의 75.83%인 4,060 명이 학내 차별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림 43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한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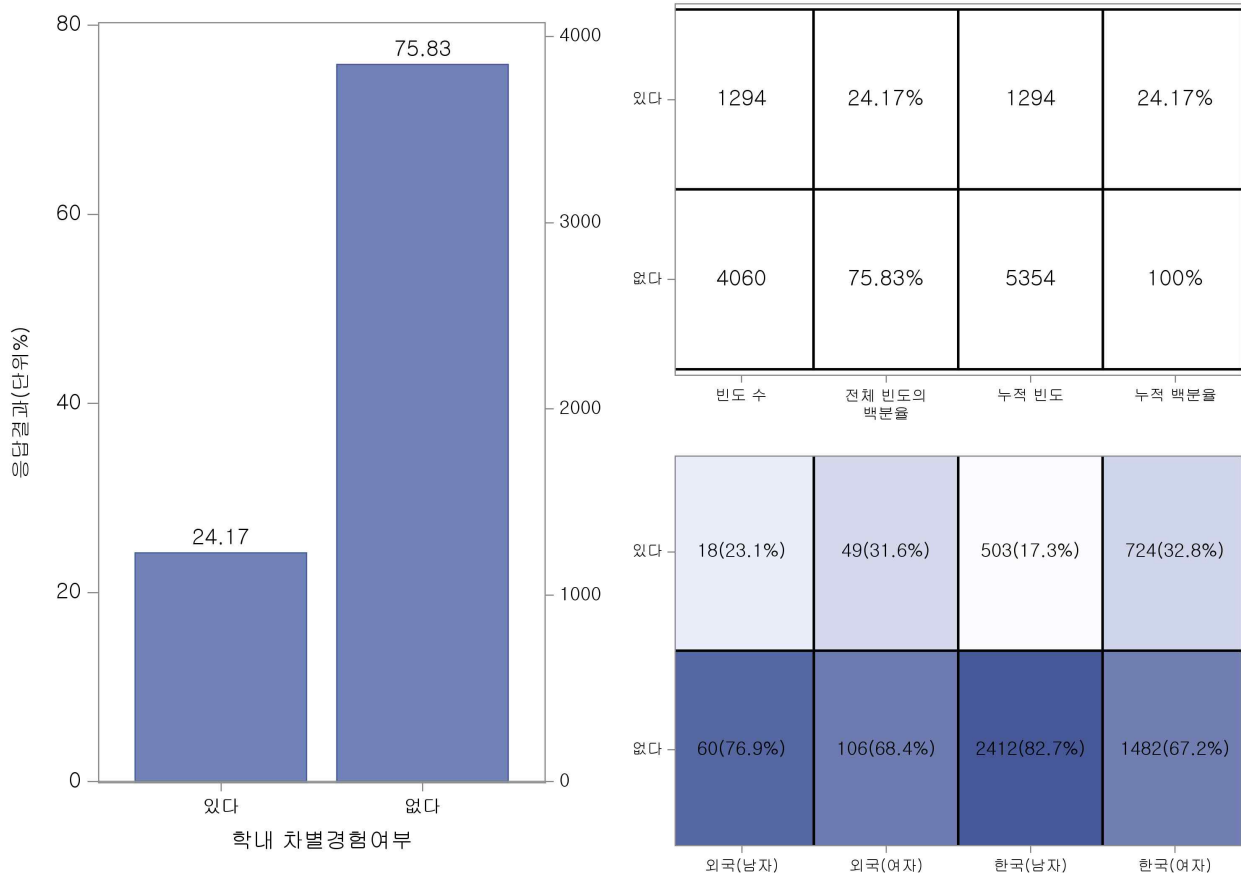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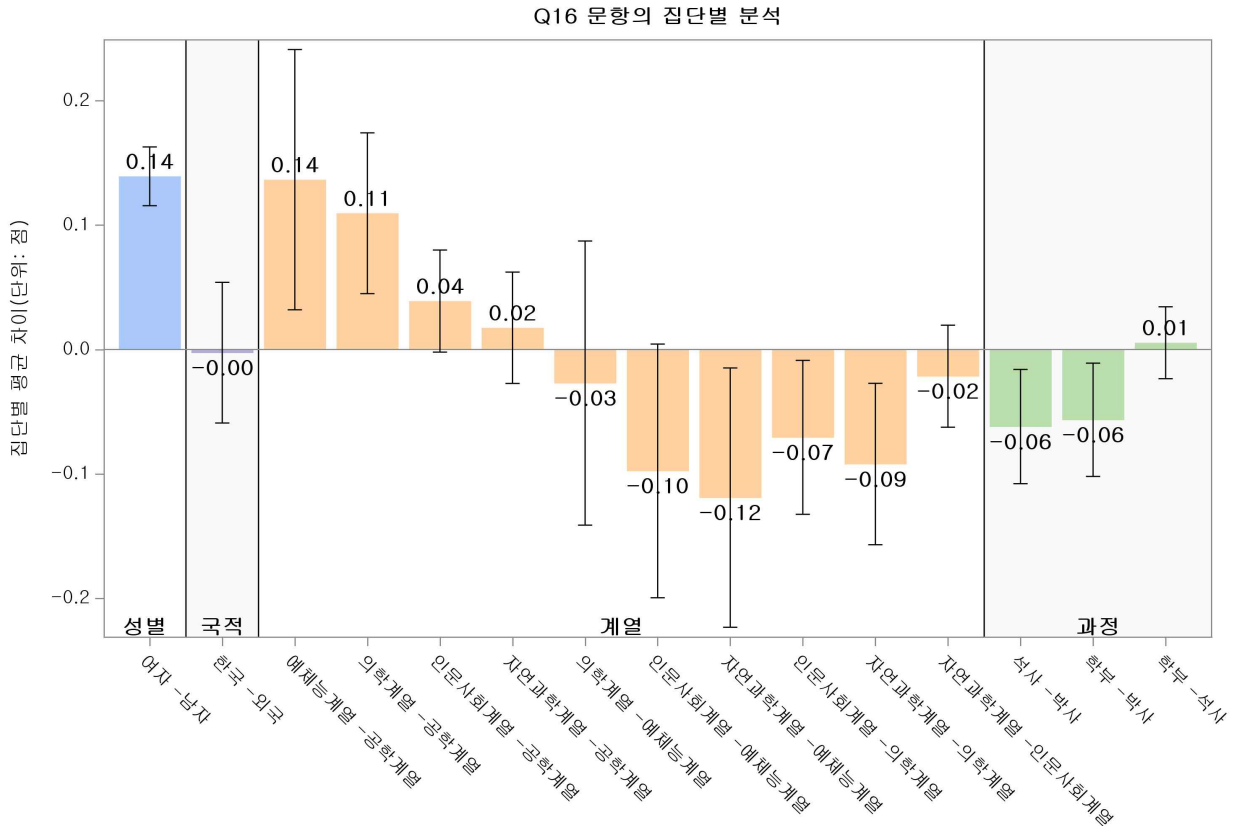


표 22 응답자 유형별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의 빈도

	있다		없다		최빈값
	N	%	N	%	
공학계열	255	17.79	1,178	82.21	없다
예체능계열	51	38.06	83	61.94	없다
의학계열	137	33.25	275	66.75	없다
인문사회계열	561	26.54	1,553	73.46	없다
자연과학계열	290	23	971	77	없다
박사	177	30.68	400	69.32	없다
석사	510	23.65	1,646	76.35	없다
학부	607	23.16	2,014	76.84	없다
남자	521	17.41	2,472	82.59	없다
여자	773	32.74	1,588	67.26	없다
외국	67	28.76	166	71.24	없다
한국	1,227	23.96	3,894	76.04	없다
합계	1,294	24.17	4,060	75.83	없다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국적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4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 중 예체능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 0.14만큼, 의학계열은 공학계열에 비해 0.11만큼 평균 차이가 높았다. 또한, 자연과학계열은 예체능계열에 비해 0.12만큼, 인문사회계열은 의학계열에 비해 0.07만큼, 자연과학계열은 의학계열에 비해 0.09만큼 평균 차이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집단별 통계적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없다’의 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76.9%로 한국인 남학생 8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여학생은 68.4%로 한국인 여학생 67.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모든 하위집단의 절반 이상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59.6%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공학계열 학부생이 82.6%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45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 경험에 대한 집단별 차이 빈도

경험 유무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있다	138(18.2%)	117(17.4%)	19(40.4%)	32(36.8%)	86(30.9%)	51(38.1%)	276(28.7%)	285(24.7%)	168(24.4%)	122(21.3%)
없다	621(81.8%)	557(82.6%)	28(59.6%)	55(63.2%)	192(69.1%)	83(61.9%)	685(71.3%)	868(75.3%)	520(75.6%)	451(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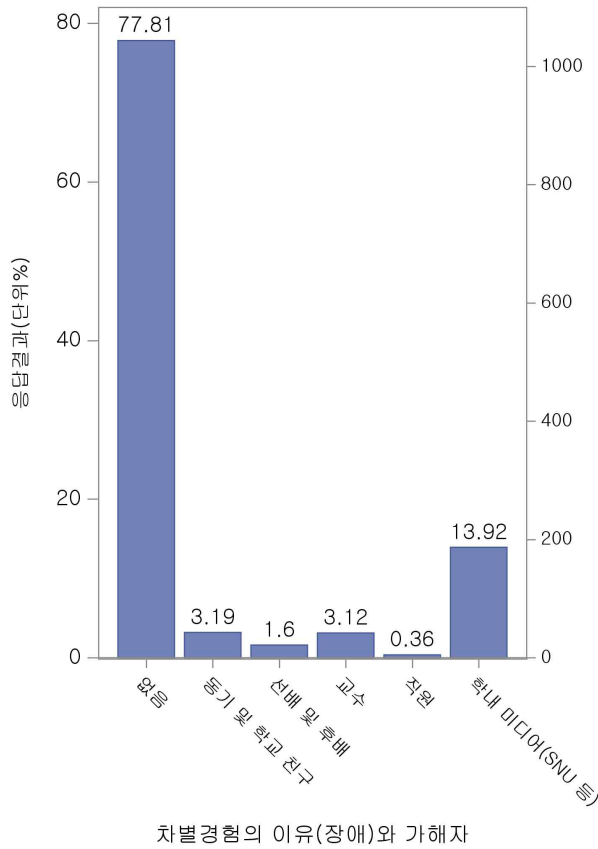
17. 차별의 이유가 되었던 사항별로 차별경험 여부와 차별의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를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차별의 이유가 되었던 사항별로 차별경험과 차별의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선택할 것을 응답자에게 요청하였다. 차별 유형은 장애, 종교, 출신학교 (대학원생은 출신대학, 학부생은 출신고교), 연령, 법적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전공, 결혼여부, 군필 여부, 외모,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출신지역, 학업성취도, 동아리 등이 제시되었으며, 차별 가해자는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 미디어 (SNU 등) 등이 제시되었다. 각 차별 유형별로 경험여부와 가해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1. 장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44>와 <표 23>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81%인 1,073 명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13.92%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3.19%, ‘교수’가 3.12%, ‘선배 및 후배’가 1.6%, 직원이 0.36%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9.1%인 569 명과 대학원생의 99.1%인 771 명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0.4%, 대학원생의 0.3%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13.92%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46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1073	77.81%	1073	77.81%
동기 및 학교 친구	44	3.19%	1117	81%
선배 및 후배	22	1.6%	1139	82.6%
교수	43	3.12%	1182	85.71%
직원	5	0.36%	1187	86.08%
학내 미디어(SNU 등)	192	13.92%	1379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1(73.3%)	36(80%)	409(75%)	617(79.7%)
동기 및 학교 친구	3(20%)	4(8.9%)	14(2.6%)	23(3%)
선배 및 후배	0(0%)	2(4.4%)	15(2.8%)	5(0.6%)
교수	0(0%)	3(6.7%)	17(3.1%)	23(3%)
직원	1(6.7%)	0(0%)	2(0.4%)	2(0.3%)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88(16.1%)	104(13.4%)

표 23 응답자 유형별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 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 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17	71.38	6	1.97	6	1.97	3	0.99	72	23.68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1	71.93	3	5.26	2	3.51	3	5.26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14	84.44	1	0.74	4	2.96	6	4.44	2	1.48	.	.	8	5.93	학내미디어
인문사회계열	452	76.35	23	3.89	7	1.18	20	3.38	2	0.34	.	.	88	14.86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49	85.57	11	3.78	3	1.03	11	3.78	1	0.34	.	.	16	5.5	학내미디어
박사	145	81.01	2	1.12	6	3.35	9	5.03	1	0.56	.	.	16	8.94	학내미디어
석사	422	81.62	17	3.29	11	2.13	25	4.84	2	0.39	.	.	40	7.74	학내미디어
학부	506	74.08	25	3.66	5	0.73	9	1.32	2	0.29	.	.	136	19.91	학내미디어
남자	420	75	17	3.04	15	2.68	17	3.04	3	0.54	.	.	88	15.71	학내미디어
여자	653	79.73	27	3.3	7	0.85	26	3.17	2	0.24	.	.	104	12.7	학내미디어
외국	47	78.33	7	11.67	2	3.33	3	5	1	1.67	학내미디어
한국	1,026	77.79	37	2.81	20	1.52	40	3.03	4	0.3	.	.	192	14.56	학내미디어
합계	1,073	77.81	44	3.19	22	1.6	43	3.12	5	0.36	.	.	192	13.92	동기및학교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8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16.1%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96.5%가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1.2%의 공학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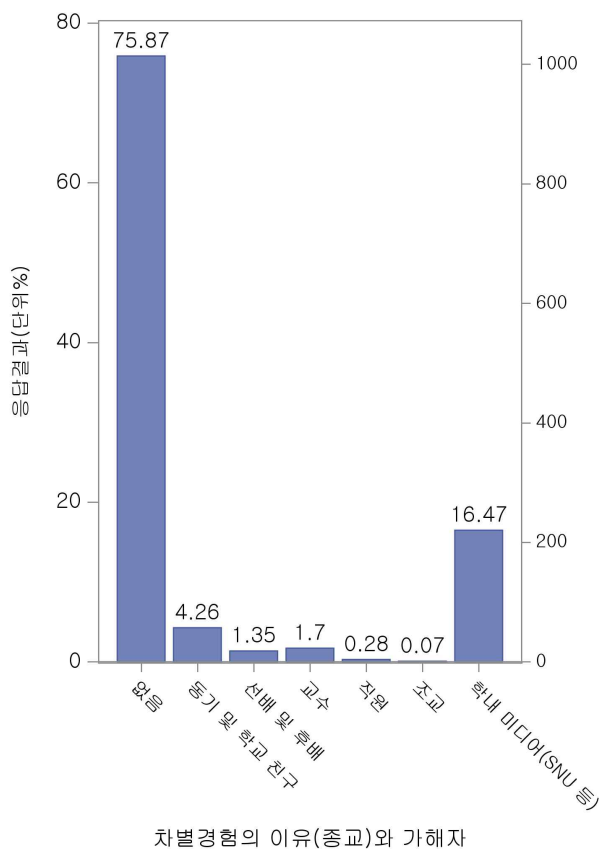
그림 47 계열과정별 장애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없음	118(78.7%)	99(64.3%)	15(57.7%)	26(83.9%)	72(87.8%)	42(79.2%)	224(85.5%)	228(69.1%)	138(78.4%)	111(96.5%)
동기 및 학교 친구	2(1.3%)	4(2.6%)	1(3.8%)	2(6.5%)	1(1.2%)	0(0%)	6(2.3%)	17(5.2%)	9(5.1%)	2(1.7%)
선배 및 후배	5(3.3%)	1(0.6%)	1(3.8%)	1(3.2%)	2(2.4%)	2(3.8%)	6(2.3%)	1(0.3%)	3(1.7%)	0(0%)
교수	1(0.7%)	2(1.3%)	1(3.8%)	2(6.5%)	6(7.3%)	0(0%)	17(6.5%)	3(0.9%)	9(5.1%)	2(1.7%)
직원	0(0%)	0(0%)	0(0%)	0(0%)	1(1.2%)	1(1.9%)	1(0.4%)	1(0.3%)	1(0.6%)	0(0%)
학내 미디어(SNU 등)	24(16%)	48(31.2%)	8(30.8%)	0(0%)	0(0%)	8(15.1%)	8(3.1%)	80(24.2%)	16(9.1%)	0(0%)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에너지계열(대학원생)	에너지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2. 종교

종교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46> 과 <표 24>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87%인 1,069 명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16.47%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4.26%, ‘교수’가 1.7%, ‘선배 및 후배’가 1.35%, ‘직원’이 0.28%, ‘조교’가 0.07%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6.2%인 552 명과 대학원생의 96.9%인 754 명이 종교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9%, 대학원생의 0.3%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16.47%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48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1069	75.87%	1069	75.87%
동기 및 학교 친구	60	4.26%	1129	80.13%
선배 및 후배	19	1.35%	1148	81.48%
교수	24	1.7%	1172	83.18%
직원	4	0.28%	1176	83.46%
조교	1	0.07%	1177	83.53%
학내 미디어(SNU 등)	232	16.47%	1409	100%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3(86.7%)	39(88.6%)	412(74.2%)	605(76.1%)
동기 및 학교 친구	1(6.7%)	3(6.8%)	20(3.6%)	36(4.5%)
선배 및 후배	1(6.7%)	0(0%)	7(1.3%)	11(1.4%)
교수	0(0%)	1(2.3%)	10(1.8%)	13(1.6%)
직원	0(0%)	1(2.3%)	1(0.2%)	2(0.3%)
조교	0(0%)	0(0%)	1(0.2%)	0(0%)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104(18.7%)	128(16.1%)

표 24 응답자 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 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05	69.02	14	4.71	7	2.36	5	1.68	1	0.34	1	0.34	64	21.55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2	59.15	2	2.82	.	.	2	2.82	1	1.41	.	.	24	33.8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14	80.28	6	4.23	4	2.82	2	1.41	16	11.27	학내미디어
인문사회계열	455	77.38	30	5.1	3	0.51	11	1.87	1	0.17	.	.	88	14.97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53	81.35	8	2.57	5	1.61	4	1.29	1	0.32	.	.	40	12.86	학내미디어
박사	150	83.8	4	2.23	5	2.79	2	1.12	2	1.12	.	.	16	8.94	학내미디어
석사	416	71.11	22	3.76	9	1.54	17	2.91	1	0.17	.	.	120	20.51	학내미디어
학부	503	77.98	34	5.27	5	0.78	5	0.78	1	0.16	1	0.16	96	14.88	학내미디어
남자	425	74.56	21	3.68	8	1.4	10	1.75	1	0.18	1	0.18	104	18.25	학내미디어
여자	644	76.76	39	4.65	11	1.31	14	1.67	3	0.36	.	.	128	15.26	학내미디어
외국	52	88.14	4	6.78	1	1.69	1	1.69	1	1.69	동기및친구
한국	1,017	75.33	56	4.15	18	1.33	23	1.7	3	0.22	1	0.07	232	17.19	학내미디어
합계	1,069	75.87	60	4.26	19	1.35	24	1.7	4	0.28	1	0.07	232	16.47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8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1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89.3%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5.6%의 예체능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49 계열과정별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없음	107(60.1%)	98(82.4%)	15(57.7%)	27(60%)	72(80.9%)	42(79.2%)	228(80.9%)	227(74.2%)	144(76.2%)	109(89.3%)
동기 및 학교 친구	4(2.2%)	10(8.4%)	1(3.8%)	1(2.2%)	3(3.4%)	3(5.7%)	11(3.9%)	19(6.2%)	7(3.7%)	1(0.8%)
선배 및 후배	7(3.9%)	0(0%)	0(0%)	0(0%)	4(4.5%)	0(0%)	2(0.7%)	1(0.3%)	1(0.5%)	4(3.3%)
교수	3(1.7%)	2(1.7%)	2(7.7%)	0(0%)	2(2.2%)	0(0%)	8(2.8%)	3(1%)	4(2.1%)	0(0%)
직원	1(0.6%)	0(0%)	0(0%)	1(2.2%)	0(0%)	0(0%)	1(0.4%)	0(0%)	1(0.5%)	0(0%)
조교	0(0%)	1(0.8%)	0(0%)	0(0%)	0(0%)	0(0%)	0(0%)	0(0%)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56(31.5%)	8(6.7%)	8(30.8%)	16(35.6%)	8(9%)	8(15.1%)	32(11.3%)	56(18.3%)	32(16.9%)	8(6.6%)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3. 국적

국적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48> 과 <표 25>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84%인 1,086 명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10.32%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3.39%, ‘교수’가 2.64%, ‘선배 및 후배’가 0.98%, ‘직원’이 0.68%, ‘조교’가 0.15%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7.6%인 560 명과 대학원생의 97.2%인 756 명이 국적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0.5%, 대학원생의 0.3%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10.32%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50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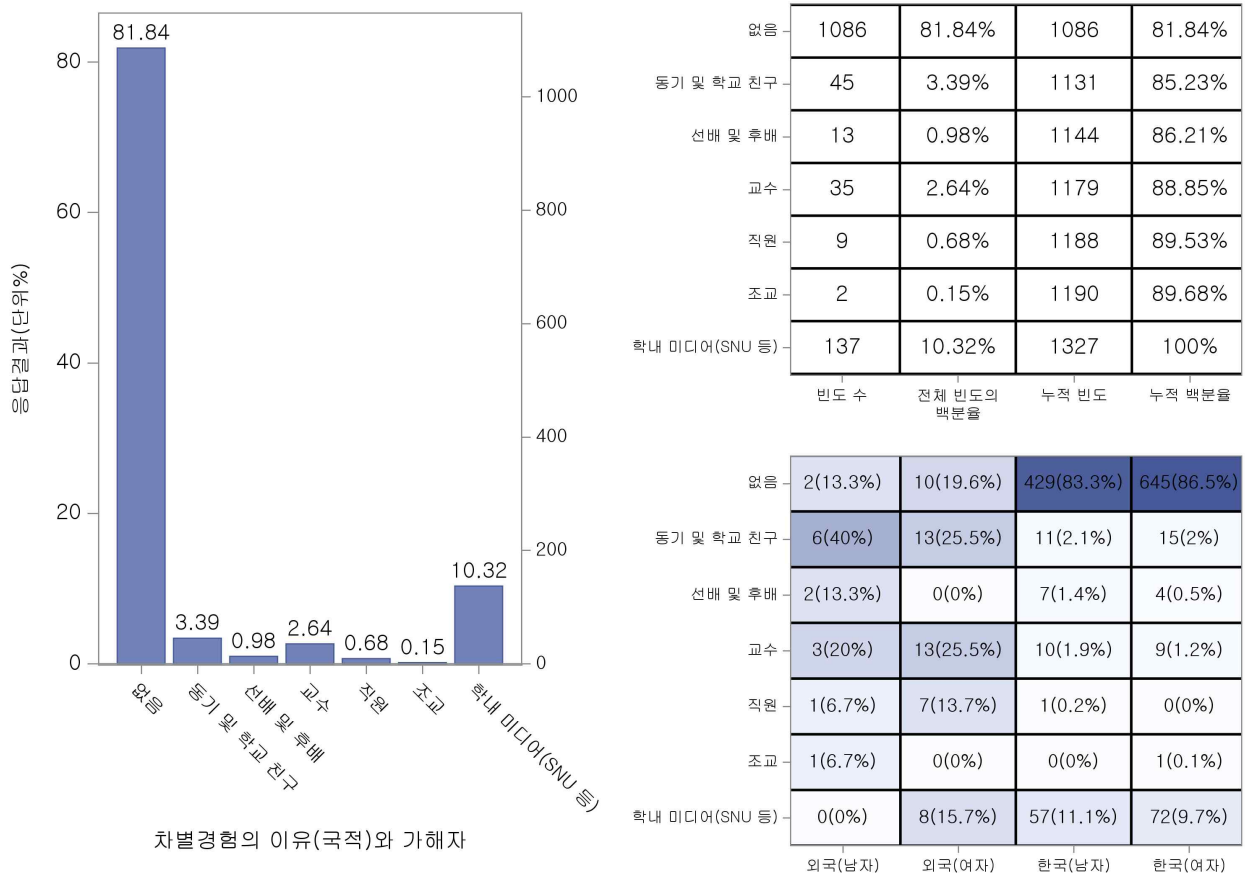


표 25 응답자 유형별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09	75.72	12	4.35	2	0.72	10	3.62	2	0.72	1	0.36	40	14.49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6	80.7	.	.	1	1.75	2	3.51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17	86.67	2	1.48	2	1.48	4	2.96	2	1.48	.	.	8	5.93	학내미디어
인문사회계열	451	78.3	25	4.34	5	0.87	16	2.78	5	0.87	1	0.17	73	12.67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63	92.93	6	2.12	3	1.06	3	1.06	8	2.83	학내미디어
박사	145	77.96	3	1.61	1	0.54	10	5.38	3	1.61	.	.	24	12.9	학내미디어
석사	427	81.8	21	4.02	7	1.34	13	2.49	5	0.96	1	0.19	48	9.2	학내미디어
학부	514	83.04	21	3.39	5	0.81	12	1.94	1	0.16	1	0.16	65	10.5	학내미디어
남자	431	81.32	17	3.21	9	1.7	13	2.45	2	0.38	1	0.19	57	10.75	학내미디어
여자	655	82.18	28	3.51	4	0.5	22	2.76	7	0.88	1	0.13	80	10.04	학내미디어
외국	12	18.18	19	28.79	2	3.03	16	24.24	8	12.12	1	1.52	8	12.12	동기및친구
한국	1,074	85.17	26	2.06	11	0.87	19	1.51	1	0.08	1	0.08	129	10.23	학내미디어
합계	1,086	81.84	45	3.39	13	0.98	35	2.64	9	0.68	2	0.15	137	10.32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인 남학생이 8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 여학생이 15.7%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97.4%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0.8%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51 계열과정별 국적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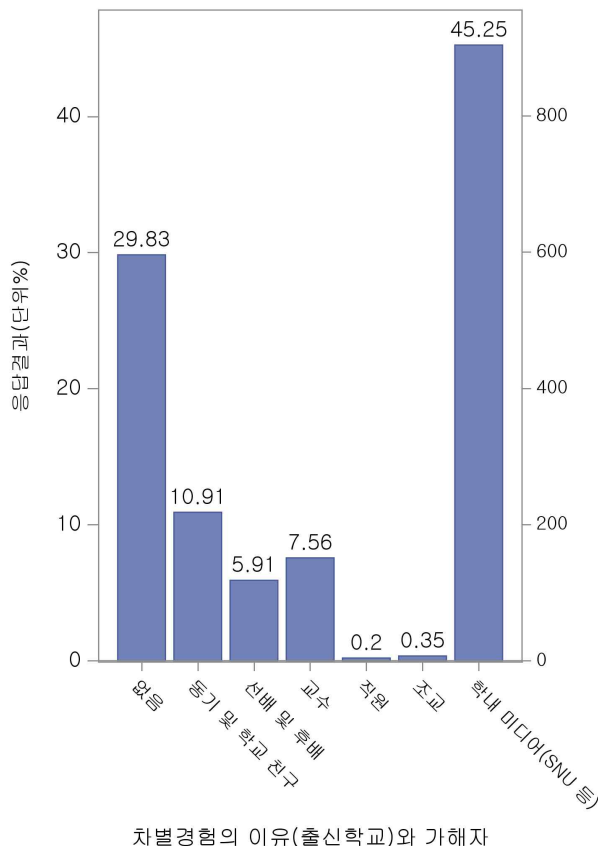
없음	115(80.4%)	94(70.7%)	18(69.2%)	28(90.3%)	73(82%)	44(95.7%)	215(76.2%)	236(80.3%)	151(89.9%)	112(97.4%)
동기 및 학교 친구	3(2.1%)	9(6.8%)	0(0%)	0(0%)	2(2.2%)	0(0%)	14(5%)	11(3.7%)	5(3%)	1(0.9%)
선배 및 후배	2(1.4%)	0(0%)	0(0%)	1(3.2%)	1(1.1%)	1(2.2%)	4(1.4%)	1(0.3%)	1(0.6%)	2(1.7%)
교수	6(4.2%)	4(3%)	0(0%)	2(6.5%)	3(3.4%)	1(2.2%)	11(3.9%)	5(1.7%)	3(1.8%)	0(0%)
직원	1(0.7%)	1(0.8%)	0(0%)	0(0%)	2(2.2%)	0(0%)	5(1.8%)	0(0%)	0(0%)	0(0%)
조교	0(0%)	1(0.8%)	0(0%)	0(0%)	0(0%)	0(0%)	1(0.4%)	0(0%)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16(11.2%)	24(18%)	8(30.8%)	0(0%)	8(9%)	0(0%)	32(11.3%)	41(13.9%)	8(4.8%)	0(0%)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4. 출신학교 (대학원생: 출신대학/ 학부생: 출신 고등학교)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50>과 <표 26>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9.83%인 596 명만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 설문 대상이었던 기타 차별의 이유와 구분되는 점이다. 특히나 응답자의 45.25%인 904 명은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10.91%, ‘교수’가 7.56%, ‘선배 및 후배’가 5.91%, ‘조교’가 0.35%, 직원이 0.2%로 응답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89.9%인 516 명과 대학원생의 82.7%인 643 명이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3.3%, 대학원생의 3.1%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대폭 증가하여 45.25%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52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596	29.83%	596	29.83%
동기 및 학교 친구	218	10.91%	814	40.74%
선배 및 후배	118	5.91%	932	46.65%
교수	151	7.56%	1083	54.2%
직원	4	0.2%	1087	54.4%
조교	7	0.35%	1094	54.75%
학내 미디어(SNU 등)	904	45.25%	1998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2(80%)	32(72.7%)	245(34.2%)	307(25.1%)
동기 및 학교 친구	2(13.3%)	5(11.4%)	78(10.9%)	133(10.9%)
선배 및 후배	1(6.7%)	0(0%)	46(6.4%)	71(5.8%)
교수	0(0%)	7(15.9%)	54(7.5%)	90(7.4%)
직원	0(0%)	0(0%)	3(0.4%)	1(0.1%)
조교	0(0%)	0(0%)	3(0.4%)	4(0.3%)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288(40.2%)	616(50.4%)

표 26 응답자 유형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 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15	28.12	48	11.74	28	6.85	24	5.87	1	0.24	1	0.24	192	46.94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29	31.52	11	11.96	2	2.17	1	1.09	.	.	1	1.09	48	52.17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61	39.1	18	11.54	10	6.41	34	21.79	1	0.64	.	.	32	20.51	교수
인문사회계열	256	27.47	83	8.91	43	4.61	65	6.97	1	0.11	4	0.43	480	51.5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135	33.01	58	14.18	35	8.56	27	6.6	1	0.24	1	0.24	152	37.16	학내미디어
박사	68	28.94	19	8.09	20	8.51	44	18.72	2	0.85	2	0.85	80	34.04	학내미디어
석사	224	28.68	59	7.55	66	8.45	84	10.76	2	0.26	2	0.26	344	44.05	학내미디어
학부	304	30.96	140	14.26	32	3.26	23	2.34	.	.	3	0.31	480	48.88	학내미디어
남자	257	35.11	80	10.93	47	6.42	54	7.38	3	0.41	3	0.41	288	39.34	학내미디어
여자	339	26.78	138	10.9	71	5.61	97	7.66	1	0.08	4	0.32	616	48.66	학내미디어
외국	44	74.58	7	11.86	1	1.69	7	11.86	동기및친구 교수
한국	552	28.47	211	10.88	117	6.03	144	7.43	4	0.21	7	0.36	904	46.62	학내미디어
합계	596	29.83	218	10.91	118	5.91	151	7.56	4	0.2	7	0.35	904	45.25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8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50.4%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47.8%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6.5%의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53 계열과정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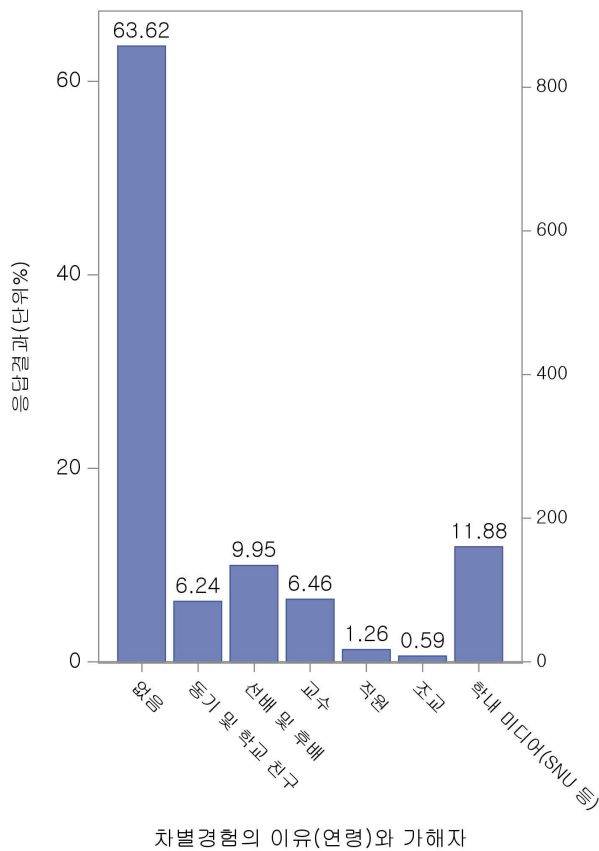
없음	55(25.8%)	60(30.6%)	11(33.3%)	18(30.5%)	39(35.5%)	22(47.8%)	113(26.8%)	143(28%)	74(31.1%)	61(35.7%)
동기 및 학교 친구	17(8%)	31(15.8%)	6(18.2%)	5(8.5%)	7(6.4%)	11(23.9%)	27(6.4%)	56(11%)	21(8.8%)	37(21.6%)
선배 및 후배	23(10.8%)	5(2.6%)	0(0%)	2(3.4%)	8(7.3%)	2(4.3%)	28(6.6%)	15(2.9%)	27(11.3%)	8(4.7%)
교수	20(9.4%)	4(2%)	0(0%)	1(1.7%)	23(20.9%)	11(23.9%)	58(13.7%)	7(1.4%)	27(11.3%)	0(0%)
직원	1(0.5%)	0(0%)	0(0%)	0(0%)	1(0.9%)	0(0%)	1(0.2%)	0(0%)	1(0.4%)	0(0%)
조교	1(0.5%)	0(0%)	0(0%)	1(1.7%)	0(0%)	0(0%)	3(0.7%)	1(0.2%)	0(0%)	1(0.6%)
학내 미디어(SNU 등)	96(45.1%)	96(49%)	16(48.5%)	32(54.2%)	32(29.1%)	0(0%)	192(45.5%)	288(56.5%)	88(37%)	64(37.4%)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5. 연령

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52>와 <표 27>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62%인 857 명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11.88%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선배 및 후배’가 9.95%, ‘교수’가 6.46%, ‘동기 및 학교 친구’가 6.24%, ‘직원’이 1.26%, ‘조교’가 0.59%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6.2%인 552 명과 대학원생의 94.1%인 732 명이 연령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0.4%, 대학원생의 0.1%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11.88%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54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857	63.62%	857	63.62%
동기 및 학교 친구	84	6.24%	941	69.86%
선배 및 후배	134	9.95%	1075	79.81%
교수	87	6.46%	1162	86.27%
직원	17	1.26%	1179	87.53%
조교	8	0.59%	1187	88.12%
학내 미디어(SNU 등)	160	11.88%	1347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1(73.3%)	36(81.8%)	309(57%)	501(67.2%)
동기 및 학교 친구	2(13.3%)	5(11.4%)	40(7.4%)	37(5%)
선배 및 후배	2(13.3%)	2(4.5%)	59(10.9%)	71(9.5%)
교수	0(0%)	1(2.3%)	37(6.8%)	49(6.6%)
직원	0(0%)	0(0%)	5(0.9%)	12(1.6%)
조교	0(0%)	0(0%)	4(0.7%)	4(0.5%)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88(16.2%)	72(9.7%)

표 27 응답자 유형별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72	63.94	17	6.32	34	12.64	12	4.46	1	0.37	1	0.37	32	11.9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31	54.39	6	10.53	8	14.04	3	5.26	.	.	1	1.75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82	64.06	7	5.47	17	13.28	20	15.63	2	1.56	교수
인문사회계열	377	64.78	36	6.19	41	7.04	36	6.19	9	1.55	3	0.52	80	13.75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195	62.7	18	5.79	34	10.93	16	5.14	5	1.61	3	0.96	40	12.86	학내미디어
박사	109	63.37	12	6.98	20	11.63	18	10.47	4	2.33	1	0.58	8	4.65	선배및후배
석사	329	59.82	30	5.45	57	10.36	44	8	7	1.27	3	0.55	80	14.55	학내미디어
학부	419	67.04	42	6.72	57	9.12	25	4	6	0.96	4	0.64	72	11.52	학내미디어
남자	320	57.45	42	7.54	61	10.95	37	6.64	5	0.9	4	0.72	88	15.8	학내미디어
여자	537	67.97	42	5.32	73	9.24	50	6.33	12	1.52	4	0.51	72	9.11	선배및후배
외국	47	79.66	7	11.86	4	6.78	1	1.69	동기및친구
한국	810	62.89	77	5.98	130	10.09	86	6.68	17	1.32	8	0.62	160	12.42	학내미디어
합계	857	63.62	84	6.24	134	9.95	87	6.46	17	1.26	8	0.59	160	11.88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8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1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71.7%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0.8%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해 연령에 대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55 계열과정별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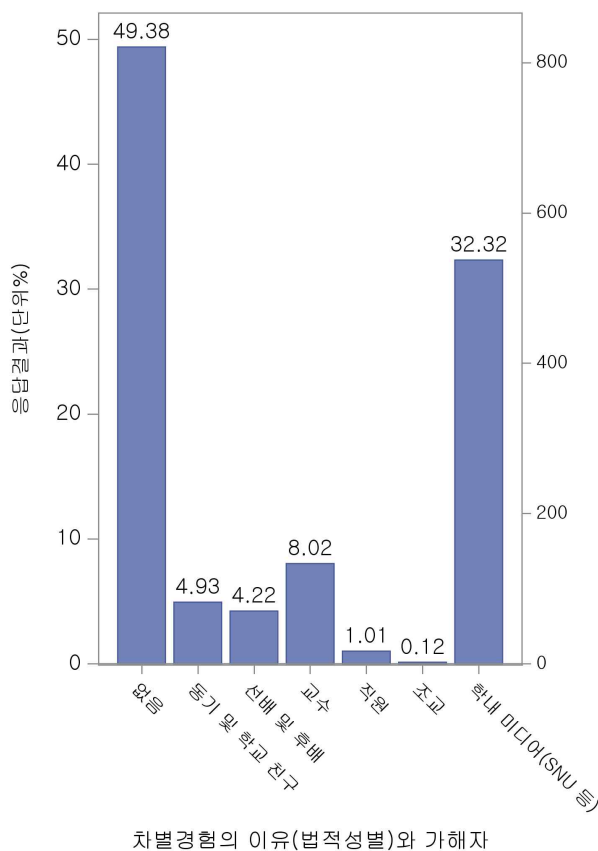
가해자 유형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없음	90(60%)	82(68.9%)	12(46.2%)	19(61.3%)	49(59.8%)	33(71.7%)	178(61.6%)	199(67.9%)	109(62.3%)	86(63.2%)
동기 및 학교 친구	6(4%)	11(9.2%)	2(7.7%)	4(12.9%)	4(4.9%)	3(6.5%)	17(5.9%)	19(6.5%)	13(7.4%)	5(3.7%)
선배 및 후배	22(14.7%)	12(10.1%)	2(7.7%)	6(19.4%)	11(13.4%)	6(13%)	22(7.6%)	19(6.5%)	20(11.4%)	14(10.3%)
교수	7(4.7%)	5(4.2%)	2(7.7%)	1(3.2%)	16(19.5%)	4(8.7%)	28(9.7%)	8(2.7%)	9(5.1%)	7(5.1%)
직원	1(0.7%)	0(0%)	0(0%)	0(0%)	2(2.4%)	0(0%)	3(1%)	6(2%)	5(2.9%)	0(0%)
조교	0(0%)	1(0.8%)	0(0%)	1(3.2%)	0(0%)	0(0%)	1(0.3%)	2(0.7%)	3(1.7%)	0(0%)
학내 미디어(SNU 등)	24(16%)	8(6.7%)	8(30.8%)	0(0%)	0(0%)	0(0%)	40(13.8%)	40(13.7%)	16(9.1%)	24(17.6%)

17-6. 법적 성별

법적 성별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54>와 <표 28>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38%인 831 명이 법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32.32%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교수’가 8.02%, ‘동기 및 학교 친구’가 4.93%, ‘선배 및 후배’가 4.22%, ‘직원’이 1.01%, ‘조교’가 0.12%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84.3%인 484 명과 대학원생의 88.2%인 686 명이 법적 성별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법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5.2%, 대학원생의 1.2%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32.32%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56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831	49.38%	831	49.38%
동기 및 학교 친구	83	4.93%	914	54.31%
선배 및 후배	71	4.22%	985	58.53%
교수	135	8.02%	1120	66.55%
직원	17	1.01%	1137	67.56%
조교	2	0.12%	1139	67.68%
학내 미디어(SNU 등)	544	32.32%	1683	100%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4(93.3%)	36(81.8%)	389(69.1%)	392(36.9%)
동기 및 학교 친구	0(0%)	1(2.3%)	22(3.9%)	60(5.7%)
선배 및 후배	0(0%)	0(0%)	10(1.8%)	61(5.7%)
교수	1(6.7%)	4(9.1%)	24(4.3%)	106(10%)
직원	0(0%)	3(6.8%)	4(0.7%)	10(0.9%)
조교	0(0%)	0(0%)	2(0.4%)	0(0%)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112(19.9%)	432(40.7%)

표 28 응답자 유형별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69	46.05	17	4.63	15	4.09	20	5.45	2	0.54	.	.	144	39.24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27	31.76	4	4.71	4	4.71	9	10.59	1	1.18	.	.	40	47.06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84	53.85	6	3.85	5	3.21	27	17.31	2	1.28	.	.	32	20.51	학내미디어
인문사회계열	346	48.39	39	5.45	32	4.48	56	7.83	8	1.12	2	0.28	232	32.45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05	56.94	17	4.72	15	4.17	23	6.39	4	1.11	.	.	96	26.67	학내미디어
박사	106	56.99	7	3.76	13	6.99	30	16.13	5	2.69	1	0.54	24	12.9	교수
석사	342	53.35	26	4.06	32	4.99	50	7.8	7	1.09	.	.	184	28.71	학내미디어
학부	383	44.74	50	5.84	26	3.04	55	6.43	5	0.58	1	0.12	336	39.25	학내미디어
남자	403	69.72	22	3.81	10	1.73	25	4.33	4	0.69	2	0.35	112	19.38	학내미디어
여자	428	38.73	61	5.52	61	5.52	110	9.95	13	1.18	.	.	432	39.1	학내미디어
외국	50	84.75	1	1.69	.	.	5	8.47	3	5.08	교수
한국	781	48.09	82	5.05	71	4.37	130	8	14	0.86	2	0.12	544	33.5	학내미디어
합계	831	49.38	83	4.93	71	4.22	135	8.02	17	1.01	2	0.12	544	32.32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9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61.8%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8.5%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57 계열과정별 법적성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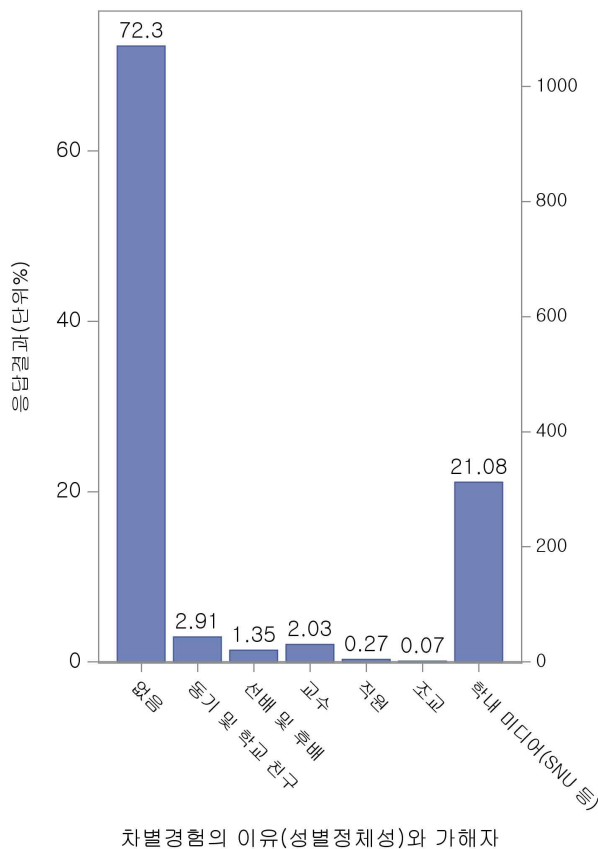
없음	89(44.7%)	80(47.6%)	10(30.3%)	17(32.7%)	55(61.8%)	29(43.3%)	176(58.1%)	170(41.3%)	118(58.1%)	87(55.4%)
동기 및 학교 친구	4(2%)	13(7.7%)	1(3%)	3(5.8%)	3(3.4%)	3(4.5%)	18(5.9%)	21(5.1%)	7(3.4%)	10(6.4%)
선배 및 후배	10(5%)	5(3%)	2(6.1%)	2(3.8%)	4(4.5%)	1(1.5%)	17(5.6%)	15(3.6%)	12(5.9%)	3(1.9%)
교수	14(7%)	6(3.6%)	4(12.1%)	5(9.6%)	18(20.2%)	9(13.4%)	30(9.9%)	26(6.3%)	14(6.9%)	9(5.7%)
직원	2(1%)	0(0%)	0(0%)	1(1.9%)	1(1.1%)	1(1.5%)	5(1.7%)	3(0.7%)	4(2%)	0(0%)
조교	0(0%)	0(0%)	0(0%)	0(0%)	0(0%)	0(0%)	1(0.3%)	1(0.2%)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80(40.2%)	64(38.1%)	16(48.5%)	24(46.2%)	8(9%)	24(35.8%)	56(18.5%)	176(42.7%)	48(23.6%)	48(30.6%)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7. 성별정체성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56>과 <표 29>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72.3%의 응답자(1,070 명)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21.08%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2.91%, ‘교수’가 2.03%, ‘선배 및 후배’가 1.35%, ‘직원’이 0.27%, ‘조교’가 0.07%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7.0%인 557 명과 대학원생의 97.3%인 757 명이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6%, 대학원생의 0.6%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21.08%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58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1070	72.3%	1070	72.3%
동기 및 학교 친구	43	2.91%	1113	75.2%
선배 및 후배	20	1.35%	1133	76.55%
교수	30	2.03%	1163	78.58%
직원	4	0.27%	1167	78.85%
조교	1	0.07%	1168	78.92%
학내 미디어(SNU 등)	312	21.08%	1480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4(93.3%)	40(90.9%)	409(71.8%)	607(71.3%)
동기 및 학교 친구	0(0%)	1(2.3%)	19(3.3%)	23(2.7%)
선배 및 후배	0(0%)	2(4.5%)	5(0.9%)	13(1.5%)
교수	1(6.7%)	1(2.3%)	14(2.5%)	14(1.6%)
직원	0(0%)	0(0%)	2(0.4%)	2(0.2%)
조교	0(0%)	0(0%)	1(0.2%)	0(0%)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120(21.1%)	192(22.6%)

표 29 응답자 유형별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15	70.72	10	3.29	3	0.99	4	1.32	72	23.68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1	48.24	1	1.18	1	1.18	2	2.35	40	47.06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16	90.63	4	3.13	1	0.78	6	4.69	1	0.78	교수
인문사회계열	446	69.91	20	3.13	12	1.88	13	2.04	2	0.31	1	0.16	144	22.57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52	77.54	8	2.46	3	0.92	5	1.54	1	0.31	.	.	56	17.23	학내미디어
박사	149	83.24	3	1.68	5	2.79	5	2.79	.	.	1	0.56	16	8.94	학내미디어
석사	423	75	15	2.66	10	1.77	18	3.19	2	0.35	.	.	96	17.02	학내미디어
학부	498	67.57	25	3.39	5	0.68	7	0.95	2	0.27	.	.	200	27.14	학내미디어
남자	423	72.31	19	3.25	5	0.85	15	2.56	2	0.34	1	0.17	120	20.51	학내미디어
여자	647	72.29	24	2.68	15	1.68	15	1.68	2	0.22	.	.	192	21.45	학내미디어
외국	54	91.53	1	1.69	2	3.39	2	3.39	선배및후배 교수
한국	1,016	71.5	42	2.96	18	1.27	28	1.97	4	0.28	1	0.07	312	21.96	학내미디어
합계	1,070	72.3	43	2.91	20	1.35	30	2.03	4	0.27	1	0.07	312	21.08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9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2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61.8%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8.5%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59 계열과정별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없음	117(74.5%)	98(66.7%)	17(51.5%)	24(46.2%)	74(90.2%)	42(91.3%)	222(82.8%)	224(60.5%)	142(70%)	110(90.2%)
동기 및 학교 친구	3(1.9%)	7(4.8%)	0(0%)	1(1.9%)	2(2.4%)	2(4.3%)	8(3%)	12(3.2%)	5(2.5%)	3(2.5%)
선배 및 후배	2(1.3%)	1(0.7%)	0(0%)	1(1.9%)	1(1.2%)	0(0%)	9(3.4%)	3(0.8%)	3(1.5%)	0(0%)
교수	3(1.9%)	1(0.7%)	0(0%)	2(3.8%)	5(6.1%)	1(2.2%)	11(4.1%)	2(0.5%)	4(2%)	1(0.8%)
직원	0(0%)	0(0%)	0(0%)	0(0%)	0(0%)	1(2.2%)	1(0.4%)	1(0.3%)	1(0.5%)	0(0%)
조교	0(0%)	0(0%)	0(0%)	0(0%)	0(0%)	0(0%)	1(0.4%)	0(0%)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32(20.4%)	40(27.2%)	16(48.5%)	24(46.2%)	0(0%)	0(0%)	16(6%)	128(34.6%)	48(23.6%)	8(6.6%)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8. 성적지향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58>과 <표 30>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7.71%의 응답자(1,040 명)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24.48%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3.91%, ‘교수’가 2.34%, ‘선배 및 후배’가 1.11%, ‘직원’이 0.33%, ‘조교’가 0.13%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5.6%인 549 명과 대학원생의 97.3%인 757 명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4%, 대학원생의 1.0%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24.48%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0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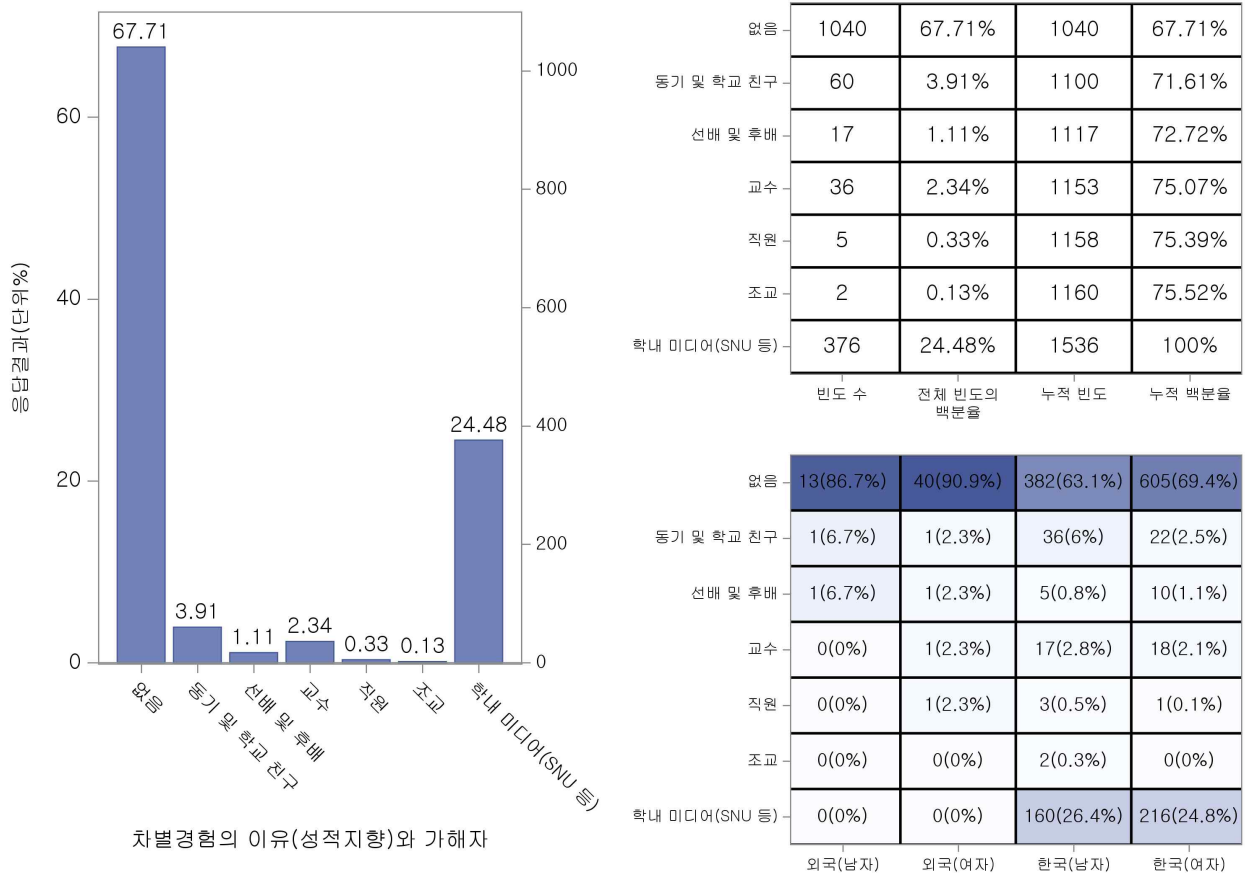


표 30 응답자 유형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12	71.38	14	4.71	4	1.35	2	0.67	.	.	1	0.34	64	21.55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3	55.13	1	1.28	1	1.28	1	1.28	32	41.03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08	76.06	7	4.93	1	0.7	8	5.63	2	1.41	.	.	16	11.27	학내미디어
인문사회계열	435	63.32	24	3.49	8	1.16	18	2.62	1	0.15	1	0.15	200	29.11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42	72.89	14	4.22	3	0.9	7	2.11	2	0.6	.	.	64	19.28	학내미디어
박사	147	79.03	5	2.69	2	1.08	6	3.23	1	0.54	1	0.54	24	12.9	학내미디어
석사	419	74.29	16	2.84	9	1.6	21	3.72	2	0.35	1	0.18	96	17.02	학내미디어
학부	474	60.31	39	4.96	6	0.76	9	1.15	2	0.25	.	.	256	32.57	학내미디어
남자	395	63.71	37	5.97	6	0.97	17	2.74	3	0.48	2	0.32	160	25.81	학내미디어
여자	645	70.41	23	2.51	11	1.2	19	2.07	2	0.22	.	.	216	23.58	학내미디어
외국	53	89.83	2	3.39	2	3.39	1	1.69	1	1.69	동기및친구 선배및후배
한국	987	66.82	58	3.93	15	1.02	35	2.37	4	0.27	2	0.14	376	25.46	학내미디어
합계	1,040	67.71	60	3.91	17	1.11	36	2.34	5	0.33	2	0.13	376	24.48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90.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61.8%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8.5%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61 계열과정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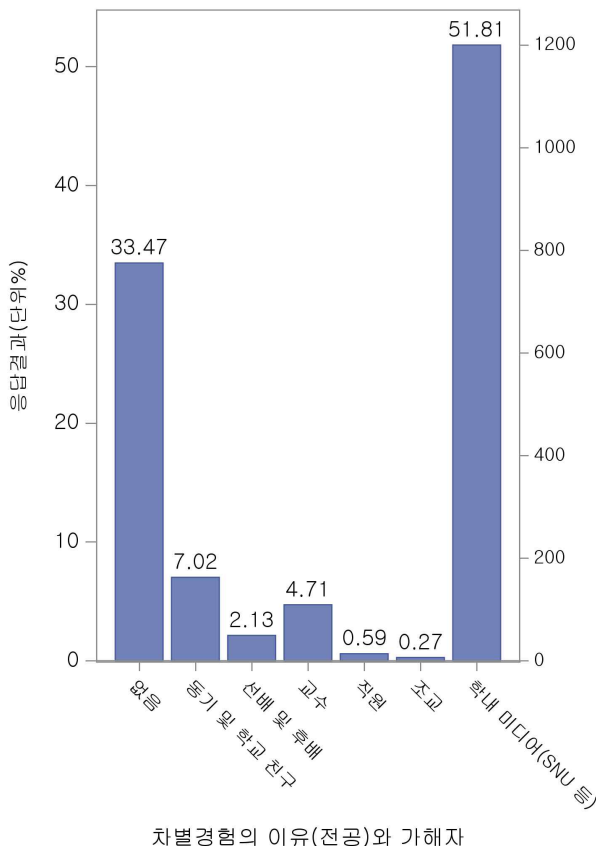
없음	120(88.2%)	92(57.1%)	17(51.5%)	26(57.8%)	71(79.8%)	37(69.8%)	218(75.4%)	217(54.5%)	140(69%)	102(79.1%)
동기 및 학교 친구	3(2.2%)	11(6.8%)	0(0%)	1(2.2%)	3(3.4%)	4(7.5%)	9(3.1%)	15(3.8%)	6(3%)	8(6.2%)
선배 및 후배	3(2.2%)	1(0.6%)	0(0%)	1(2.2%)	0(0%)	1(1.9%)	6(2.1%)	2(0.5%)	2(1%)	1(0.8%)
교수	1(0.7%)	1(0.6%)	0(0%)	1(2.2%)	6(6.7%)	2(3.8%)	15(5.2%)	3(0.8%)	5(2.5%)	2(1.6%)
직원	0(0%)	0(0%)	0(0%)	0(0%)	1(1.1%)	1(1.9%)	0(0%)	1(0.3%)	2(1%)	0(0%)
조교	1(0.7%)	0(0%)	0(0%)	0(0%)	0(0%)	0(0%)	1(0.3%)	0(0%)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8(5.9%)	56(34.8%)	16(48.5%)	16(35.6%)	8(9%)	8(15.1%)	40(13.8%)	160(40.2%)	48(23.6%)	16(12.4%)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9. 전공

전공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60> 과 <표 31>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47%인 739 명만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공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 설문 대상이었던 기타 차별의 이유와 구분되는 점이다. 특히나 응답자의 51.81%인 1,144 명은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7.02%, ‘교수’가 4.71%, ‘선배 및 후배’가 2.13%, ‘직원’이 0.59%, ‘조교’가 0.27%로 응답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86.8%인 498 명과 대학원생의 90.5%인 704 명이 전공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전공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6.1%, 대학원생의 0.8%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대폭 증가하여 51.81%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2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739	33.47%	739	33.47%
동기 및 학교 친구	155	7.02%	894	40.49%
선배 및 후배	47	2.13%	941	42.62%
교수	104	4.71%	1045	47.33%
직원	13	0.59%	1058	47.92%
조교	6	0.27%	1064	48.19%
학내 미디어(SNU 등)	1144	51.81%	2208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0(66.7%)	35(68.6%)	292(35.5%)	402(30.5%)
동기 및 학교 친구	2(13.3%)	4(7.8%)	58(7.1%)	91(6.9%)
선배 및 후배	0(0%)	0(0%)	16(1.9%)	31(2.3%)
교수	2(13.3%)	4(7.8%)	41(5%)	57(4.3%)
직원	0(0%)	0(0%)	4(0.5%)	9(0.7%)
조교	1(6.7%)	0(0%)	3(0.4%)	2(0.2%)
학내 미디어(SNU 등)	0(0%)	8(15.7%)	408(49.6%)	728(55.2%)

표 31 응답자 유형별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48	31.83	26	5.59	8	1.72	25	5.38	1	0.22	1	0.22	256	55.05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24	22.64	8	7.55	4	3.77	4	3.77	2	1.89	.	.	64	60.38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98	72.59	10	7.41	3	2.22	14	10.37	2	1.48	.	.	8	5.93	교수
인문사회계열	298	29.13	75	7.33	19	1.86	41	4.01	4	0.39	2	0.2	584	57.09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171	35.7	36	7.52	13	2.71	20	4.18	4	0.84	3	0.63	232	48.43	학내미디어
박사	105	49.07	16	7.48	9	4.21	22	10.28	4	1.87	2	0.93	56	26.17	학내미디어
석사	341	48.92	38	5.45	16	2.3	48	6.89	5	0.72	1	0.14	248	35.58	학내미디어
학부	293	22.59	101	7.79	22	1.7	34	2.62	4	0.31	3	0.23	840	64.76	학내미디어
남자	302	36.08	60	7.17	16	1.91	43	5.14	4	0.48	4	0.48	408	48.75	학내미디어
여자	437	31.87	95	6.93	31	2.26	61	4.45	9	0.66	2	0.15	736	53.68	학내미디어
외국	45	68.18	6	9.09	.	.	6	9.09	.	.	1	1.52	8	12.12	학내미디어
한국	694	32.4	149	6.96	47	2.19	98	4.58	13	0.61	5	0.23	1,136	53.03	학내미디어
합계	739	33.47	155	7.02	47	2.13	104	4.71	13	0.59	6	0.27	1,144	51.81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6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55.2%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75.6%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70%의 예체능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63 계열과정별 전공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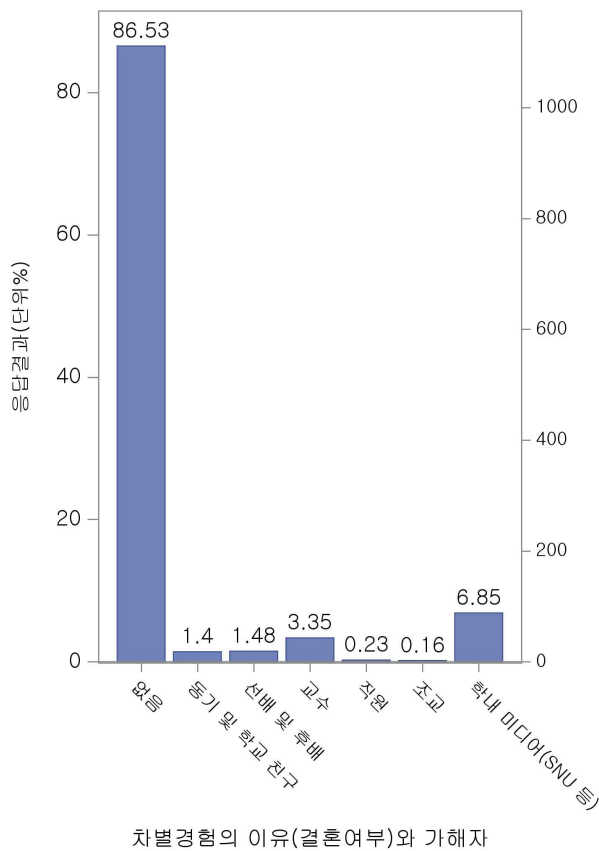
없음	87(42.2%)	61(23.6%)	12(46.2%)	12(15%)	62(75.6%)	36(67.9%)	170(42.4%)	128(20.6%)	115(58.7%)	56(19.8%)
동기 및 학교친구	14(6.8%)	12(4.6%)	4(15.4%)	4(5%)	3(3.7%)	7(13.2%)	20(5%)	55(8.8%)	13(6.6%)	23(8.1%)
선배 및 후배	4(1.9%)	4(1.5%)	0(0%)	4(5%)	3(3.7%)	0(0%)	8(2%)	11(1.8%)	10(5.1%)	3(1.1%)
교수	12(5.8%)	13(5%)	2(7.7%)	2(2.5%)	12(14.6%)	2(3.8%)	32(8%)	9(1.4%)	12(6.1%)	8(2.8%)
직원	1(0.5%)	0(0%)	0(0%)	2(2.5%)	2(2.4%)	0(0%)	2(0.5%)	2(0.3%)	4(2%)	0(0%)
조교	0(0%)	1(0.4%)	0(0%)	0(0%)	0(0%)	0(0%)	1(0.2%)	1(0.2%)	2(1%)	1(0.4%)
학내 미디어(SNU 등)	88(42.7%)	168(64.9%)	8(30.8%)	56(70%)	0(0%)	8(15.1%)	168(41.9%)	416(66.9%)	40(20.4%)	192(67.8%)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10. 결혼여부

결혼여부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62>와 <표 32>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86.53%의 응답자(1,111명)가 결혼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6.85%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교수’가 3.35%, ‘선배 및 후배’가 1.48%, ‘동기 및 학교 친구’가 1.4%, ‘직원’이 0.23%, ‘조교’가 0.16%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9.1%인 569명과 대학원생의 97.0%인 755명이 결혼여부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결혼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0.2%, 대학원생의 0.0%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6.85%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4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1111	86.53%	1111	86.53%
동기 및 학교 친구	18	1.4%	1129	87.93%
선배 및 후배	19	1.48%	1148	89.41%
교수	43	3.35%	1191	92.76%
직원	3	0.23%	1194	92.99%
조교	2	0.16%	1196	93.15%
학내 미디어(SNU 등)	88	6.85%	1284	100%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4(93.3%)	41(93.2%)	434(86.8%)	622(85.8%)
동기 및 학교 친구	0(0%)	2(4.5%)	5(1%)	11(1.5%)
선배 및 후배	1(6.7%)	1(2.3%)	3(0.6%)	14(1.9%)
교수	0(0%)	0(0%)	15(3%)	28(3.9%)
직원	0(0%)	0(0%)	1(0.2%)	2(0.3%)
조교	0(0%)	0(0%)	2(0.4%)	0(0%)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40(8%)	48(6.6%)

표 32 응답자 유형별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28	87.02	1	0.38	5	1.91	3	1.15	1	0.38	.	.	24	9.16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2	73.68	6	10.53	.	.	1	1.75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09	85.16	3	2.34	2	1.56	14	10.94	교수
인문사회계열	475	84.67	9	1.6	7	1.25	12	2.14	1	0.18	1	0.18	56	9.98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57	93.12	5	1.81	5	1.81	8	2.9	1	0.36	교수
박사	130	72.63	7	3.91	8	4.47	17	9.5	.	.	1	0.56	16	8.94	교수
석사	437	84.85	7	1.36	10	1.94	18	3.5	3	0.58	.	.	40	7.77	학내미디어
학부	544	92.2	4	0.68	1	0.17	8	1.36	.	.	1	0.17	32	5.42	학내미디어
남자	448	86.99	5	0.97	4	0.78	15	2.91	1	0.19	2	0.39	40	7.77	학내미디어
여자	663	86.22	13	1.69	15	1.95	28	3.64	2	0.26	.	.	48	6.24	학내미디어
외국	55	93.22	2	3.39	2	3.39	동기및친구 선배및후배
한국	1,056	86.2	16	1.31	17	1.39	43	3.51	3	0.24	2	0.16	88	7.18	학내미디어
합계	1,111	86.53	18	1.4	19	1.48	43	3.35	3	0.23	2	0.16	88	6.85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93.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8%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98.3%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0.8%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65 계열과정별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 미디어(SNU 등)
공학계열(대학원생)	118(82.5%)	1(0.7%)	5(3.5%)	2(1.4%)	1(0.7%)	0(0%)	16(11.2%)
공학계열(학부생)	110(92.4%)	0(0%)	0(0%)	1(0.8%)	0(0%)	0(0%)	8(6.7%)
예체능계열(대학원생)	15(57.7%)	0(0%)	0(0%)	3(11.5%)	0(0%)	0(0%)	8(30.8%)
예체능계열(학부생)	27(87.1%)	0(0%)	0(0%)	3(9.7%)	0(0%)	1(3.2%)	0(0%)
의학계열(대학원생)	66(80.5%)	2(2.4%)	2(2.4%)	12(14.6%)	0(0%)	0(0%)	0(0%)
의학계열(학부생)	43(93.5%)	1(2.2%)	0(0%)	2(4.3%)	0(0%)	0(0%)	0(0%)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224(79.4%)	7(2.5%)	6(2.1%)	11(3.9%)	1(0.4%)	1(0.4%)	32(11.3%)
인문사회계열(학부생)	251(90%)	2(0.7%)	1(0.4%)	1(0.4%)	0(0%)	0(0%)	24(8.6%)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144(89.4%)	4(2.5%)	5(3.1%)	7(4.3%)	1(0.6%)	0(0%)	0(0%)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13(98.3%)	1(0.9%)	0(0%)	1(0.9%)	0(0%)	0(0%)	0(0%)

17-11. 군필 여부

군필 여부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64>와 <표 33>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70.35%의 응답자(992명)가 군필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16.45%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6.1%, ‘선배 및 후배’가 3.62%, ‘교수’가 2.91%, ‘직원’이 0.5%, ‘조교’가 0.07%로 응답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4.6%인 543명과 대학원생의 97.6%인 759명이 군필 여부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군필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6%, 대학원생의 0.0%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16.45%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군필 여부에 따른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6 군필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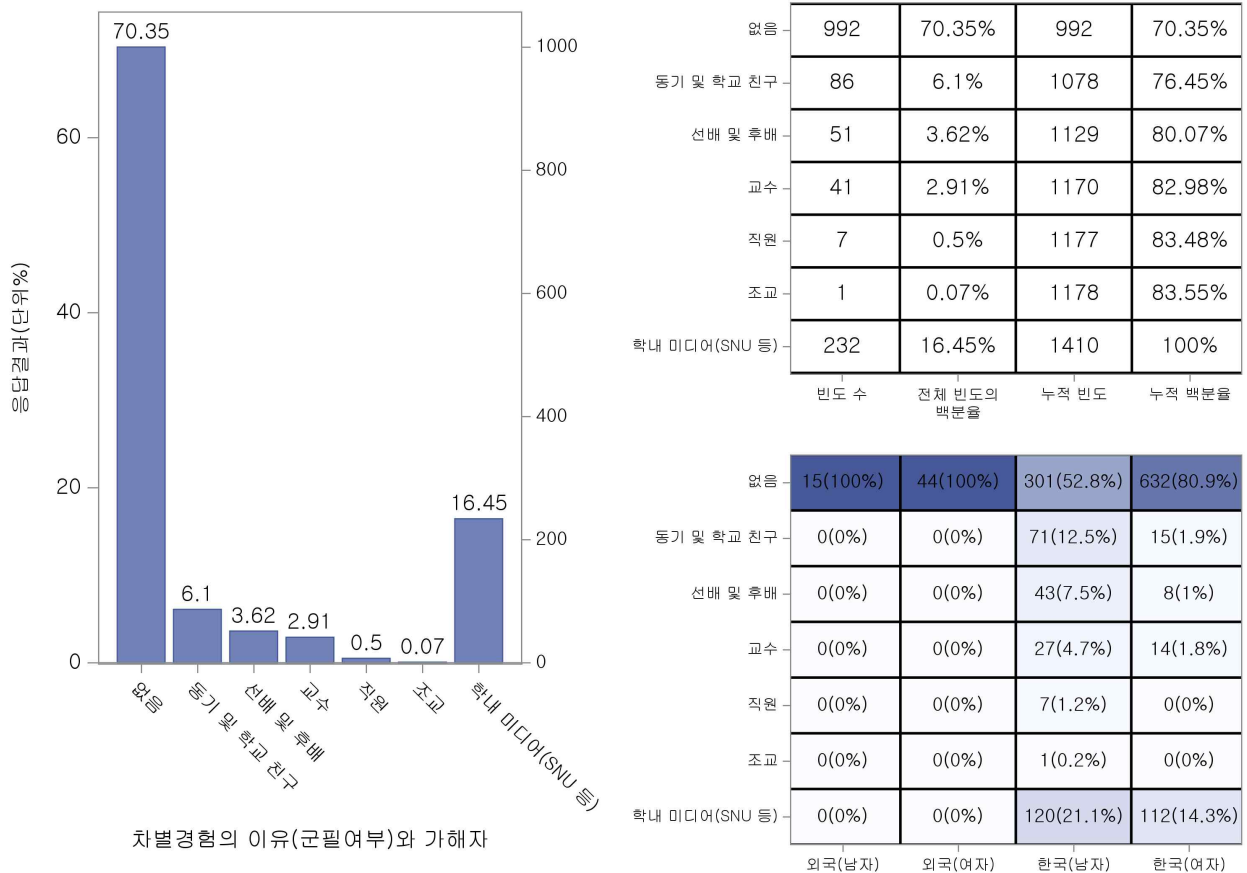


표 33 응답자 유형별 군필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78	58.55	28	9.21	18	5.92	5	1.64	3	0.99	.	.	72	23.68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2	73.68	1	1.75	5	8.77	1	1.75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14	89.06	2	1.56	5	3.91	7	5.47	교수
인문사회계열	433	70.98	30	4.92	13	2.13	19	3.11	2	0.33	1	0.16	112	18.36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25	72.35	25	8.04	10	3.22	9	2.89	2	0.64	.	.	40	12.86	교수
박사	153	88.95	2	1.16	3	1.74	5	2.91	1	0.58	.	.	8	4.65	교수
석사	395	69.18	31	5.43	21	3.68	18	3.15	2	0.35	.	.	104	18.21	학내미디어
학부	444	66.57	53	7.95	27	4.05	18	2.7	4	0.6	1	0.15	120	17.99	학내미디어
남자	316	54.02	71	12.14	43	7.35	27	4.62	7	1.2	1	0.17	120	20.51	학내미디어
여자	676	81.94	15	1.82	8	0.97	14	1.7	112	13.58	학내미디어
외국	59	100
한국	933	69.06	86	6.37	51	3.77	41	3.03	7	0.52	1	0.07	232	17.17	학내미디어
합계	992	70.35	86	6.1	51	3.62	41	2.91	7	0.5	1	0.07	232	16.45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과 외국인 여학생이 1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21.1%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93.5%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0.8%의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67 계열과정별 군필여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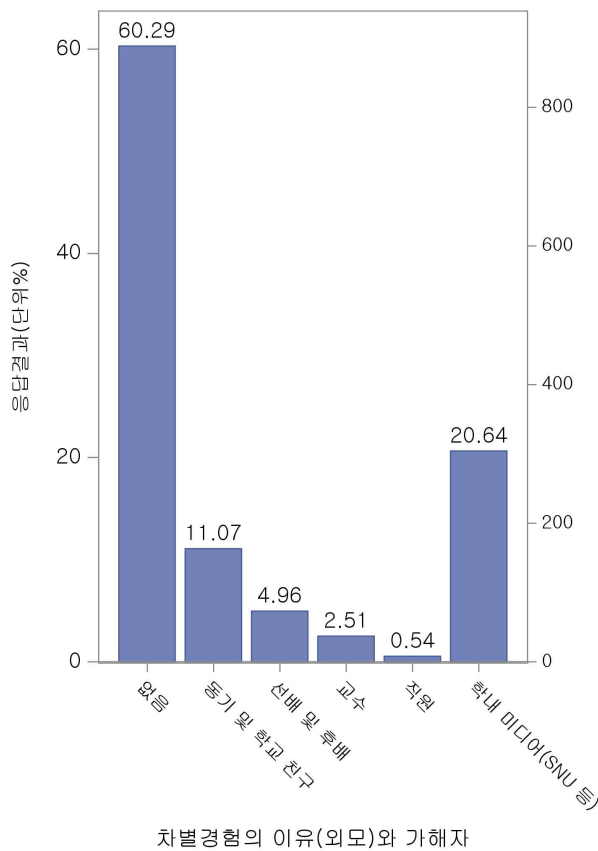
없음	98(59.8%)	80(57.1%)	18(69.2%)	24(77.4%)	71(86.6%)	43(93.5%)	229(79.2%)	204(63.6%)	132(72.5%)	93(72.1%)
동기 및 학교 친구	11(6.7%)	17(12.1%)	0(0%)	1(3.2%)	2(2.4%)	0(0%)	7(2.4%)	23(7.2%)	13(7.1%)	12(9.3%)
선배 및 후배	11(6.7%)	7(5%)	0(0%)	5(16.1%)	5(6.1%)	0(0%)	3(1%)	10(3.1%)	5(2.7%)	5(3.9%)
교수	3(1.8%)	2(1.4%)	0(0%)	1(3.2%)	4(4.9%)	3(6.5%)	10(3.5%)	9(2.8%)	6(3.3%)	3(2.3%)
직원	1(0.6%)	2(1.4%)	0(0%)	0(0%)	0(0%)	0(0%)	0(0%)	2(0.6%)	2(1.1%)	0(0%)
조교	0(0%)	0(0%)	0(0%)	0(0%)	0(0%)	0(0%)	0(0%)	1(0.3%)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40(24.4%)	32(22.9%)	8(30.8%)	0(0%)	0(0%)	0(0%)	40(13.8%)	72(22.4%)	24(13.2%)	16(12.4%)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12. 외모

외모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66> 과 <표 34>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0.29%의 응답자(888명)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20.64%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11.07%, ‘선배 및 후배’가 4.96%, ‘교수’가 2.51%, ‘직원’이 0.54%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1.6%인 526명과 대학원생의 94.5%인 735명이 외모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6%, 대학원생의 0.4%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20.64%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8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888	60.29%	888	60.29%
동기 및 학교 친구	163	11.07%	1051	71.35%
선배 및 후배	73	4.96%	1124	76.31%
교수	37	2.51%	1161	78.82%
직원	8	0.54%	1169	79.36%
학내 미디어(SNU 등)	304	20.64%	1473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1(73.3%)	34(77.3%)	342(61.5%)	501(58.4%)
동기 및 학교 친구	3(20%)	6(13.6%)	74(13.3%)	80(9.3%)
선배 및 후배	1(6.7%)	0(0%)	24(4.3%)	48(5.6%)
교수	0(0%)	3(6.8%)	11(2%)	23(2.7%)
직원	0(0%)	1(2.3%)	1(0.2%)	6(0.7%)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104(18.7%)	200(23.3%)

표 34 응답자 유형별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 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77	54.46	37	11.38	11	3.38	4	1.23	96	29.54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37	52.11	9	12.68	.	.	1	1.41	24	33.8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92	71.88	11	8.59	12	9.38	12	9.38	1	0.78	선배및후배 교수
인문사회계열	363	56.28	73	11.32	39	6.05	14	2.17	4	0.62	.	.	152	23.57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19	72.04	33	10.86	11	3.62	6	1.97	3	0.99	.	.	32	10.53	학내미디어
박사	124	66.67	13	6.99	10	5.38	14	7.53	1	0.54	.	.	24	12.9	학내미디어
석사	361	64.81	57	10.23	29	5.21	17	3.05	5	0.9	.	.	88	15.8	학내미디어
학부	403	55.21	93	12.74	34	4.66	6	0.82	2	0.27	.	.	192	26.3	학내미디어
남자	353	61.82	77	13.49	25	4.38	11	1.93	1	0.18	.	.	104	18.21	학내미디어
여자	535	59.31	86	9.53	48	5.32	26	2.88	7	0.78	.	.	200	22.17	학내미디어
외국	45	76.27	9	15.25	1	1.69	3	5.08	1	1.69	교수
한국	843	59.62	154	10.89	72	5.09	34	2.4	7	0.5	.	.	304	21.5	학내미디어
합계	888	60.29	163	11.07	73	4.96	37	2.51	8	0.54	.	.	304	20.64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7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2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76.8%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5.6%의 예체능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69 계열과정별 외모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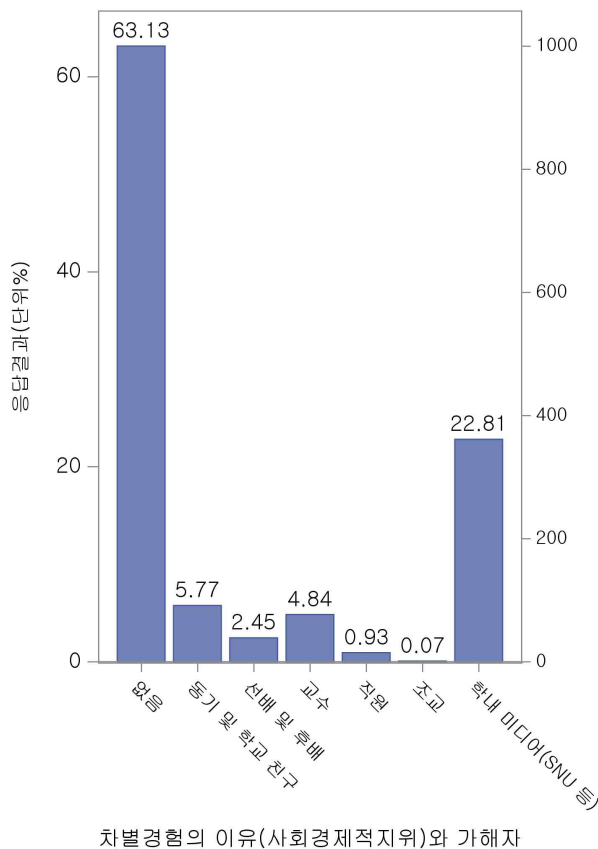
없음	98(59.8%)	79(49.1%)	15(57.7%)	22(48.9%)	63(76.8%)	29(63%)	185(61.1%)	178(52%)	124(73.8%)	95(69.9%)
동기 및 학교 친구	15(9.1%)	22(13.7%)	3(11.5%)	6(13.3%)	3(3.7%)	8(17.4%)	30(9.9%)	43(12.6%)	19(11.3%)	14(10.3%)
선배 및 후배	7(4.3%)	4(2.5%)	0(0%)	0(0%)	7(8.5%)	5(10.9%)	16(5.3%)	23(6.7%)	9(5.4%)	2(1.5%)
교수	4(2.4%)	0(0%)	0(0%)	1(2.2%)	8(9.8%)	4(8.7%)	14(4.6%)	0(0%)	5(3%)	1(0.7%)
직원	0(0%)	0(0%)	0(0%)	0(0%)	1(1.2%)	0(0%)	2(0.7%)	2(0.6%)	3(1.8%)	0(0%)
학내 미디어(SNU 등)	40(24.4%)	56(34.8%)	8(30.8%)	16(35.6%)	0(0%)	0(0%)	56(18.5%)	96(28.1%)	8(4.8%)	24(17.6%)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13.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68>과 <표 35>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13%의 응답자(952명)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22.81%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5.77%, ‘교수’가 4.84%, ‘선배 및 후배’가 2.45%, ‘직원’이 0.93%, ‘조교’가 0.07%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7.0%인 557명과 대학원생의 94.2%인 733명이 지위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0.5%, 대학원생의 0.1%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22.81%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70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가해자 유형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952	63.13%	952	63.13%
동기 및 학교 친구	87	5.77%	1039	68.9%
선배 및 후배	37	2.45%	1076	71.35%
교수	73	4.84%	1149	76.19%
직원	14	0.93%	1163	77.12%
조교	1	0.07%	1164	77.19%
학내 미디어(SNU 등)	344	22.81%	1508	100%

가해자 유형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2(80%)	31(70.5%)	365(64%)	544(61.9%)
동기 및 학교 친구	1(6.7%)	6(13.6%)	33(5.8%)	47(5.3%)
선배 및 후배	2(13.3%)	2(4.5%)	12(2.1%)	21(2.4%)
교수	0(0%)	4(9.1%)	31(5.4%)	38(4.3%)
직원	0(0%)	1(2.3%)	8(1.4%)	5(0.6%)
조교	0(0%)	0(0%)	1(0.2%)	0(0%)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120(21.1%)	224(25.5%)

표 35 응답자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99	63.99	17	5.47	7	2.25	5	1.61	3	0.96	.	.	80	25.72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36	56.25	7	10.94	.	.	5	7.81	16	25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95	70.37	9	6.67	5	3.7	18	13.33	8	5.93	교수
인문사회계열	394	59.16	41	6.16	17	2.55	32	4.8	6	0.9	.	.	176	26.43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28	68.67	13	3.92	8	2.41	13	3.92	5	1.51	1	0.3	64	19.28	학내미디어
박사	120	64.52	8	4.3	12	6.45	17	9.14	5	2.69	.	.	24	12.9	학내미디어
석사	374	66.31	32	5.67	16	2.84	44	7.8	2	0.35	.	.	96	17.02	학내미디어
학부	458	60.42	47	6.2	9	1.19	12	1.58	7	0.92	1	0.13	224	29.55	학내미디어
남자	377	64.44	34	5.81	14	2.39	31	5.3	8	1.37	1	0.17	120	20.51	학내미디어
여자	575	62.3	53	5.74	23	2.49	42	4.55	6	0.65	.	.	224	24.27	학내미디어
외국	43	72.88	7	11.86	4	6.78	4	6.78	1	1.69	동기및친구
한국	909	62.73	80	5.52	33	2.28	69	4.76	13	0.9	1	0.07	344	23.74	학내미디어
합계	952	63.13	87	5.77	37	2.45	73	4.84	14	0.93	1	0.07	344	22.81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8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2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학부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78.3%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4.8%의 공학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71 계열과정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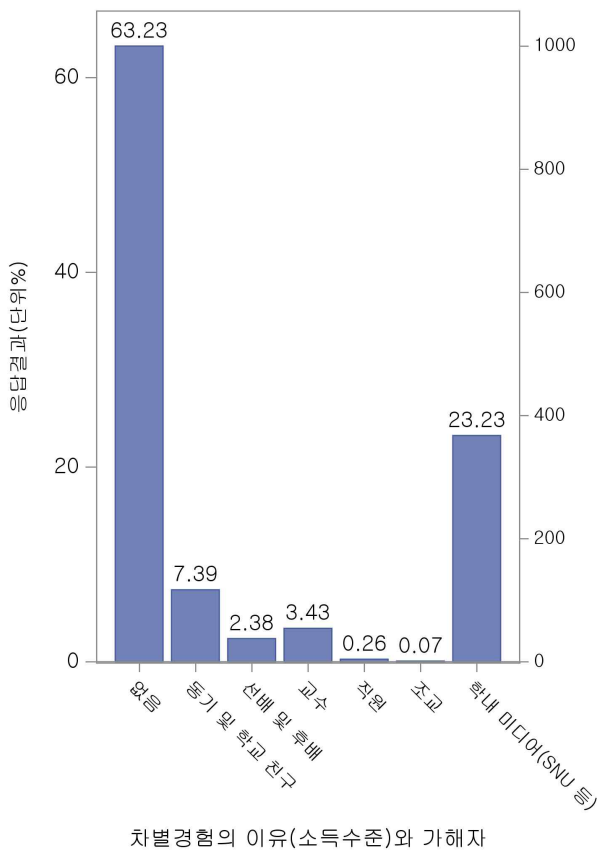
없음	105(70%)	94(58.4%)	12(46.2%)	24(63.2%)	59(66.3%)	36(78.3%)	186(61.4%)	208(57.3%)	132(72.5%)	96(64%)
동기 및 학교 친구	9(6%)	8(5%)	5(19.2%)	2(5.3%)	3(3.4%)	6(13%)	16(5.3%)	25(6.9%)	7(3.8%)	6(4%)
선배 및 후배	5(3.3%)	2(1.2%)	0(0%)	0(0%)	3(3.4%)	2(4.3%)	12(4%)	5(1.4%)	8(4.4%)	0(0%)
교수	4(2.7%)	1(0.6%)	1(3.8%)	4(10.5%)	16(18%)	2(4.3%)	31(10.2%)	1(0.3%)	9(4.9%)	4(2.7%)
직원	3(2%)	0(0%)	0(0%)	0(0%)	0(0%)	0(0%)	2(0.7%)	4(1.1%)	2(1.1%)	3(2%)
조교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7%)
학내 미디어(SNU 등)	24(16%)	56(34.8%)	8(30.8%)	8(21.1%)	8(9%)	0(0%)	56(18.5%)	120(33.1%)	24(13.2%)	40(26.7%)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14. 소득수준

소득수준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70>과 <표 36>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23%의 응답자(952 명)가 소득수준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23.23%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7.39%, ‘교수’가 3.43%, ‘선배 및 후배’가 2.38%, ‘직원’이 0.26%, ‘조교’가 0.07%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4.3%인 541 명과 대학원생의 94.0%인 731 명이 소득수준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소득수준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9%, 대학원생의 0.4%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23.23%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72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없음	958	63.23%	958	63.23%
동기 및 학교 친구	112	7.39%	1070	70.63%
선배 및 후배	36	2.38%	1106	73%
교수	52	3.43%	1158	76.44%
직원	4	0.26%	1162	76.7%
조교	1	0.07%	1163	76.77%
학내 미디어(SNU 등)	352	23.23%	1515	100%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11(73.3%)	37(84.1%)	367(62.1%)	543(62.8%)
동기 및 학교 친구	2(13.3%)	5(11.4%)	43(7.3%)	62(7.2%)
선배 및 후배	2(13.3%)	0(0%)	12(2%)	22(2.5%)
교수	0(0%)	2(4.5%)	22(3.7%)	28(3.2%)
직원	0(0%)	0(0%)	3(0.5%)	1(0.1%)
조교	0(0%)	0(0%)	0(0%)	1(0.1%)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144(24.4%)	208(24%)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표 36 응답자 유형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91	55.2	17	4.91	10	2.89	7	2.02	1	0.29	.	.	120	34.68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37	52.11	7	9.86	.	.	2	2.82	1	1.41	.	.	24	33.8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99	77.34	16	12.5	1	0.78	12	9.38	동기및친구
인문사회계열	406	62.27	46	7.06	15	2.3	22	3.37	2	0.31	1	0.15	160	24.54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25	70.75	26	8.18	10	3.14	9	2.83	48	15.09	학내미디어
박사	128	68.82	10	5.38	7	3.76	16	8.6	1	0.54	.	.	24	12.9	학내미디어
석사	381	68.4	37	6.64	20	3.59	30	5.39	.	.	1	0.18	88	15.8	학내미디어
학부	449	58.16	65	8.42	9	1.17	6	0.78	3	0.39	.	.	240	31.09	학내미디어
남자	378	62.38	45	7.43	14	2.31	22	3.63	3	0.5	.	.	144	23.76	학내미디어
여자	580	63.81	67	7.37	22	2.42	30	3.3	1	0.11	1	0.11	208	22.88	학내미디어
외국	48	81.36	7	11.86	2	3.39	2	3.39	동기및친구
한국	910	62.5	105	7.21	34	2.34	50	3.43	4	0.27	1	0.07	352	24.18	학내미디어
합계	958	63.23	112	7.39	36	2.38	52	3.43	4	0.26	1	0.07	352	23.23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8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남학생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79.3%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4%의 공학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73 계열과정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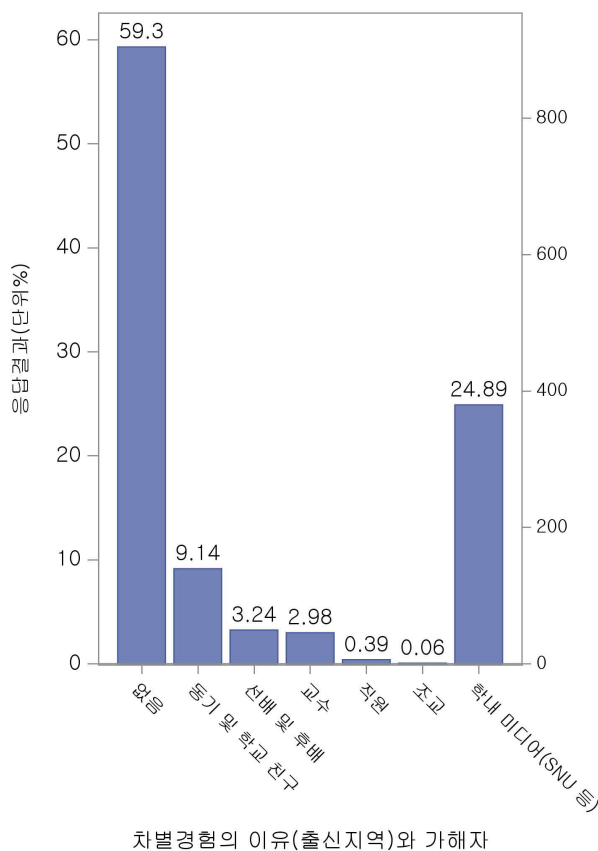
없음	101(61.6%)	90(49.5%)	14(53.8%)	23(51.1%)	65(79.3%)	34(73.9%)	198(66.9%)	208(58.4%)	131(74.9%)	94(65.7%)
동기 및 학교 친구	8(4.9%)	9(4.9%)	4(15.4%)	3(6.7%)	6(7.3%)	10(21.7%)	18(6.1%)	28(7.9%)	11(6.3%)	15(10.5%)
선배 및 후배	8(4.9%)	2(1.1%)	0(0%)	0(0%)	0(0%)	1(2.2%)	10(3.4%)	5(1.4%)	9(5.1%)	1(0.7%)
교수	6(3.7%)	1(0.5%)	0(0%)	2(4.4%)	11(13.4%)	1(2.2%)	21(7.1%)	1(0.3%)	8(4.6%)	1(0.7%)
직원	1(0.6%)	0(0%)	0(0%)	1(2.2%)	0(0%)	0(0%)	0(0%)	2(0.6%)	0(0%)	0(0%)
조교	0(0%)	0(0%)	0(0%)	0(0%)	0(0%)	0(0%)	1(0.3%)	0(0%)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40(24.4%)	80(44%)	8(30.8%)	16(35.6%)	0(0%)	0(0%)	48(16.2%)	112(31.5%)	16(9.1%)	32(22.4%)

17-15. 출신지역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72>와 <표 37>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9.3%의 응답자(915명)가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24.89%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동기 및 학교 친구’가 9.14%, ‘선배 및 후배’가 3.24%, ‘교수’가 2.98%, ‘직원’이 0.39%, ‘조교’가 0.06%로 응답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학부생의 91.5%인 525명과 대학원생의 93.8%인 730명이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학부생의 1.4%, 대학원생의 0.5%만이 ‘학내 미디어’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24.89%가 ‘학내 미디어(SNU 등)’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74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915	59.3%	915	59.3%
동기 및 학교 친구	141	9.14%	1056	68.44%
선배 및 후배	50	3.24%	1106	71.68%
교수	46	2.98%	1152	74.66%
직원	6	0.39%	1158	75.05%
조교	1	0.06%	1159	75.11%
학내 미디어(SNU 등)	384	24.89%	1543	100%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9(60%)	28(54.9%)	354(60.6%)	524(58.7%)
동기 및 학교 친구	4(26.7%)	6(11.8%)	54(9.2%)	77(8.6%)
선배 및 후배	2(13.3%)	1(2%)	18(3.1%)	29(3.2%)
교수	0(0%)	4(7.8%)	20(3.4%)	22(2.5%)
직원	0(0%)	4(7.8%)	2(0.3%)	0(0%)
조교	0(0%)	0(0%)	0(0%)	1(0.1%)
학내 미디어(SNU 등)	0(0%)	8(15.7%)	136(23.3%)	240(26.9%)

표 37 응답자 유형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 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83	56.31	29	8.92	11	3.38	5	1.54	1	0.31	.	.	96	29.54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38	59.38	7	10.94	1	1.56	1	1.56	1	1.56	.	.	16	25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95	74.22	11	8.59	9	7.03	13	10.16	교수
인문사회계열	373	51.17	66	9.05	16	2.19	21	2.88	4	0.55	1	0.14	248	34.02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26	76.09	28	9.43	13	4.38	6	2.02	24	8.08	동기및친구
박사	132	76.74	9	5.23	8	4.65	15	8.72	8	4.65	교수
석사	382	69.45	40	7.27	24	4.36	19	3.45	4	0.73	1	0.18	80	14.55	학내미디어
학부	401	48.84	92	11.21	18	2.19	12	1.46	2	0.24	.	.	296	36.05	학내미디어
남자	363	60.6	58	9.68	20	3.34	20	3.34	2	0.33	.	.	136	22.7	학내미디어
여자	552	58.47	83	8.79	30	3.18	26	2.75	4	0.42	1	0.11	248	26.27	학내미디어
외국	37	56.06	10	15.15	3	4.55	4	6.06	4	6.06	.	.	8	12.12	동기및친구
한국	878	59.44	131	8.87	47	3.18	42	2.84	2	0.14	1	0.07	376	25.46	학내미디어
합계	915	59.3	141	9.14	50	3.24	46	2.98	6	0.39	1	0.06	384	24.89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인 남학생이 60.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82.1%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6.2%의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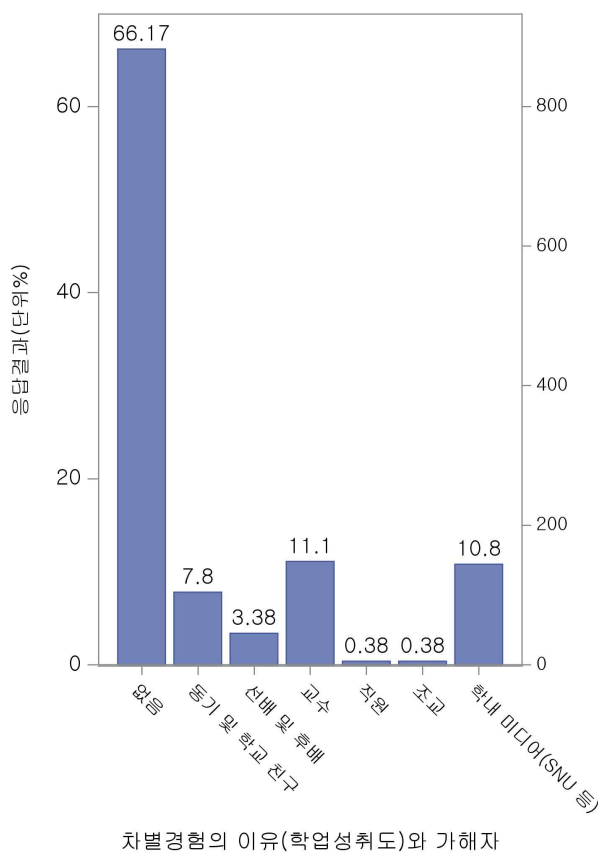
그림 75 계열과정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없음	102(68%)	81(46.3%)	15(57.7%)	23(60.5%)	65(79.3%)	30(65.2%)	194(65.5%)	179(41.3%)	138(82.1%)	88(68.2%)
동기 및 학교 친구	12(8%)	17(9.7%)	3(11.5%)	4(10.5%)	3(3.7%)	8(17.4%)	23(7.8%)	43(9.9%)	8(4.8%)	20(15.5%)
선배 및 후배	7(4.7%)	4(2.3%)	0(0%)	1(2.6%)	6(7.3%)	3(6.5%)	10(3.4%)	6(1.4%)	9(5.4%)	4(3.1%)
교수	4(2.7%)	1(0.6%)	0(0%)	1(2.6%)	8(9.8%)	5(10.9%)	17(5.7%)	4(0.9%)	5(3%)	1(0.8%)
직원	1(0.7%)	0(0%)	0(0%)	1(2.6%)	0(0%)	0(0%)	3(1%)	1(0.2%)	0(0%)	0(0%)
조교	0(0%)	0(0%)	0(0%)	0(0%)	0(0%)	0(0%)	1(0.3%)	0(0%)	0(0%)	0(0%)
학내 미디어(SNU 등)	24(16%)	72(41.1%)	8(30.8%)	8(21.1%)	0(0%)	0(0%)	48(16.2%)	200(46.2%)	8(4.8%)	16(12.4%)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16.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74>와 <표 38>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6.17%의 응답자(882명)가 학업성취도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11.1%의 응답자는 ‘교수’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의 가해자로 ‘학내 미디어(SNU 등)’가 10.8%, ‘동기 및 학교 친구’가 7.8%, ‘선배 및 후배’가 3.38%, ‘직원’과 ‘조교’가 0.38%로 응답 되었다. 기타 차별 요인에 비해 ‘교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그림 76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없음	882	66.17%	882	66.17%
동기 및 학교 친구	104	7.8%	986	73.97%
선배 및 후배	45	3.38%	1031	77.34%
교수	148	11.1%	1179	88.45%
직원	5	0.38%	1184	88.82%
조교	5	0.38%	1189	89.2%
학내 미디어(SNU 등)	144	10.8%	1333	100%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없음	10(66.7%)	33(75%)	318(61%)	521(69.2%)
동기 및 학교 친구	0(0%)	2(4.5%)	46(8.8%)	56(7.4%)
선배 및 후배	3(20%)	1(2.3%)	18(3.5%)	23(3.1%)
교수	1(6.7%)	8(18.2%)	69(13.2%)	70(9.3%)
직원	0(0%)	0(0%)	3(0.6%)	2(0.3%)
조교	1(6.7%)	0(0%)	3(0.6%)	1(0.1%)
학내 미디어(SNU 등)	0(0%)	0(0%)	64(12.3%)	80(10.6%)

표 38 응답자 유형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 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151	53.36	29	10.25	17	6.01	35	12.37	1	0.35	2	0.71	48	16.96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39	68.42	3	5.26	2	3.51	4	7.02	.	.	1	1.75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92	71.88	7	5.47	4	3.13	25	19.53	교수
인문사회계열	398	68.38	37	6.36	11	1.89	53	9.11	2	0.34	1	0.17	80	13.75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02	71.38	28	9.89	11	3.89	31	10.95	2	0.71	1	0.35	8	2.83	교수
박사	116	67.44	9	5.23	8	4.65	30	17.44	1	0.58	.	.	8	4.65	교수
석사	347	70.24	33	6.68	24	4.86	70	14.17	4	0.81	.	.	16	3.24	교수
학부	419	62.82	62	9.3	13	1.95	48	7.2	.	.	5	0.75	120	17.99	학내미디어
남자	328	61.19	46	8.58	21	3.92	70	13.06	3	0.56	4	0.75	64	11.94	교수
여자	554	69.51	58	7.28	24	3.01	78	9.79	2	0.25	1	0.13	80	10.04	학내미디어
외국	43	72.88	2	3.39	4	6.78	9	15.25	.	.	1	1.69	.	.	교수
한국	839	65.86	102	8.01	41	3.22	139	10.91	5	0.39	4	0.31	144	11.3	학내미디어
합계	882	66.17	104	7.8	45	3.38	148	11.1	5	0.38	5	0.38	144	10.8	교수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여학생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 여학생이 12.3%로 가장 높은 비율로 교수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73.7%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7%의 의학계열 대학원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77 계열과정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없음	84(61.8%)	67(45.6%)	14(73.7%)	25(65.8%)	59(72%)	33(71.7%)	192(71.6%)	206(65.6%)	114(70.8%)	88(72.1%)
동기 및 학교 친구	9(6.6%)	20(13.6%)	2(10.5%)	1(2.6%)	5(6.1%)	2(4.3%)	13(4.9%)	24(7.6%)	13(8.1%)	15(12.3%)
선배 및 후배	14(10.3%)	3(2%)	1(5.3%)	1(2.6%)	1(1.2%)	3(6.5%)	5(1.9%)	6(1.9%)	11(6.8%)	0(0%)
교수	20(14.7%)	15(10.2%)	2(10.5%)	2(5.3%)	17(20.7%)	8(17.4%)	40(14.9%)	13(4.1%)	21(13%)	10(8.2%)
직원	1(0.7%)	0(0%)	0(0%)	0(0%)	0(0%)	0(0%)	2(0.7%)	0(0%)	2(1.2%)	0(0%)
조교	0(0%)	2(1.4%)	0(0%)	1(2.6%)	0(0%)	0(0%)	0(0%)	1(0.3%)	0(0%)	1(0.8%)
학내 미디어(SNU 등)	8(5.9%)	40(27.2%)	0(0%)	8(21.1%)	0(0%)	0(0%)	16(6%)	64(20.4%)	0(0%)	8(6.6%)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7-17. 동아리

동아리를 이유로 차별의 경험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76>과 <표 39>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85.75%의 응답자(1,107명)가 동아리를 이유로 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없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인 7.44%의 응답자는 ‘학내 미디어(SNU 등)’를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했다. 뒤이어 ‘동기 및 학교 친구’가 2.87%, ‘선배 및 후배’가 2.01%, ‘교수’가 1.78%, ‘직원’이 0.15%로 응답되었다.

그림 78 동아리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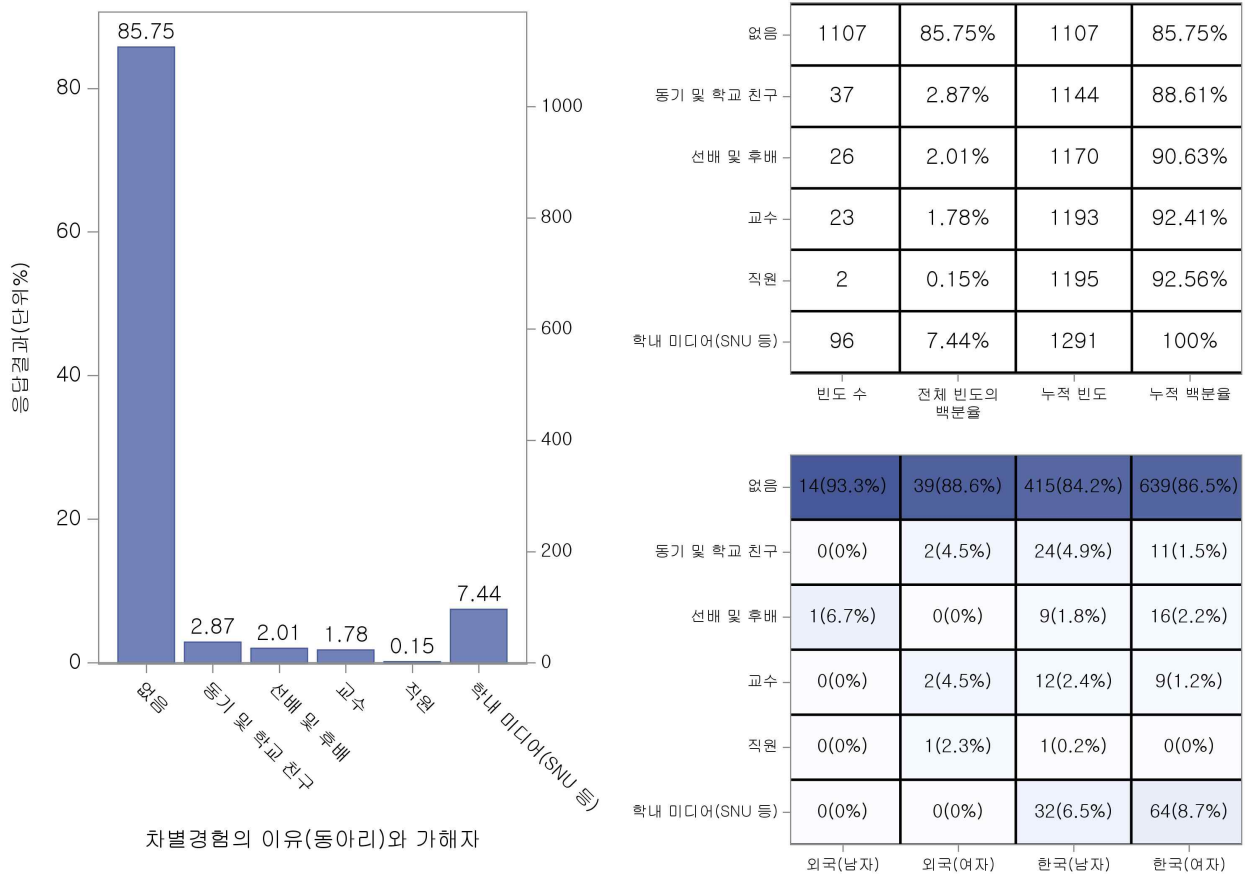


표 39 응답자 유형별 동아리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없음		동기 및 학교친구		선배 및 후배		교수		직원		조교		학내미디어 (SNU등)		최빈값 (없음제외)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231	90.59	4	1.57	2	0.78	2	0.78	16	6.27	학내미디어
예체능계열	46	80.7	1	1.75	1	1.75	1	1.75	8	14.04	학내미디어
의학계열	103	76.3	7	5.19	11	8.15	6	4.44	8	5.93	선배및후배
인문사회계열	472	84.14	15	2.67	6	1.07	11	1.96	1	0.18	.	.	56	9.98	학내미디어
자연과학계열	255	90.11	10	3.53	6	2.12	3	1.06	1	0.35	.	.	8	2.83	동기및친구
박사	151	91.52	4	2.42	2	1.21	8	4.85	교수
석사	445	90.08	12	2.43	9	1.82	10	2.02	2	0.4	.	.	16	3.24	학내미디어
학부	511	80.85	21	3.32	15	2.37	5	0.79	80	12.66	학내미디어
남자	429	84.45	24	4.72	10	1.97	12	2.36	1	0.2	.	.	32	6.3	학내미디어
여자	678	86.59	13	1.66	16	2.04	11	1.4	1	0.13	.	.	64	8.17	학내미디어
외국	53	89.83	2	3.39	1	1.69	2	3.39	1	1.69	동기및친구 교수
한국	1,054	85.55	35	2.84	25	2.03	21	1.7	1	0.08	.	.	96	7.79	학내미디어
합계	1,107	85.75	37	2.87	26	2.01	23	1.78	2	0.15	.	.	96	7.44	학내미디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9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100%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1.1%의 예체능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내 미디어(SNU 등)에 의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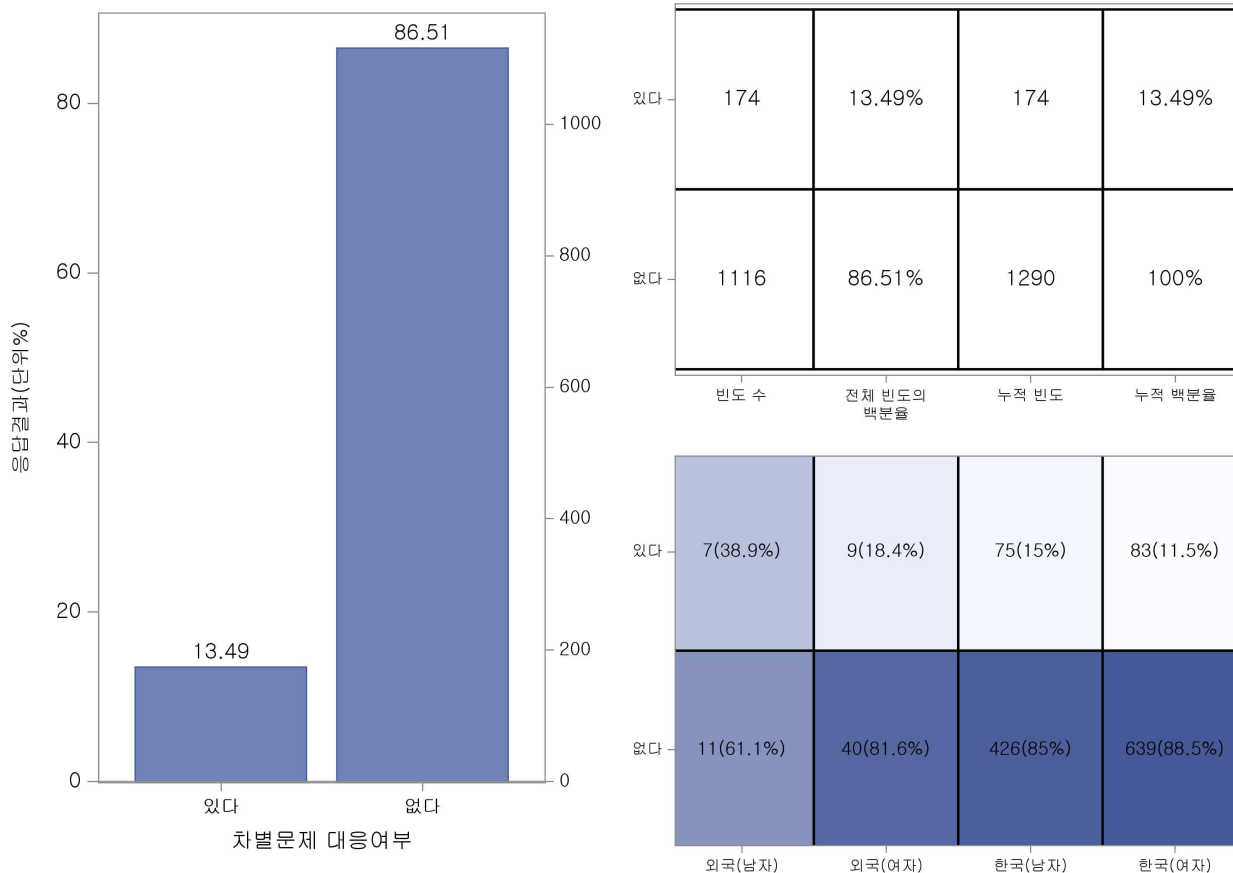
그림 79 계열과정별 동아리에 따른 차별경험과 가해자 유형 시각화

없음	124(91.2%)	107(89.9%)	19(100%)	27(71.1%)	69(77.5%)	34(73.9%)	236(92.9%)	236(76.9%)	148(91.9%)	107(87.7%)
동기 및 학교 친구	1(0.7%)	3(2.5%)	0(0%)	1(2.6%)	2(2.2%)	5(10.9%)	7(2.8%)	8(2.6%)	6(3.7%)	4(3.3%)
선배 및 후배	1(0.7%)	1(0.8%)	0(0%)	1(2.6%)	5(5.6%)	6(13%)	2(0.8%)	4(1.3%)	3(1.9%)	3(2.5%)
교수	2(1.5%)	0(0%)	0(0%)	1(2.6%)	5(5.6%)	1(2.2%)	8(3.1%)	3(1%)	3(1.9%)	0(0%)
직원	0(0%)	0(0%)	0(0%)	0(0%)	0(0%)	0(0%)	1(0.4%)	0(0%)	1(0.6%)	0(0%)
학내 미디어(SNU 등)	8(5.9%)	8(6.7%)	0(0%)	8(21.1%)	8(9%)	0(0%)	0(0%)	56(18.2%)	0(0%)	8(6.6%)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18.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양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3.49%인 174 명만이 대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86.51%인 1,290 명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림 80 차별문제 대응 노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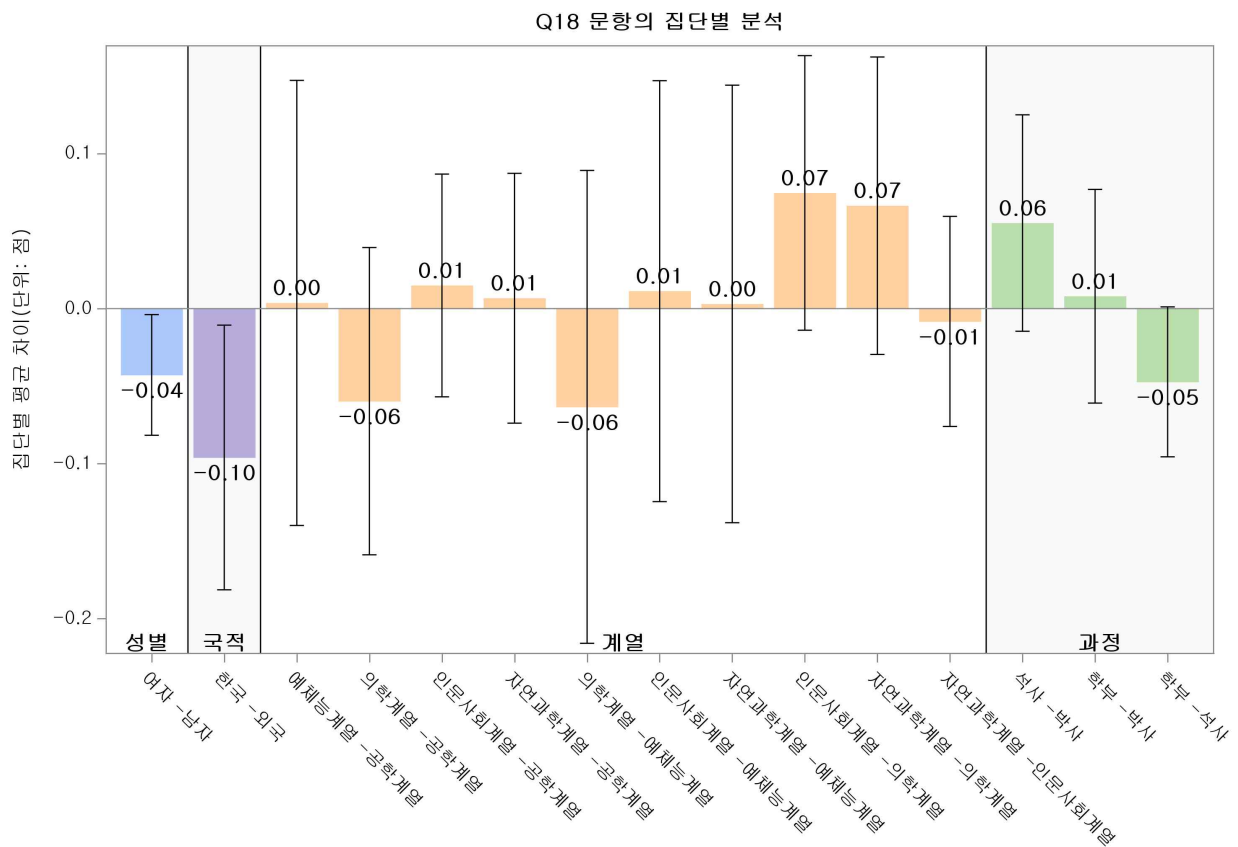
차별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특히 의학계열은 92.7%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40 응답자 유형별 차별문제 대응 여부

	있다		없다		최빈값
	N	%	N	%	
공학계열	37	14.51	218	85.49	없다
예체능계열	6	11.76	45	88.24	없다
의학계열	10	7.3	127	92.7	없다
인문사회계열	82	14.7	476	85.3	없다
자연과학계열	39	13.49	250	86.51	없다
박사	20	11.36	156	88.64	없다
석사	83	16.37	424	83.63	없다
학부	71	11.7	536	88.3	없다
남자	82	15.8	437	84.2	없다
여자	92	11.93	679	88.07	없다
외국	16	23.88	51	76.12	없다
한국	158	12.92	1,065	87.08	없다
합계	174	13.49	1,116	86.51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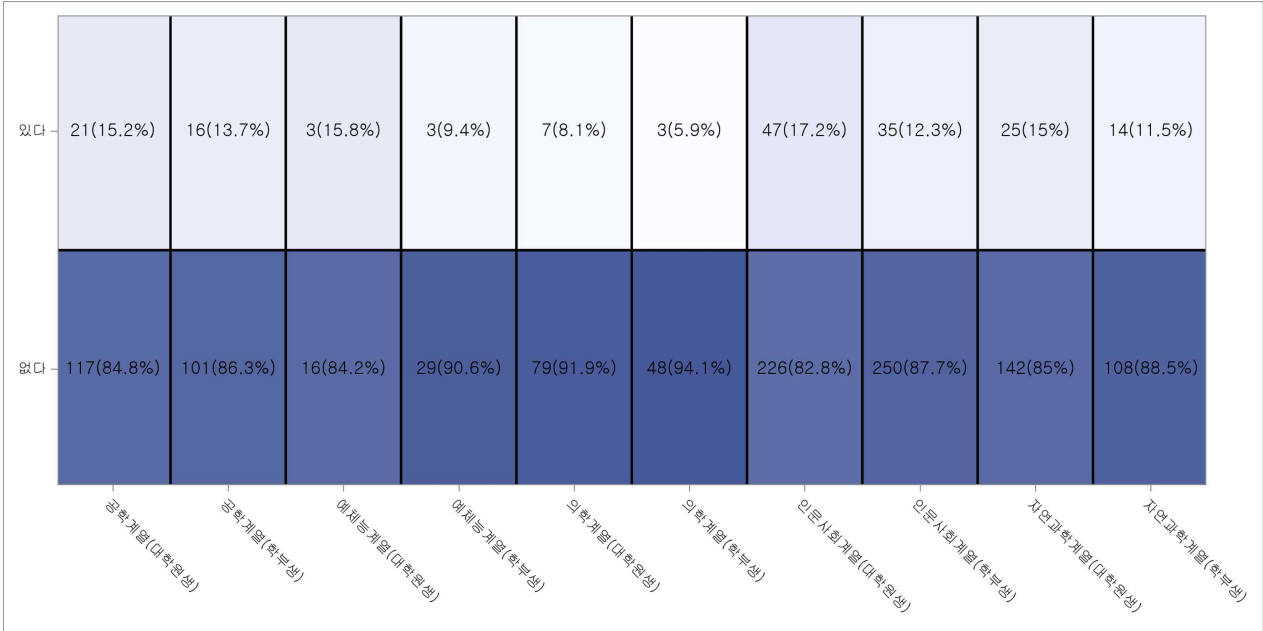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차이가 0.04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 중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0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 대응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1 차별문제 대응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없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61.6%, 외국인 여학생 81.6%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남학생 85%, 한국인 여학생 88.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이 82.8%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의학계열 학부생이 94.1%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82 차별문제 대응에 대한 계열과정별 차이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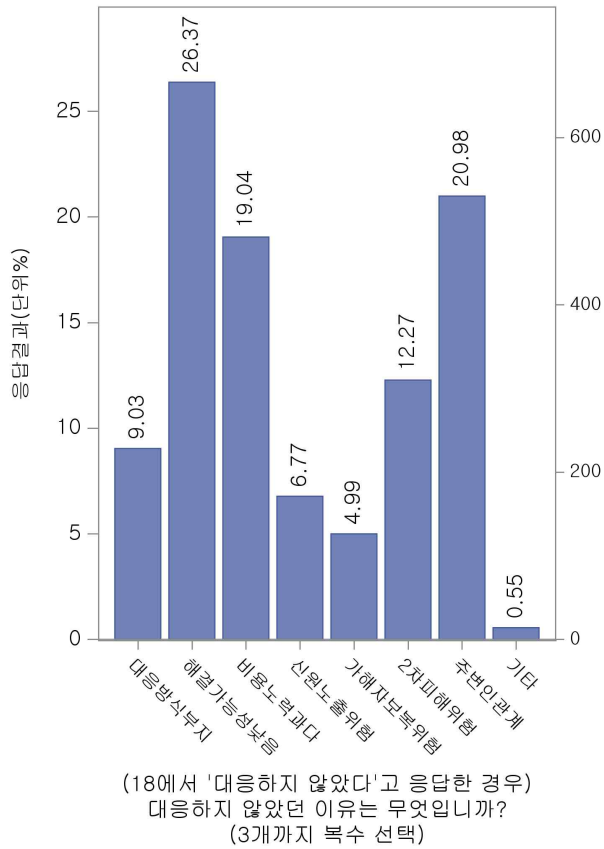


19. (18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18 번 문항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81>과 <표 41>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응답자의 26.37% 응답자(666명)가 해결 가능성 낮음을 이유로 뽑았다. 그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0.98%가 주변인 관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비용 노력 과다’가 19.04%, ‘2차 피해 위험’이 12.27%, ‘대응방식 부지’가 9.03%, ‘신원노출 위험’이 6.77%, ‘가해자보복위험’이 4.99%, ‘기타¹⁰⁾’가 0.55%로 응답되었다.

10) 기타응답자 수는 2차 1명, 3차 25명, 4차 8명으로 총 34명이다.

그림 83 차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대응방식부지	228	9.03%	228	9.03%
해결가능성낮음	666	26.37%	894	35.39%
비용노력과다	481	19.04%	1375	54.43%
신원노출위험	171	6.77%	1546	61.2%
가해자보복위험	126	4.99%	1672	66.19%
2차피해위험	310	12.27%	1982	78.46%
주변인관계	530	20.98%	2512	99.45%
기타	14	0.55%	2526	100%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대응방식부지	5(20%)	14(15.6%)	93(9.5%)	116(8.1%)
해결가능성낮음	7(28%)	16(17.8%)	256(26.1%)	387(27%)
비용노력과다	3(12%)	20(22.2%)	194(19.8%)	264(18.4%)
신원노출위험	0(0%)	2(2.2%)	78(8%)	91(6.4%)
가해자보복위험	4(16%)	9(10%)	58(5.9%)	55(3.8%)
2차피해위험	2(8%)	7(7.8%)	111(11.3%)	190(13.3%)
주변인관계	4(16%)	15(16.7%)	190(19.4%)	321(22.4%)
기타	0(0%)	7(7.8%)	0(0%)	7(0.5%)

표 41 응답자 유형별 차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대응방식부지		해결가능성낮음		비용노력과다		신원노출위험		가해자보복위험		2차피해위험		주변인관계		기타		최빈값
	N	%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48	9.84	130	26.64	97	19.88	24	4.92	26	5.33	57	11.68	106	21.72	.	.	해결가능성낮음
예체능계열	3	3.06	30	30.61	15	15.31	9	9.18	3	3.06	13	13.27	25	25.51	.	.	해결가능성낮음
의학계열	29	9.73	80	26.85	48	16.11	23	7.72	23	7.72	52	17.45	43	14.43	.	.	해결가능성낮음
인문사회계열	97	8.99	276	25.58	218	20.2	78	7.23	45	4.17	122	11.31	229	21.22	14	1.3	해결가능성낮음
자연과학계열	51	9.06	150	26.64	103	18.29	37	6.57	29	5.15	66	11.72	127	22.56	.	.	해결가능성낮음
박사	31	8.29	106	28.34	58	15.51	21	5.61	23	6.15	60	16.04	75	20.05	.	.	해결가능성낮음
석사	86	8.83	253	25.98	179	18.38	72	7.39	70	7.19	139	14.27	175	17.97	.	.	해결가능성낮음
학부	111	9.42	307	26.06	244	20.71	78	6.62	33	2.8	111	9.42	280	23.77	14	1.19	해결가능성낮음
남자	98	9.75	263	26.17	197	19.6	78	7.76	62	6.17	113	11.24	194	19.3	.	.	해결가능성낮음
여자	130	8.55	403	26.5	284	18.67	93	6.11	64	4.21	197	12.95	336	22.09	14	0.92	해결가능성낮음
외국	19	16.52	23	20	23	20	2	1.74	13	11.3	9	7.83	19	16.52	7	6.09	해결가능성낮음
한국	209	8.67	643	26.67	458	19	169	7.01	113	4.69	301	12.48	511	21.19	7	0.29	해결가능성낮음
합계	228	9.03	666	26.37	481	19.04	171	6.77	126	4.99	310	12.27	530	20.98	14	0.55	해결가능성낮음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인 남학생이 28%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해결 가능성 낮음’을 이유로 응답했으며, 한국인 여학생이 22.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주변인 관계’를 이유로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32.4%로 ‘해결 가능성 낮음’을 응답했으며, 29.7%의 예체능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주변인 관계’를 이유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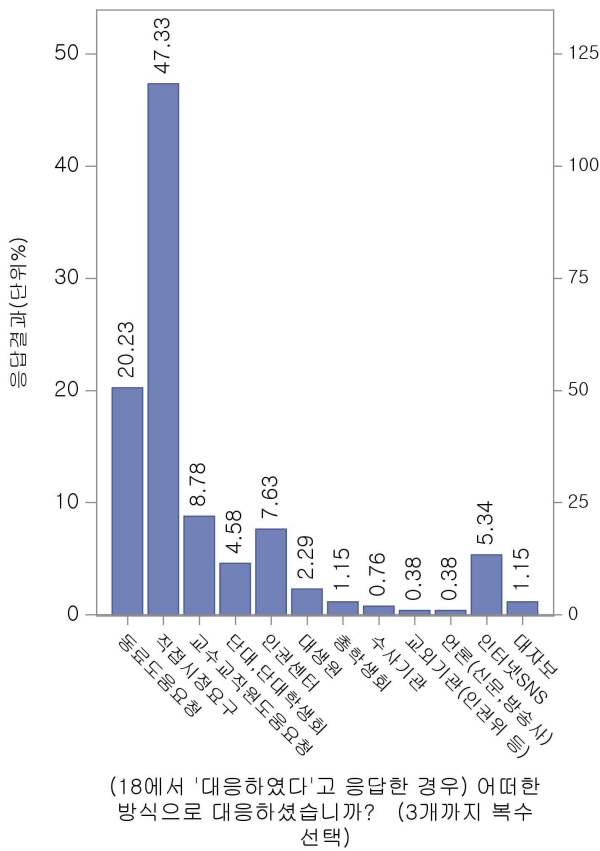
그림 84 계열과정별 차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시각화

대응방식부지	26(9.7%)	22(10%)	0(0%)	3(4.7%)	18(9.5%)	11(10.1%)	43(8.2%)	54(9.7%)	30(9%)	21(9.1%)
해결가능성낮음	70(26.1%)	60(27.3%)	11(32.4%)	19(29.7%)	50(26.5%)	30(27.5%)	143(27.2%)	133(24%)	85(25.6%)	65(28.1%)
비용노력과다	49(18.3%)	48(21.8%)	4(11.8%)	11(17.2%)	30(15.9%)	18(16.5%)	100(19%)	118(21.3%)	54(16.3%)	49(21.2%)
신원노출위험	14(5.2%)	10(4.5%)	5(14.7%)	4(6.3%)	15(7.9%)	8(7.3%)	38(7.2%)	40(7.2%)	21(6.3%)	16(6.9%)
가해자보복위험	19(7.1%)	7(3.2%)	2(5.9%)	1(1.6%)	18(9.5%)	5(4.6%)	33(6.3%)	12(2.2%)	21(6.3%)	8(3.5%)
2차피해위험	35(13.1%)	22(10%)	6(17.6%)	7(10.9%)	37(19.6%)	15(13.8%)	73(13.9%)	49(8.8%)	48(14.5%)	18(7.8%)
주변인관계	55(20.5%)	51(23.2%)	6(17.6%)	19(29.7%)	21(11.1%)	22(20.2%)	95(18.1%)	134(24.2%)	73(22%)	54(23.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4(2.5%)	0(0%)	0(0%)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약계열(대학원생)	의약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20. (18에서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까? (3개까지 복수 선택)

18번 문항에서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83>과 <표 42>에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응답자의 47.33% 응답자(124명)가 직접시정요구를 대응 방식으로 뽑았다. 그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0.23%가 동료도움요청으로 응답했다. 뒤이어 '교수, 교직원 도움요청'이 8.78%, '인권센터'가 7.63%, '인터넷 SNS'가 5.34% 등으로 응답되었다. 기타의 견¹¹⁾으로는 공청회, 관련 기관 담당자 문의 등이 있었다.

그림 85 차별로 대응했을 때 대응방식



대응방식	빈도 수	전체 빈도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동료도움요청	53	20.23%	53	20.23%
직접시정요구	124	47.33%	177	67.56%
교수교직원도움요청	23	8.78%	200	76.34%
단대, 단대학생회	12	4.58%	212	80.92%
인권센터	20	7.63%	232	88.55%
대생원	6	2.29%	238	90.84%
총학생회	3	1.15%	241	91.98%
수사기관	2	0.76%	243	92.75%
교외기관(인권위 등)	1	0.38%	244	93.13%
언론(신문, 방송사)	1	0.38%	245	93.51%
인터넷SNS	14	5.34%	259	98.85%
대자보	3	1.15%	262	100%

대응방식	외국(남자)	외국(여자)	한국(남자)	한국(여자)
동료도움요청	4(40%)	3(20%)	22(20.4%)	24(18.6%)
직접시정요구	4(40%)	6(40%)	50(46.3%)	64(49.6%)
교수교직원도움요청	1(10%)	3(20%)	8(7.4%)	11(8.5%)
단대, 단대학생회	1(10%)	0(0%)	6(5.6%)	5(3.9%)
인권센터	0(0%)	2(13.3%)	6(5.6%)	12(9.3%)
대생원	0(0%)	0(0%)	2(1.9%)	4(3.1%)
총학생회	0(0%)	1(6.7%)	2(1.9%)	0(0%)
수사기관	0(0%)	0(0%)	1(0.9%)	1(0.8%)
교외기관(인권위 등)	0(0%)	0(0%)	1(0.9%)	0(0%)
언론(신문, 방송사)	0(0%)	0(0%)	0(0%)	1(0.8%)
인터넷SNS	0(0%)	0(0%)	8(7.4%)	6(4.7%)
대자보	0(0%)	0(0%)	2(1.9%)	1(0.8%)

11) 기타응답자 수는 2차 1명, 3차 4명, 4차 4명으로 총 9명이다.

표 42 응답자 유형별 차별에 대응했을 때 대응방식

	동료도움 요청		직접시정 요구		교수교직원 도움요청		단대, 단대 학생회		인권센터		대생원		총학생회		수사기관		교외기관 (인권위등)		언론 (신문방송사)		인터넷 SNS		대자보		최빈값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공학계열	8	14.81	26	48.15	6	11.11	2	3.7	2	3.7	2	3.7	1	1.85	1	1.85	6	11.11	.	.	직접시정요구
예체능계열	.	.	4	66.67	1	16.67	1	16.67	직접시정요구
의학계열	6	35.29	6	35.29	1	5.88	1	5.88	3	17.65	동료도움요청
인문사회계열	20	16.53	60	49.59	8	6.61	6	4.96	11	9.09	3	2.48	2	1.65	2	1.65	1	0.83	.	.	6	4.96	2	1.65	직접시정요구
자연과학계열	19	29.69	28	43.75	7	10.94	2	3.13	4	6.25	1	1.56	2	3.13	1	1.56	직접시정요구
박사	8	24.24	13	39.39	5	15.15	1	3.03	4	12.12	.	.	1	3.03	1	3.03	직접시정요구
석사	24	19.2	60	48	11	8.8	7	5.6	11	8.8	4	3.2	1	0.8	6	4.8	1	0.8	직접시정요구
학부	21	20.19	51	49.04	7	6.73	4	3.85	5	4.81	2	1.92	1	0.96	1	0.96	1	0.96	1	0.96	8	7.69	2	1.92	직접시정요구
남자	26	22.03	54	45.76	9	7.63	7	5.93	6	5.08	2	1.69	2	1.69	1	0.85	1	0.85	.	.	8	6.78	2	1.69	직접시정요구
여자	27	18.75	70	48.61	14	9.72	5	3.47	14	9.72	4	2.78	1	0.69	1	0.69	.	.	1	0.69	6	4.17	1	0.69	직접시정요구
외국	7	28	10	40	4	16	1	4	2	8	.	.	1	4	직접시정요구
한국	46	19.41	114	48.1	19	8.02	11	4.64	18	7.59	6	2.53	2	0.84	2	0.84	1	0.42	1	0.42	14	5.91	3	1.27	직접시정요구
합계	53	20.23	124	47.33	23	8.78	12	4.58	20	7.63	6	2.29	3	1.15	2	0.76	1	0.38	1	0.38	14	5.34	3	1.15	직접시정요구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인 여학생이 4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직접시정요구’를 대응방식으로 뽑았으며, 외국인 남학생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동료도움요청’을 대응방식으로 응답했다. 과정과 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인 100%로 ‘직접시정요구’를 응답했으며, 39.1%의 자연과학계열 학부생 응답자가 ‘동료도움요청’을 대응방식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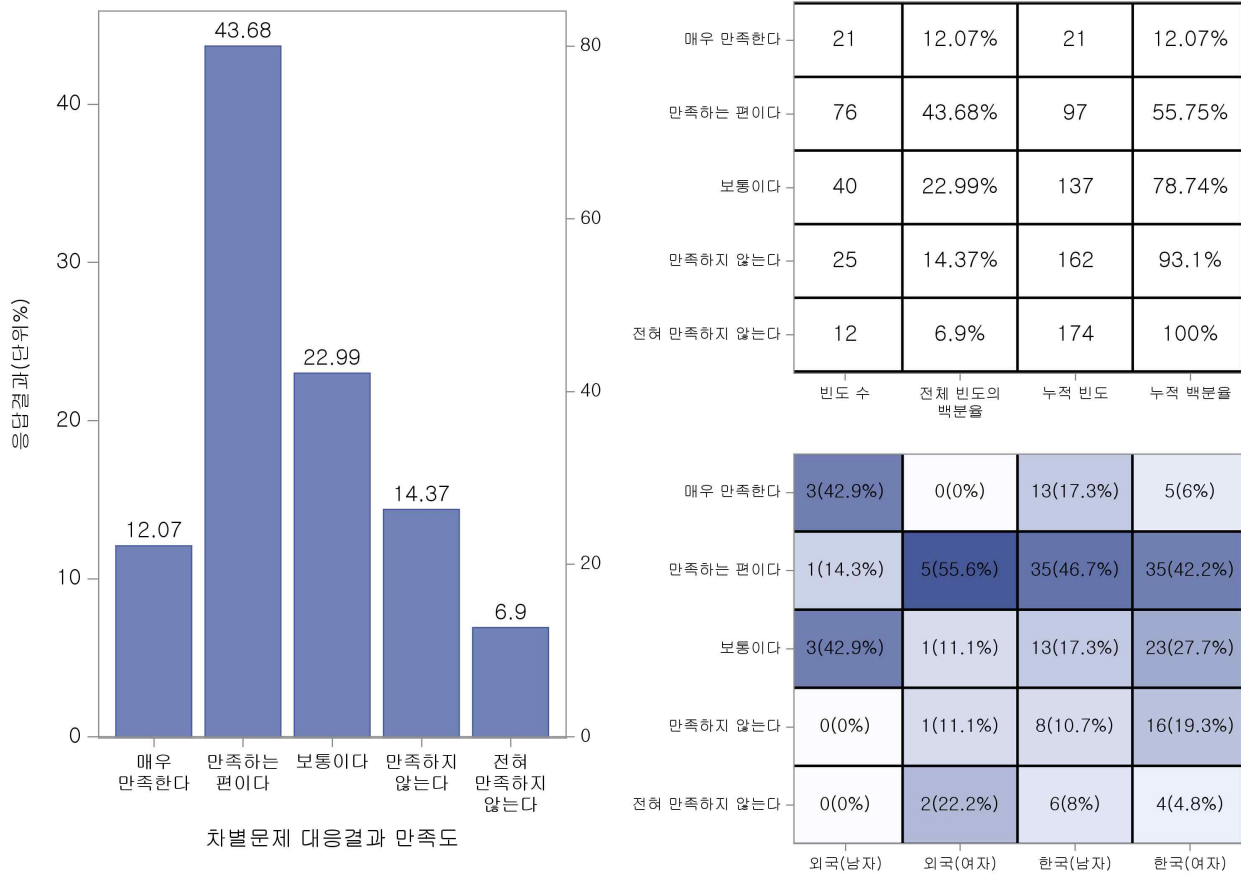
그림 86 계열과정별 차별 대응방식 시각화

동료도움요청	7(20.6%)	1(5%)	0(0%)	0(0%)	5(38.5%)	1(25%)	10(14.9%)	10(18.5%)	10(24.4%)	9(39.1%)
직접시정요구	14(41.2%)	12(60%)	3(100%)	1(33.3%)	5(38.5%)	1(25%)	33(49.3%)	27(50%)	18(43.9%)	10(43.5%)
교수교직원도움요청	5(14.7%)	1(5%)	0(0%)	1(33.3%)	1(7.7%)	0(0%)	4(6%)	4(7.4%)	6(14.6%)	1(4.3%)
단체, 단대학생회	2(5.9%)	0(0%)	0(0%)	1(33.3%)	0(0%)	1(25%)	5(7.5%)	1(1.9%)	1(2.4%)	1(4.3%)
인권센터	2(5.9%)	0(0%)	0(0%)	0(0%)	2(15.4%)	1(25%)	7(10.4%)	4(7.4%)	4(9.8%)	0(0%)
대생원	1(2.9%)	1(5%)	0(0%)	0(0%)	0(0%)	0(0%)	2(3%)	1(1.9%)	1(2.4%)	0(0%)
총학생회	1(2.9%)	0(0%)	0(0%)	0(0%)	0(0%)	0(0%)	1(1.5%)	1(1.9%)	0(0%)	0(0%)
수사기관	0(0%)	0(0%)	0(0%)	0(0%)	0(0%)	0(0%)	1(1.5%)	1(1.9%)	0(0%)	0(0%)
교외기관(인권위 등)	0(0%)	0(0%)	0(0%)	0(0%)	0(0%)	0(0%)	0(0%)	1(1.9%)	0(0%)	0(0%)
언론(신문, 방송사)	0(0%)	1(5%)	0(0%)	0(0%)	0(0%)	0(0%)	0(0%)	0(0%)	0(0%)	0(0%)
인터넷SNS	2(5.9%)	4(20%)	0(0%)	0(0%)	0(0%)	0(0%)	3(4.5%)	3(5.6%)	1(2.4%)	1(4.3%)
대자보	0(0%)	0(0%)	0(0%)	0(0%)	0(0%)	0(0%)	1(1.5%)	1(1.9%)	0(0%)	1(4.3%)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21. 위의 방법을 이용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차별문제에 대응한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2.07%에 해당하는 21 명이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족하는 편이다를 포함하는 긍정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5.75%로 절반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그림 87 차별문제 대응결과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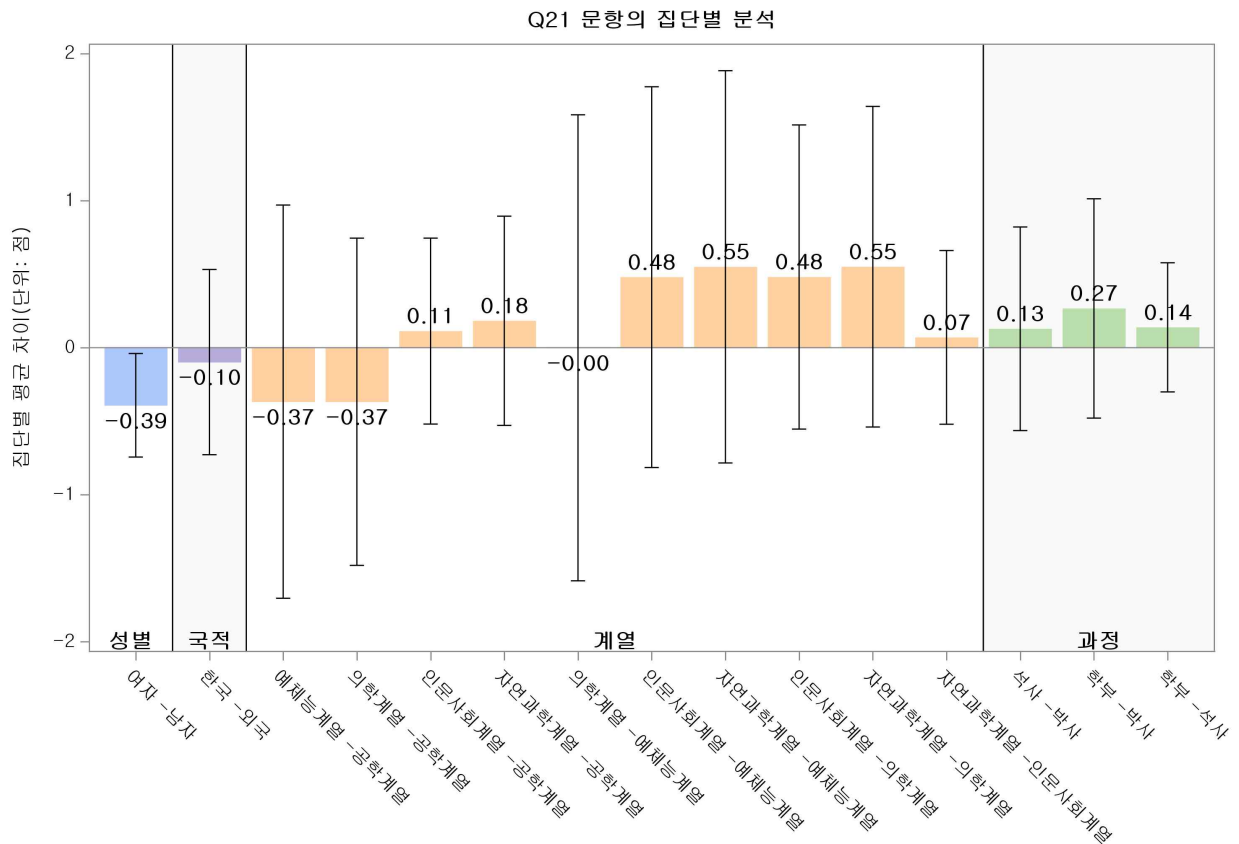
해당 문항을 통해 만족 정도를 5 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연과학계열이 3.4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3.43 점, 인문사회계열 3.41 점,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이 3.00 점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이 3.51 점, 석사과정생이 3.33 점, 박사과정생이 3.30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3.23 점, 남자가 3.59 점으로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 3.39 점, 외국인 3.44 점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 유형별 차별문제 대응결과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표준 편차	최 빈 값
	N	%	N	%	N	%	N	%	N	%			
공학계열	7	18.92	13	35.14	9	24.32	5	13.51	3	8.11	3.43	1.19	4
예체능계열	1	16.67	1	16.67	1	16.67	3	50	.	.	3	1.26	2
의학계열	1	10	2	20	4	40	2	20	1	10	3	1.15	3
인문사회계열	7	8.54	39	47.56	21	25.61	11	13.41	4	4.88	3.41	0.99	4
자연과학계열	5	12.82	21	53.85	5	12.82	4	10.26	4	10.26	3.49	1.17	4
박사	4	20	6	30	5	25	2	10	3	15	3.3	1.34	4
석사	9	10.84	33	39.76	24	28.92	10	12.05	7	8.43	3.33	1.09	4
학부	8	11.27	37	52.11	11	15.49	13	18.31	2	2.82	3.51	1.01	4
남자	16	19.51	36	43.9	16	19.51	8	9.76	6	7.32	3.59	1.13	4
여자	5	5.43	40	43.48	24	26.09	17	18.48	6	6.52	3.23	1.03	4
외국	3	18.75	6	37.5	4	25	1	6.25	2	12.5	3.44	1.26	4
한국	18	11.39	70	44.3	36	22.78	24	15.19	10	6.33	3.39	1.08	4
합계	21	12.07	76	43.68	40	22.99	25	14.37	12	6.9	3.4	1.09	4

범주를 구성하는 집단별 평균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국적, 계열, 과정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차이가 0.39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8 차별문제 대응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부정응답 비율은 외국인 남학생 0%로 한국인 남학생 18.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여학생은 33.3%로 한국인 여학생 2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 학부생이 12.5%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예체능계열 학부생이 66.7%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89 계열과정별 차별문제 대응결과 만족도 차이 시각화

매우 만족한다	4(19%)	3(18.8%)	1(33.3%)	0(0%)	0(0%)	1(33.3%)	4(8.5%)	3(8.6%)	4(16%)	1(7.1%)
만족하는 편이다	5(23.8%)	8(50%)	1(33.3%)	0(0%)	1(14.3%)	1(33.3%)	20(42.6%)	19(54.3%)	12(48%)	9(64.3%)
보통이다	6(28.6%)	3(18.8%)	0(0%)	1(33.3%)	4(57.1%)	0(0%)	14(29.8%)	7(20%)	5(20%)	0(0%)
만족하지 않는다	3(14.3%)	2(12.5%)	1(33.3%)	2(66.7%)	1(14.3%)	1(33.3%)	5(10.6%)	6(17.1%)	2(8%)	2(1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14.3%)	0(0%)	0(0%)	0(0%)	1(14.3%)	0(0%)	4(8.5%)	0(0%)	2(8%)	2(14.3%)
	공학계열(대학원생)	공학계열(학부생)	예체능계열(대학원생)	예체능계열(학부생)	의학계열(대학원생)	의학계열(학부생)	인문사회계열(대학원생)	인문사회계열(학부생)	자연과학계열(대학원생)	자연과학계열(학부생)

(2) 소결

전체응답자의 24.17%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서울대에서 인권보호 노력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차별경험이 15%p 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사나 학부생에 비해 박사의 차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은 하나의 차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차별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전공, 출신지역,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다른 차별과 결합되어 학생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가해자가 차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복잡적 형태로 일어나는 학내의 다양한 차별의 현황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이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86.51%나 된다는 점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 대응이 소극적인 것은 나타났는데 더 높은 차별경험에 비해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해결가능성이 낮다(26.37%), 주변인과의 관계

(20.98%), ‘비용 노력 과다’(19.04%) 등이 있다. 결국 차별경험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률이 낮다는 점이다. 차별의 유형에 따라 대응률의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차별 대응은 9.47% 밖에 되지 않았다. 온라인 공간이 중요한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차별에 대해 대응을 한 사람의 경우 직접시정(47.33%), 동료도움 요청(20.23%)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교수나 직원 혹은 인권센터, 대생원 같은 학내 조직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의 상당부분이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시정 요구도 적절한 해결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직접 시정 요구를 할 때 효과적인 방식을 알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동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서도 경험이 없는 동료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차별이라면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권센터나 대학생활문화원 등의 공식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헌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학내 차별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식에 대한 정보도 학생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제5장 설문 결과의 해석과 결론

본 연구는 서울대 학생들의 인권현장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인권현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학내에서의 차별경험의 현황을 살펴 보면서 향후 인권현장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현장의 개별 조항에 관한 학생들의 동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현장의 주요 내용인 인격권, 차별금지 및 평등권,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연구·교육·직무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구성원의 인권존중 의무 등의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혹은 “다소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권현장이 제시하는 인권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학생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학부와 대학원생, 남성과 여성, 소속 학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권현장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현장 제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권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인격권, 차별금지(평등권), 폭력으로부터 자유, 사생활보장, 교육권 보장의 순서로 그 중요성을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학생의 교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권의 보장을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권현장 제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관심있다”가 52.43%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성위원회의 2021년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7.6%,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19.8%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자문위원 A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현장(안)이 제출된 게 2020년 1월이고, 이후 같은 해에 공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특정한 관심을 가진 구성원과 학외 단체들 외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1년, 2022년에는 관련 인식을 제고할 만한 학교 차원 홍보나 소통이 거의 없었으니, 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낮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입학생들은 대체로 관련 내용을 숙지할 계기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장 내용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설계가 진행되거나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도가 낮은 것 역시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인권현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장(안)에 담긴 기본 권리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통 부재나 현장 자체의 낮은 인지도가 다행히 현장 추진에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문위원 A)

실제로 인권현장 제정에 관심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 중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 55.17%가 인권현장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답변도 32.82%로 나타났다. 인권현장 제정을 위해서는 인권현장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의 실효성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헌장 제정 관심도가 낮은 것을 인권헌장의 내용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권헌장의 편향적 성격 때문에 관심도가 낮다고 대답한 사람은 4.9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헌장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적극적 홍보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권헌장의 동의율은 7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2021년 다양성조사에서 학부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58.4%, 대학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54.4% 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인권헌장에 반대하는 비율도 3.83%에 불과하여 인권헌장에 대한 찬성율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 찬성 이유도 기본규범의 필요성, 교육기관의로서의 책무, 인권인식·수준 향상,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인권헌장이 인권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헌장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인권헌장의 인권인식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인권헌장 제정은 그 규범적 가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섯째, 인권헌장 비동의 비율을 보면 5,365명의 응답자 중 약 6.1%가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2021년 제2차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학부생은 12.6%가 대학원생은 10.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비동의 정도는 2021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보통이다”를 제외한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의 비중이 학부생 58.4%, 대학원생 54.4%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77.2%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헌장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 중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각각 28.14%와 26.44%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인권 침해적인 학문 또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석하여 인권헌장 조항이나 학내 인권교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인권헌장이 도입되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확실히 달라질지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인권헌장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권헌장이 있어도 별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역설적으로 인권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인권헌장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인권헌장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인권헌장의 이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 자문위원 B의 의견처럼 인권헌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학교에 있고,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또한 누려야 한다는 점도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만든 후에 무엇이 어떻게 확실하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탓도 있을 겁니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도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편리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제도를 만드는 데 관심이 낮은 것 이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가 낮게 나왔다고 전자를 가볍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도를 만들 책임은 학교에 있지 학생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 B)

인권헌장에서 찬성할 수 없는 조항은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은 86명 정도로 전체 응답자의 약 1.5%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또한 다른 인권헌장의 기본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인권헌장의 조항 자체가 인권헌장 제정 반대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별금지(평등권)의 일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학생은 더욱 소수라고 할 수 있다. 인권헌장 제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인권헌장 제정이 연기된다면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학생들의 차별경험은 24.17%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생의 경우 2016년 49.6%, 2021년 33.3%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수이다. 응답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차별경험의 가해자가 주로 학내 미디어(인터넷 게시판)로 나타났다. 과거 학내 차별의 관심은 주로 명확한 권력 관계를 갖는 교수-학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전히 교수-학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경험은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에 주목받지 않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차별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인터넷 공간은 서울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게시판보다는 서울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이나 스누라이프와 외부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공간내에서의 차별에 학교가 적극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과 법적 성별,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전공, 외모,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이 큰 상황을 고려한다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인권헌장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내 미디어 역시 학내 미디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학내 미디어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학내 미디어에서 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인권과 관련하여 학내 미디어가 가져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 대학, 학내 미디어, 그러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학내 구성원들 각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문위원 C)

일곱째, 차별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51%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높아진 인권의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학생들이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도 해결가능성이 낮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

고,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다는 점을 학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차별을 당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상호 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서울대에서 비대면 교육이 2년이나 지속되었고, 공동체의 규범 공유가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현장에 대한 관심도와 제정에 대한 동의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차별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매우 현실적이다. 인권현장의 각 조항에 대한 매우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인권현장 제정 자체에 대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권현장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서울대 인권현장에 대한 논의는 제정 여부를 넘어서 실효성 있게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설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부록 1> 국문설문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학내 인권헌장에 대한 논의는 2019년 4월 본부 기획과제인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방향”에서 학내 인권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학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권규범 제정을 권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인권헌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은 학내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엄을 가진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 자신의 이해를 보호받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권헌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일부 항목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출범한 총장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다양성위원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권헌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약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며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 처리되어 집단적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분석도 시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아이패드 프로 등 선택하신 경품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조사 주관: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

인권헌장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인권헌장에 관한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인권헌장 전문](#)
- 2) [인권헌장 보고서](#)
- 3) [인권헌장 보고서 요약](#)

1.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 2조(인격권):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동등한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등한 존엄과 인격을 지닌 주체로 대하여야 한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3조(차별금지과 평등권) 1항 :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 3조(차별금지과 평등권) 2항: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여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의무를 지닌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4조(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7조(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의 1항: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 7조의 2항: “서울대학교는 연구·교육·직무 수행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정당한 보수, 적절한 휴게시간·휴일·휴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장애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14조(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적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서울대학교 구성원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제16조(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서로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여야 할 것과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설명: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그러한 존엄성이 부인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 인권 개념의 기본 바탕입니다. 인권헌장(안)의 제16조는, 특정 권리가, 인권 규범 전체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권리의 남용' 금지라는 법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제 3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5조 제 1항 등에서도 해당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인권헌장이 제정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인격권(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서로 존중받을 권리)
- 차별금지과 평등권(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보장의 권리(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표현·언론 및 출판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독립적인 연구의 권리
- 집회·결사의 자유
- 참여권(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할 권리, 대표기구를 결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
- 교육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 교육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교원의 권리, 학업과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연구에서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권리
- 노동권(정당한 보수 및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직무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권리(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구, 교육, 직무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기타

10. 귀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매우 관심이 있다.
- 다소 관심이 있다.
- 별로 관심이 없다.
- 전혀 관심이 없다.

11. (10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혹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권헌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 인권헌장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 인권헌장이 인권을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이 이미 충분히 잘 보장되고 있어서
- 기타

1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 (12에서 '매우 동의한다' 혹은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인권 관련 문제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이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명문화된 기본 규범이 필요하므로
- 미국의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스탠포드대학,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스웨덴의 옉살라대학, 호주의 멜버른 대학 등의 다수의 해외 대학이 차별금지 정책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 인권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권 인식향상과 토론을 촉진하여, 변화하는 학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구성원들의 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유치하여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천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 기타

14. (12에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법령과 학내 규정으로 충분해서
- 헌장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차별적 인사가 포함된 학문적 토론이 차별 혹은 혐오표현으로 간주되어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 것 같아서
- 인권헌장 중 일부 조항에 찬성할 수 없어서
-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더 커질 것 같아서
- 기타

15. (14에서 '인권헌장 중 일부 조항에 찬성할 수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조항에 찬성할 수 없으십니까?

- 인격권(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서로 존중받을 권리)
- 차별금지외 평등권(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보장의 권리(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표현·언론 및 출판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독립적인 연구의 권리
- 집회·결사의 자유
- 참여권(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할 권리, 대표기구를 결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
- 교육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 교육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교원의 권리, 학업과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연구에서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권리
- 노동권(정당한 보수 및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직무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권리(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구, 교육, 직무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기타

□ 차별현황 조사

16. 귀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17. 차별의 이유가 되었던 사항별로 차별경험 여부와 차별의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를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없 음	동기 및 학교 친구	선배 및 후배	교 수	직원	조교	학내 미디어 (SNU 등)
장애	○	○	○	○	○	○	○
종교	○	○	○	○	○	○	○
출신학교 (대학원생: 출신 대학/ 학부생: 출신 고등학교)	○	○	○	○	○	○	○
연령	○	○	○	○	○	○	○
법적 성별	○	○	○	○	○	○	○
성별정체성	○	○	○	○	○	○	○
성적지향	○	○	○	○	○	○	○
전공	○	○	○	○	○	○	○
결혼여부	○	○	○	○	○	○	○
군필 여부	○	○	○	○	○	○	○
외모	○	○	○	○	○	○	○
사회경제적 지위	○	○	○	○	○	○	○

소득수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출신지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업성취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아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 대응하였다.
- 대응하지 않았다.

19. (17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 구체적인 피해 대응 방식을 잘 알지 못해서
- 피해구제를 받거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 대응과정에서 드는 시간·노력 등의 비용이 너무 커서
-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불이익(2차 피해)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서
-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 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 기타

20. (17에서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 가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다.
- 교수 또는 교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소속 단과대학 혹은 학생회에 신고하였다.
- 서울대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서울대 총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수사기관(경찰 등)에 신고하였다.
- 교외기관(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였다.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피해사실을 제보하였다.
- 인터넷(에타 등)이나 SNS 등에 피해사실을 올렸다.
- 대자보를 작성하여 학내에 부착하였다.
- 기타

21. 위의 방법을 이용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만족하지 않는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2. (20에서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례품 목록 중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으시면 선택을 해주십시오. 선택하신 답례품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이패드 프로 (1명)
- 아이패드 미니 (5명)
- 에어팟 프로 (10명)
- 커피쿠폰 (1000명)

답례품 추첨과 지급을 위해 귀하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답례품 제공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Future Gener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Char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scussion for enacting the Human Rights Charter with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April 2019 as part of the Head Quarter's Planning Task for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and reduce the gap in differing opinions among academics. The first draft of the Human Rights Charter was completed in January 2020 following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Norm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harter (draft) contains basic norms for the university members to respect one another as individuals with equal dignity, protect their own interests, and fulfill obligations to respect one another's human rights. At the public meeting held in October 2020, the participants agreed on the need for the Human Rights Charter, but differing opinions were brought to atten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launched in March 2016, is an advisory boar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and it aims to build an academic community that promotes respect and diversit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has launched a survey on future generations' percep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Charter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t SNU.

This survey takes approximately 5 to 10 minutes. Yours answers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used for overall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will not be examined separately. Giveaway prizes for participants including iPad Pro will be provided through a raffle system. We thank you for your valuable time.

Yours sincerel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Principal Investigator: Prof. Kilkon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1. Article 2 (Personal Right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embers have equal dignity and personal rights regardless of status, rank, position, gender, age, etc. and thus shoul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2. Article 3, Paragraph 1 (Non-discriminatory and Equality Right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individuals have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or socio-economic background.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3. Article 3, Paragraph 2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Equality Right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others and must be conscious not to encourage discrimination in their words and/or actions.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4. Article 4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and Expression)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e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and the right to freely express and discu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through words and publication.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5. Article 7 (Rights on the condition of Research, Education, and Work task)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e the right to conduct research, education, and work tasks under conditions where human dignity is respected.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6. Article 7-2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provide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research, education and work task, fair remuneration, appropriate breaks,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7. Article 14 (Rights regarding due proces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i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kes a decision that disadvantages its members, it must stipulate that it will follow due process. Expert assistance should be present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express their side must be granted.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8. Article 16 (Human Rights and respect among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ft): States that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respect one another as subject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stipulated in this Charter, and freedom must not be used as a means to infringe on the rights and freedom of others.

Note: The basic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s is that all humans possess dignity, which should not be denied or compromised by anyone. Article 16 of the Human Rights Charters draft states that certain rights should not be construed as condoning harm to others contrary to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human rights norm. This is based on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principle and can be found in Article 30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o you agree with the above?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9. Should the Human Rights Charter be enacted, what do you think should be included in the rights? (Multiple selection, maximum three)

- The right to human dignity (right to mutual respect regardless of status, rank, position, gender, age, etc.).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s of gender, nationality, race, disability, prior education, age, religion, pregnancy and childbirth, political opini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Right to privacy (right of confidentiality, family life, housing and communication, righ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 Freedom from violence (right to protect oneself from physical, mental and/or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 Freedom of expression, press, opinion and the media..
- Academic and artistic freedom, and the right to independence in research..
-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know about important decisions, the right to speak ou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ight to form and operate a representative body and participate in activities).
-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of students to receive high quality education, the right of teachers to freely decide the content and format of education,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necessary for study and education).
- The right to be recognized for legitimate contribution to research.
-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conduct research, education, study under conditions that guarantee fair remuneration and adequate rest).
- The right to be safe and healthy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research education and work).
- Other

10. How interested are you in enactin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harter?

- I am very interested.
- I am somewhat interested.
- I am not really interested.
- I am not at all interested.

11. (If you answered 'I am not really interested' or 'I am not at all interested' for question 10) Why are you not interested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harter and

Enactment?

- Because I do not know very much about the Human Rights Charter.
- Because I feel that even if the Human Rights Charter were to be enacted, it would make little difference.
- Because I think that the Human Rights Charter is biased.
- Because I think Seoul National University's Human Rights is well protected.
- Other

12. Do you agree th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 Human Rights Charter should be enacted?

- I strongly agree.
- I somewhat agree.
- I neither agree or disagree.
- I somewhat disagree.
- I strongly disagree.

13. (If you chose 'I strongly agree' or 'I somewhat agree' for question 12) Why do you agree to the enactment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harter? (Multiple responses possible)

- Because should there be disagreements about human rights issues, there should be guidelines for members to refer to.
- Because other universities such as Harvard, Yale, Stanford, Oxford, Cambridge, Uppsala, and Melbourne advocate anti-discriminatory polic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uld also protectively protect human rights and demonstrate practical efforts.
- Because there should b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human rights by facilitating discussion and raising awareness among members and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environment.
- Because declaring and practicing human rights protection on global standards will ai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develop into a world-class educational institution.
- Other

14. (If you chose 'I somewhat disagree' or 'I strongly disagree' for question 12) Why do you disagree th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harter should be enacted?

- Becau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sufficient.
- Because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enactment will be effective.
- Because if the Human Rights Charter becomes enacted, academic debates containing discriminatory language will be regarded as discrimination, ultimately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 Because I do not agree with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 Because we are yet to reach a social consensus in this country.
- Because if the Human Rights Charter becomes enacted, this will likely increase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university members.
- Other

15. (If you chose 'Because i do not agree with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Human Rights Charter' for question 14) Which provision do you disagree with?

- The right to human dignity (right to mutual respect regardless of status, rank, position, gender, age, etc.).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s of gender, nationality, race, disability, prior education, age, religion, pregnancy and childbirth, political opini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Right to privacy (right of confidentiality, family life, housing and communication, righ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 Freedom from violence (right to protect oneself from physical, mental and/or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 Freedom of expression, press, opinion and the media.
- Academic and artistic freedom, and the right to independence in research.
-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know about important decisions, the right to speak ou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ight to form and operate a representative body and participate in activities).
-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of students to receive high quality education, the right of teachers to freely decide the content and format of education,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necessary for study and education).
- The right to be recognized for legitimate contribution to research.
-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conduct research, education, study under conditions that guarantee fair remuneration and adequate rest).
- The right to be safe and healthy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research education and work).
- Other

Discrimination level survey

16. Have you ever been discriminated against or treated differentl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YES.
- NO.

17. If so, please select from the category below and let us know who was behind the discriminatory acts.

	None	School mates and classmates	Senior and junior	Professor	Staff	Assistant	Campus media (SNU etc.)
Disabi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Religio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revious school (Graduate students: Undergraduate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s: High school)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Ag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Legal gender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Gender ident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exual orientatio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Academic major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Marital statu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tatus of military servic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Appearanc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ocio-economic statu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come level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ace of birth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Academic achievemen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ther membership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What did you do to solve the discrimination problem?

- I responded.
- I did not respond.

19. (If you selected 'I did not respond.' for question 17) Why did you decide not to respond? (Multiple selections up to 3)

- Because I did not know how to deal specifically with this problem.

- Because I thought that there would be little damage relief or because I didn't think the situation could improve.
- Because the time, effort, or cost to respond to this problem would be too much.
- Because I was afraid to reveal my identity.
- Because I was afraid of retaliation from the discriminator.
- Because I was concerned about the secondary damage.
- Because I did not want to make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uncomfortable.
- Other

20. (If you selected 'I responded.' for question 17) In what way did you respond? (Multiple selections up to 3)

- I requested help from my colleagues.
- I got in touch with the discriminator directly to solve the problem.
- I requested help from the professors and/or the staff.
- I reported this to the involved people's affiliated colleges.
- I requested help from the SNU Human Rights Center.
- I requested help from the SNU Center for Campus Life and Culture.
- I requested help from the SNU Student Council.
- I reported this to investigative agencies (i.e. the police).
- I reported this to external institutions (i.e. The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tc.).
- I reported this incident to the media (such as newspaper/ radio).
- I reported this incident on the internet (i.e. Social Media platforms).
- I wrote a public notice on the bulletin board.
- Other

21.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sults from the applied method?

- I am very satisfied
- I am somewhat satisfied.
- Neutral.
- I am not really satisfied.
- I am dissatisfied.

22. (Only those who selected 'Neutral.' or 'I am not really satisfied.' or 'I am dissatisfied.' for question 20) Why are you dissatisfied with the results?

23. Thank you for your feedback. Please select from the gift list below. We plan to provide gifts to participants through a raffle system.

- iPad Pro (1 person)
- iPad Mini (5 people)
- Air pods pro (10 people)
- Coffee voucher (1,000 people)

Please provide us your mobile phone number if you want to apply for the giveaway. The number will be immediately deleted after awarding the giveaway.

010-

참고문헌

- 송지우, 신윤진, 이주영, 김주형, 김덕수, 정대현, 이우창, 김다민, 성예진, 강민주, 이현. (2020).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 김석호, 박원호, 배유경, 송수연, 정우연, 박소현. (2021). 「제2차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